

2007년 2월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1948~1997

朝鮮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河 亨 周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1948~1997

*A Study on the Politic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South Korea:1948~1997*

2007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河 亨 周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1948~1997

指導教授 崔成宗

이 論文을 政治學 博士學位신청 論文으로 提出함

2006 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河 亨 周

河亨周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왕 임 동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김 홍 명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이 창 현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기 광 서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최 성 중 인

2006년 1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
| 제2절 정치폭력의 이론적 개관 | 7 |
| 제2장 한국의 정치발전 | 23 |
| 제1절 한국 정치발전의 시각과 논의 | 23 |
| 제2절 한국 정치발전의 성격과 특징 | 30 |
| 제3장 정치폭력의 발생요인 | 43 |
| 제1절 정치·이데올로기적 측면 | 44 |
| 1. 분단의식의 고착 | 44 |
| 2. 국가폭력의 구조화 | 62 |
| 3. 통제기구의 강화 | 65 |
| 제2절 사회·경제적 측면 | 74 |
| 1. 노동 통제 | 74 |
| 2. 사회적 방조 | 79 |
| 3. 경제적 불평등 | 81 |
| 제4장 정치폭력의 시기별 양상 | 83 |
| 제1절 이승만 정권기: 이데올로기와의 결합 | 84 |
| 제2절 박정희 정권기: 구조적 정착 | 89 |

| | |
|----------------------------------|------------|
| 제3절 전두환 · 노태우 정권기: 상시적 제도화 | 97 |
| 제4절 김영삼 정권기: 연례적 대립화 | 109 |
| 제5장 정치폭력의 유형 | 114 |
| 제1절 개괄적 유형 | 114 |
| 제2절 형태적 유형 | 120 |
| 1. 정치적 살인 및 테러 | 120 |
| 2. 사법 살인 | 125 |
| 3. 정치적 의문사 | 132 |
| 4. 정치적 자살 및 타살 | 135 |
| 5. 사법적 처벌 | 139 |
| 제3절 영역별 유형 | 141 |
| 1. 재야운동 | 141 |
| 2. 학생운동 | 143 |
| 3. 노동운동 | 157 |
| 제6장 결 론 | 166 |
| 참고문헌 | 172 |
| 부 록 | 181 |

< 표 목차 >

| | |
|--|----|
| 표1-1) 정치폭력의 개념 규정 | 12 |
| 표1-2) 정치폭력의 의미 구조 | 13 |
| 표1-3) 정치폭력 변수의 유형 | 14 |
| | |
| 표2-1) 한국 정치발전의 관점 | 25 |
| 표2-2)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 | 29 |
| 표2-3)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개와 담론의 변화 | 33 |
| 표2-4) 한국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인식 | 37 |
| 표2-5)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 40 |
| 표2-6) 권위주의체제의 해체 과정 | 41 |
| | |
| 표3-1) 반공주의의 변화 | 51 |
| 표3-2) 1961~80년까지의 정치규제법에 의한 검거인원수 | 54 |
| 표3-3) 1980 년대 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제1심 형사공판사건) | 55 |
| 표3-4) 1980~1988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내역, 통계 | 56 |
| 표3-5) 제1심 형사공판 전체사건과 국가보안법사건 처리 선고율 비교 | 57 |
| 표3-6) 노태우정권기 국가보안법 기소인원 | 58 |
| 표3-7) 김영삼 정권 5년동안 연도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 59 |
| 표3-8) 김영삼 정권 시기 국가보안법의 신분별 적용현황 | 60 |
| 표3-9) 김영삼정권기 적용법조별 현황 | 60 |
| 표3-10)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연도별 현황 | 62 |
| 표3-11)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신분별 현황 | 62 |
| 표3-12) 국가(폭력)와 민주주의(투쟁)의 관계 | 63 |
| 표3-13) 사회적 통제비용의 구성과 그 변화 | 67 |
| 표3-14) 전투경찰 정원 | 69 |
| 표3-15) 보안수사대가 구속 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 | 70 |
| 표3-16) 경찰의 공적별 특진내역 | 70 |

| | |
|---|-----|
| 표3-17) 국가정보원 변천과정 | 71 |
| 표3-18) 합동수사본부 변천과정 | 72 |
| 표3-19) 검찰청 사무기구 개편내용 | 73 |
| 표3-20) 세 가지 계급지배 양식의 비교 | 74 |
| 표3-21) 억압-실천-피해-결과 모형 | 75 |
| | |
| 표4-1) 좌익주도의 정치폭력(1948.1-4) | 84 |
| 표4-2) 해방공간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폭력인식 | 85 |
| 표4-3) 이승만 정권기 정치폭력(저항)의 발생현황 | 86 |
| 표4-4) 이승만 정권기 경찰병력의 변화 | 87 |
| 표4-5) 박정희 정권기 정치폭력(저항)의 발생현황(3공화국) | 90 |
| 표4-6) 1970년대 양심수 연도별·유형별 증감 현황 | 94 |
| 표4-7) 박정희 정권기 정치규제법에 의한 총 검거인원수:1961-1980 | 95 |
| 표4-8) 긴급조치 발동 상황 | 96 |
| 표4-9) 1980년대 정치규제법과 구속자 현황: 1980-1987 | 100 |
| 표4-10) 노태우 정권기 연도별 해고, 구속, 수배 노동자 수 | 102 |
| 표4-11) 6.29선언 이전·이후 구속자 현황 비교 | 103 |
| 표4-12) 6월항쟁 이후 시위의 횟수와 인원(1986~1997) | 105 |
| 표4-13) 노태우정권기 지역, 업종별 노조 건설 현황 | 106 |
| 표4-14)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 | 112 |
| | |
| 표5-1) 정치적 사망의 신분별 분류(2005. 현재) | 114 |
| 표5-2)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접수 및 심의 현황 (2005. 8.현재) | 117 |
| 표5-3) 196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유형 | 118 |
| 표5-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의 직업별 구성 | 119 |
| 표5-5) 정치활동 피규제 상황 | 124 |
| 표5-6) 진보당 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 128 |
| 표5-7) 제 1차 인민혁명당사건 재판현황 | 129 |

| | |
|-------------------------------------|-----|
| 표5-8) 제2차 인민혁명당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 130 |
| 표5-9)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분류 | 134 |
| 표5-10)정치적 피해의 형태적 분류 | 138 |
| 표5-11)주요 법률별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 수 | 140 |
| 표5-12)제야운동의 구속자 현황 | 143 |
| 표5-13)시기별 학생관련 사망자 및 구속자 현황 | 149 |
| 표5-14)학생운동 관련 정치적 사망자 | 151 |
| 표5-15)관련 기관별로 살펴본 의문사 사례(학생운동 관련) | 154 |
| 표5-16)연도별 학생 구속자수 | 156 |
| 표5-17)대표적인 노동자 피해(사망자 사례) | 159 |
| 표5-18)시기별 노동자 피해자 구분(1970~1992) | 160 |
| 표5-19)시기별 노동운동관련 피해자 (사망자) | 161 |
| 표5-20)노동운동 관련 해고조치 사례(1978~1984) | 162 |
| 표5-21)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현황 | 163 |
| 표5-22)적용 법률 조문별 구속노동자 수(1988-1995년) | 164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한국의 국가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의 문제들 | 50 |
|---------------------------------|----|

< 부 록 >

| | |
|-------------------------------|-----|
| 표 I)과거청산 관련법 현황표 | 181 |
| 표 II)특별법 입법을 통한 과거청산 사례 비교 | 182 |
| 표 III)김대중 정권기 과거청산 관련 제정된 법률표 | 183 |
| 표 IV)의문사건의 구분 | 184 |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Violence in the process of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South Korea:1948~1997

Ha Hyoung-Ju

Advisor : Prof. Choi Sung-Jong Ph.D.

Department of Polit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 problem of political violence is thought of as one of continuous topics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In particular, recently issues of 'confronting to the past'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Regarding this, a priority concern is a variety forms of violence committed by a state. Since the Liberatio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has been connected with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taking root a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created in the West. In Korean society, a conflict of pressure with resistance tends to be extremely violent. Similarly, the changes in political area have been made radically through regulation rather than flexibly or gradually and a variety of violence was made in the cour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tailed aspects of sacrifices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violence. This study attempted analysis with its focus on the following matters. First, with regard to the attributes of state authority, under what conditions, did political violence occur? Second, what meaning do sacrifices by political violence have

and how did their detailed types appear? Third, how has resistance to authoritative governance advanced according to periods? Finally, what changes does political violence have by periods and how different are they?

In Korean society, the sacrifice types by political violence have differently appeared depend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 of state authority. The sacrifices by direct coercion can be classified into ①political killing, ②judicial killing, ③judicial punishment, and ④politically suspicious death. The sacrifices by indirect coercion can be also classified into ①political suicide, ②private violence, and ③political terror.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to analyze above topics through literature and materials review. Political and related sacrifices were statistically measured as much as possible and violence and sacrifices were embodied and materialized using cases.

This study consists of a total of seven chapters.

Chapter 1 addressed the need of researches on political violence and its sacrifices inherent in political development, breaking with previous researches on the fulfillment of democracy through review of the direction of political violence researches, and political development researches. In particular, Section 2 analyzed the correlation of violence and sacrifices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al violence. That is, it is the analysis of history validation that political violence and sacrifices could help but occur. With regard to political violence, liberal

and Marxian points of view were compared. The comparison suggest that mandatory governance exists as the nature of a state, that when the violence is not agreed and legitimacy is lost, resistance violence inevitably occurs, and that finally it produces sacrifices. Also, the meaning of sacrifices used in this study was described.

Chapter 2 presented the analyzed political development and analyzed how political development appeared in Korea in asp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economics. Section 1 presented the views of political development researches of Korea. Section 2 classified the process of Korea's political development into the accommodation and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system and the dissolution of authoritative governments. Based on this, the correlation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violence in Korean society was suggested.

Chapter 3 presented the reasons of political violence and sacrifices.

The reasons of political violence focused on harmful aspects of violence, that is, the violence and sacrifices by a state authority. They were divided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y and social and economic aspects. In this wa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ruling power, the violence by security agency carrying out this political ideology, mechanism of law, and the silence of the press and society was established as main factors.

Chapter 4 analyzed the aspects by periods of political sacrifices. This chapter addressed political violence according to

the behaviors of authoritative governments with its focus on sacrifices. This study examined how political violence and resistance interacted in the whol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process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Libera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and how political violence appeared in the course. Periods were classified into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administrations, and Kim Youngsa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tative governments.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the social flow why political violence occurred, and the aspects of sacrifices were examined.

Chapter 5 analyzed the types of political violence. This chapter mainly focused on the behavioral types of political violence. To conduct a behavioral analysis, materials of related committees and groups were reviewed. Types of the total sacrifices were divided into the dead and the restrained and their statistical figures were summed. Based on this analysis, Section 1 examined each types by dividing into political killing, politically suspicious death, judicial killing and judicial punishment. Section 2 segmented each area.

Finally, Chapter 6 presented the present tasks to assess political sacrifices justly. The need to clearly disclosing the truth and proper punishment was suggested with its focus on confronting to the past currently in progress. This chapter analyzed the multiple processes of confronting to the past

developed when Korean society was shifted to a democracy system and presented the tasks of reassessment of political violence and its sacrific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f the poor statistical compilation of political violence because of the difficult access to and collection of political violence by a state authority. This study may be criticized that it only listed commonplac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by visual materials. Nevertheless, the rough measurement of sacrifices in Korean society may have advantage that the detailed degree of sacrifices by a state authority and the true nature of authoritative governments can be briefly and clearly revealed through statistical indicators. In this respec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making the record of political violence and its sacrifices simpler and clearer. Although this study described objective and externalized cases, it may contribute to gather scattered statistical data by related group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국가권력의 폭력(violence)과 이에 대한 저항폭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문·해직·투옥 등 피해를 강요당했으며, 반독재저항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등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해방이후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국가건설과 좌우 이념의 대립, 한국전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군사독재와 유신, 정치적 억압과 민주화투쟁,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평화적 정권교체와 점진적인 정착 등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사회는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간에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여 민주화를 이룩해오는 숨 바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폭력과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한국정치의 단면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과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의 과정이 동시에 존재해 왔다. 폭력은 합법적 권력행사의 외형을 띠고 때때로 군대, 경찰을 동원한 불법적이고도 노골적인 형식으로 진전되었다.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제주 4·3사건에서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직·간접적 폭력내지 공권력 행사에 의해 희생된 인원은 대략 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분단국가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좌경·용공’, ‘폭도’ ‘빨갱이’ 등으로 몰려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약화되면서부터이다. 피해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론화되거나 명예회복이 추진 중에 있다. 정치폭력이 공론화 된 것은 정치발전이라는 국내적 맥락에 못지않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인권헌장을 비롯하여 여러 인권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가 발달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사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국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왔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장기화 되었다.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구소련 해체 후 동유럽지역 등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전쟁과정이나 내전의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국가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같은 집단적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직접적 이유는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정권 또는 독재정권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에서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냉전시대 미·소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유래된다. 이와 같이 제3세계에서 널리 행해진 민간인 학살을 비롯하여 의문사 등 군사정권,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에서 과거의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구권이 몰락을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때이다.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세계인의 시선이 주목된 것은 남미이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엘살바도르 등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민간정부가 수립되는 등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민주화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을 민주주의이행이라는 성과에 중심에 두다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과 정치영역에서의 피해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로 피해자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회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 역시 관련 사실의 발굴에서부터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각 시기별로 평가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피해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피해자유족과 관련단체들의 입법청원으로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필두로 ‘의문사법’, ‘민주화기념사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등의 영향으로 피해자 문제를 재평가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논문은 해방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폭력의 문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지속적인 화두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우선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에 대하여 각종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멀리는 거창양민학살사건, 제주4·3사건 등에서부터 가깝게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폭력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의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주장되어온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정치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의 면면을 보거나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보더라도 이들 정권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이미지는 ‘독재’또는 ‘압제’의 그것에 가깝다. 이러한 정권의 이미지는 연속되는 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권이 가진 비민주성 또는 민주적 원칙의 파기 등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차원의 정치적 억압이 다양한 제도적, 제도 외적 수단을 통하여 행사되었고, 그에 대항하여 억압이나 압제에 대항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억압과 대항의 부딪힘은 지극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치영역의 변화는 유연하거나 서서히 진행되기보다 급격하게,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폭력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발전은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폭력과 저항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해 보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통한 한국정치 발전의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통치 시기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권위주의시기의 기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폭력의 기록과 피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쳐진 피해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인식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피해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폭력과 피해를 주변화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반민주적인 과거를 계승하며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여전히 복합적 현실 속에 존재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과거 피해를 촉발한 정치폭력의 담당기구들은 해체되거나 혁신되지 않았고 그 인적 주체들 역시도 변화하지 않았다. 물리적 강제성을 갖는 국가기구들은 언제든지 폭력성을 재발휘 할 수 있는 잠재화된 속성이 있으며, 국가권력은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써 정치폭력을 선호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폭력과 피해에 대한 기록은 현재적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의 적극적 저항으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이 불법적이며 일방적 형태로 가해지는 형태의 피해와 저항적 폭력의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국가권력의 헤게모니투쟁 과정에서 항거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형태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victim)의 의미 속에는 박해에 의한 '희생'의 의미와 함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의미를 동시가지고 있다. 피해의 경우 단순한 피해의 의미가 강하고 가해자에 의해 입은 상처나 손해 등 '객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희생(sacrifice)이라는 말 속에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피해라는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 피해의 의미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단순한 피해라는 의미보다 국가권력에 저항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희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논문은 다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권력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였는가? 둘째, 정치폭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저항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넷째, 정치폭력은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시기별로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또 피해의 유형을 국가권력의 직접적 개입여부와 간접적 개입여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직접적 강요의 의한 피해는 ①정치적 살인 ②사법살인 ③ 사법적 처벌 ④정치적의문사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 강요에 의한 피해도 ① 정치적 자살 ② 사적폭력 ③정치테러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문헌·자료연구를 통한 양적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정치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수준에서 통계·계량화하여 보았으며, 사례를 통한 폭력과 피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유형화 하였다.

이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1장에서는 정치폭력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정치발전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성과연구에서 탈피 정치발전에 내재된 정치폭력과 피해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보았다. 특히 제2절에서는 정치폭력의 개념을 통해 폭력과 피해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해 보았다. 이는 정치폭력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정치폭력에 대해서는 자유론적시각과 마르크스적 시각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러한 상호 비교를 통해 국가의 본질성으로써 위임받은 폭력이 존재하고 이러한 폭력이 동의 받지 못하고 정통성이 상실했을 때 필연적으로 저항적 폭력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피해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함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피해의 의미를 서술하여 보았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상정하고 이를 위해 정치 제도적 측면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치발전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연구의 시각을 제시해 보았고, 제 2절에서는 한국정치발전의 전개과정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용과 발전과정, 권위주의정권의 해체과정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정치발전과 정치폭력의 상관

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치폭력의 발생원인과 피해요인을 제시하였다.

정치폭력의 발생요인을 폭력의 가해적 측면, 즉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피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폭력의 발생요인을 정치·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수행하는 국가 공안기구의 폭력, 법적기제, 그리고 언론과 사회의 침묵 등을 주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치적 피해의 시기별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장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형태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치폭력을 피해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현대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해방이후 문민정부까지의 한국현대사 전개과정 속에서 정치폭력과 저항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기의 구분은 권위주의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전두환·노태우정권, 김영삼·김대중정권으로 시기를 분류하여 각각의 시기의 특성과 정치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흐름과 피해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치폭력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장에서는 정치폭력에 대한 형태적인 유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형태적인 분석에 대한 자료로는 관련 위원회 및 단체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이 피해의 유형을 사망, 구속자로 나누어 통계수치를 수합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절에서는 정치적 살인, 정치적 의문사, 사법살인, 사법적 처벌로 그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구분한 유형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치적 피해의 정당한 평가에 대한 현재적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정치폭력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정당한 처벌의 필요성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진행된 과거청산의 복합적 과정 분석하고 정치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재평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국가에 의한 정치적 폭력에 대한 자료 접근과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치폭력을 정확하게 통계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가시적인 자료만으로 양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진부한 결과만 나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피해에 대한 개략적인 계량화는 통계화된 양지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를 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서 정치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의 기록을 보다 간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긴다. 또한 객관적이고 외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에 의해 산별적으로 이루어진 통계자료를 연구대상화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제2절 정치폭력의 이론적 개관

1. 정치폭력의 개념

폭력이라는 요소는 국가의 기능에 있어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폭력(violence)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군대, 경찰, 교도소체계등과 같은 조직화된 물리적 제도들의 기능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¹⁾ 정치폭력이라고 할 때, 폭력은 사회의 제집단, 계층의 저항에 대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²⁾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은 막스 베버가 지적하는 것처럼 전통적이나 카리스마적 기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형태로 작동하는 합리적·합법적 기초에서 주어지게 된다.³⁾ 홉스(T. Hobbes), 로크(J. Locke)에서 베버에 이르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는, 근대 국가는 전근대의 폭력과는 달리 공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근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사사로운 감정, 증오, 국가의 자기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 공공의 복리라는 더 큰 가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정치적 변화나 권력의 유지에 있어서 폭력의 역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의해 이미 강조된 바 있으며,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폭력을 정치행위의 중요 요소로 간주한다. 라이트 밀즈의 경우도 ‘모든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며 권력의 궁극적 본성은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막스 베버 또한 ‘국가란 정당한 혹은 정당하다고

1) Lenin, "Better Fewer, But Better", Selected Works, Vol. 3, pp.671-710.

2)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읽는 책, 2002), p.24.

3) Max Weber 저,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p.100.

주장하는 폭력 수단에 기초를 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규정하였다.

근대 국가의 본질에 대해, 많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일정한 영토적 공간 (territoriality)에서의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monopoly of violence)'라고 규정한다. 근대로 이행하면서, 근대국가라는 영토적 경계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무장력이 국민국가에 집중화됨으로서, 폭력의 독점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법적·합리적 절차에 의해 공인되는 것이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다.⁵⁾ 국가는 지배적인 경제적·계급적 질서에 저항하는 투쟁을 억제하고 그 질서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가의 계급성이 경제적·계급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갖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면, 국가의 폭력성은 그러한 기능 수행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국가에게 있어 폭력은 '위임받은 권한'에 속한다. 이른바 공권력이 민중들의 저항폭력이나 테러와 다른 것은 그것이 '동의를 받은' 폭력이라는 데 있다. 이때 동의라고 할 때 동의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동의의 범위를 벗어날 때 그 공권력은 '동의 없는 폭력'이 된다.⁷⁾ 권위 있는 법치국가일수록 규칙에 의한 폭력, '자격 있는 폭력'을 더욱 구체화하며, 이런 과정에서 제도적 합법성은 폭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합의하에서 정해진 대의 절차를 거친 법 제정, 정치에서 독립된 사법당국의 법 집행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사적 소유권 및 사회적 강자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각종 사적 폭력을 조장해 오면서 저항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항에 의한 피해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법성 속에서 실체가 은폐되기도 한다. 그것은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냉전자본주의와 그 상부구조로서의 파시즘과 군사독재체제가 법의 지배 등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조차 부인하고 공공연한 폭력을 다반사로 행사해온 데서 잘 드러난다.⁸⁾

사회가 성숙하면서 노골적인 폭력은 정교화된 '법적 질서'로 대체되는데, 이것은 폭력의 소멸이라기보다 오히려 폭력의 중앙집중과 폭력 행사에 있어서 동의의 절

4) C. W. Mills,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171.

5) A.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1985), pp.120-129.

6) Frederic.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P.156.

7) C. J. Friedrich, and Brzezinski. Zbigniew,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Y: Praeger, 1956), p.271

8) 조희연, 전계서, p.36.

차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⁹⁾

동의 없는 폭력은 대항점으로 저항적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쟁이 마르쿠제(H. Marcuse)와 포퍼(K. Popper)간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억압의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의 폭력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주된 논점이다.

포퍼의 경우 폭력의 사용은 어쨌든 그 목적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마르쿠제의 경우는 삶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폭력의 사용도 고려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논쟁은 폭력/비폭력, 폭력에 대한 비판과 거부, ‘폭력=불법, 비폭력=합법’의 폭력의 합법성 문제로 이어진다. 억압을 통해 유지되는 국가만이 아니라 동의에 기반 하는 국가에서도 지배세력은 폭력을 합법화함으로써 피지배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지배질서의 최후의 물리적 통제수단으로서 군대, 공안 검찰과 경찰, 각종 정보기관 등 국가장치는 비합법적으로 작동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작동할 때도 지배권력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¹¹⁾

이와는 달리 피지배세력의 저항적 폭력, 대중들의 자생적인 ‘불가피한’ 직접행동은 노동과업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기존의 폭력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폭력으로 인식되던 실천형태를 사회 속에 제도적·합법적으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갖는다.¹²⁾ 한국사회에서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반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민주주의 투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운동의 급진성과 기묘한 결합을 이루면서 급진적 사회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주요 담론으로 작용해 왔다.¹³⁾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체제에서 체제에 대한 도전적 저항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왔다. 일반적인 경우 어떤 형태로는 기존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투쟁의 요구를 폭력을 통해 억압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폭력은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를 폭력을 근간으로 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폭력성과 이에 대항하면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폭력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형태로 보면 국가폭력(제도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저항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¹⁴⁾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9) Max Weber, op. cit. p.100.

10) 마르쿠제·포퍼 저, 홍윤기 편역, 『혁명인가 개혁인가: 마르쿠제·포퍼 논쟁』 (사계절, 1982), p.58.

11) 김정환,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이후, 1998), p.136.

12) 한나 아렌트 저, 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서울: 두레, 1997), p.175.

13) 김정환, 전게서, p.135.

된다. 즉 국가폭력과 저항에 대해서 사회성원들의 동의 여부가 폭력과 저항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¹⁵⁾ 그래서 정치폭력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동의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면 폭력의 정당성은 약화되게 되고, 그럴 경우 사회성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세계 군부독재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동의기반이 취약한 정치폭력은 더 큰 저항을 낳게 되고, 그 경우 폭력이 철회되거나 아니면 더 큰 정치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¹⁶⁾

정치영역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이 의문시되거나 권력이 추구하는 목적이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때이다. 이때 폭력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안적 수단이며, 목적을 통해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권력을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만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폭력은 양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을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폭력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일차적으로 정치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세계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폭력의 한 형태로 국가테러리즘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에 의한 공공연한 폭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권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약한 국가권력의 경우에 반대집단을 희생양으로 하여 폭력을 저지름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합법성을 위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의 취약함이다. 이 경우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라도 물리적 폭력의 수단은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압도적인 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적나라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폭력은 광범위한 정치현상으로 인해 상이한 의미와 함축성을 지니게 된다. 짐머만(Zimmermann)은 정치폭력을 '폭력'과 '정치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14)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p.134-135.

15) H. Arendt, op. cit. p.175.

16) 조희연, 전계서, pp.37-40.

17) 한나 아렌트, 전계서, p.62.

제시하고 사전적 의미에서 폭력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는 폭력을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정의하고 폭력은 인간이나 재산에 대한 상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폭력을 세밀화해 보면 “인간에 대한 육체적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¹⁸⁾ 이에 대해 기어(Gurr)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 “폭력의 행위자, 목적물, 내용과 무관하다”하면서 추가적 변수의 고려를 주장한다.¹⁹⁾ 그러므로 폭력의 특정한 의도와 특정수단의 사용을 명확하기 위해 정치폭력과 폭력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정치폭력에 대한 개념은 ‘집합성(collectiveness)’, 파괴성(destructiveness)’, ‘도구성(instrumentality)’의 성격을 토대로 분석 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구분으로 정치폭력의 개념을 규정한 대표적인 학자로 기어(Gurr), 혼더리치(Honderich), 아렌트(Arendt)를 들 수 있다. 먼저 기어(Gurr)는 정치적 실천행위의 집단적 공격성이 당국의 의식과 정책변화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혼더리치(Honderich)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파괴적 매력이나 암시를 통해 폭력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검색한다. 이들 개념규정방식을 간접적으로 결정·유인한 인물로서 아렌트(Arendt)는 폭력행위 주체의 인식적 자율성보다 물리적 도구성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데 주력한다.(표 1-1참조) 특히 아렌트는 정치적 힘의 ‘유형론(typology)’을 제시하면서 정치폭력이 주변의 다른 힘들과 갖는 관계나 힘의 전체구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비교하고 있다.(표 1-2 참조)

18) Ekkart. Zimmermann, *Political Violence, Crises, and Revolutions: Theories and Research* (Cambridge, Massachusetts: Schenkman Publishing Co, 1983),pp.6-9.

19) Ted Robert. Gurr, *Political Performance: A Twelve Nations Study* (Sage Professional Comparative politics Series, 1971),pp 17-19.

20) 박종성, 전게서, p.48.

표 1-1> 정치폭력의 개념규정: *Gurr/ Honderich/ Arendt*

| 구 분 | <i>T. R. Gurr</i> | <i>T. Honderich</i> | <i>H. Arendt</i> |
|------|---|--|--|
| 정 의 | 정권 그 자체와 그 구성원, 혹은 그들의 정책을 정면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활동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집단적 공격행위 ²¹⁾ | 기존의 법규범을 위반하여 정부의 체계적조직이나 의식세계 혹은 정책변화를 목표로 단행하는 대인·대물용 파괴적인 힘. ²²⁾ | 도구없이 발생하는 불가능한 전면적, 총체적 저항의 힘/사회구성체 전체에 대한 단일개체의 대치 ²³⁾ |
| 실천경로 | 실제적·위협적 폭력 | 사회구성원의 삶의 양식변화/주변사회의 존재양식변화 | |
| 현상 | 혁명·게릴라 전투·폭동·봉기 | 태도와 행동의 전환 | 개인적 반항과 의식적 저항/ 일상의 힘 |

출처: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49.

정치폭력은 시위, 호전성, 억압, 등의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적 질서에 의해 금지되는 육체적 힘의 사용”이라는 폭력개념을 선호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은 권위적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폭력을 “모든 형태의 육체적 힘의 사용”으로 규정하게 된다. 특히, 폭력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²⁴⁾

21)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4th ed, p.3.

22) Ted Honderich, *Three Essays on Political Violence* (Oxford: Basil Blackwell, 1976), p.9.

23)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pp.144-145.

24) 신명순, “사회갈등과 폭력,” 『외국문학』, 제3권 제3호 통권 제 11호, (1986), pp.126-127.

표 1-2>정치폭력의 의미 구조

| 개념 구분 | 의 미 | 성격 | 지향점 |
|---------------|---|-----|-----|
| 권력(power) | 단순한 인간행위능력과는 다른 복합적 단위의 성격 | 집합성 | 하향성 |
| 힘(Sterngth) | 권력과 다른 순전히 개인적 단위의 행동 | 개체성 | 상대성 |
| 세력(Force) | 폭력과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사용되거나 실제되는 물리적이거나 사회운동등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체 | 물리성 | 다방성 |
| 권위(Authority) | 존경과 의식적 복종의 유도차원 | 자발성 | 상향성 |
| 폭력(Violence) | 현상적으로는 힘의 개념과 유사하게 인식되나 실제로는 도구적인 힘 | 수단성 | 임의성 |

출처: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pp141-145.

폭력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폭력이 대중의 정치적 저항이나 일련의 정책적 반항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개념으로 보는 입장과 그 보다 한층 강한 내전이나 혁명수준에서 사용되는 힘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민중이 폭력을 사용하면 반대진영에서 이를 제압·관리하려는 또 다른 폭력이 잉태·유인된다는 논리와 정부 당국 스스로가 강한 폭력의 유발 원인이자 새로운 폭력단위로 물리적 대응이 저항을 유발시킨다는 관점은 정치폭력이 정치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정치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안청시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²⁵⁾ 그에 따르면 정치폭력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구조된 구조적 혹은 물리적 강제력의 명시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정치적 폭력을 (1)폭력 또는 기타의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대규모적인 조직의 존재나 그 동원 또는 조달행위,(2) 물리적 강제력의 수단을 실제 혹은 잠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위협행위, (3) 물리적 강제력의 실제적 사용행위 등의 전략적 요인 가운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요인의 상호결합으로 보고 있다.

25) 안청시, “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1977),pp.219-222.

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 폭력의 가시적인 형태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이다. 그러나 폭력은 반드시 물리적 힘이 곧바로 사용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힘의 직접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힘의 사용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폭력은 보다 은밀하게 행사되기도 하고 구조적이거나 위협의 제스처로 행사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폭력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든지 폭력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자원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폭력이 행사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은 그 정치제도가 맡은 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엘리트가 그 권위와 정통성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폭력의 동기는 기존체제의 전복 또는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정치폭력의 동기는 누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폭력의 주체는 정치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표 1-3> 정치 폭력 변수의 유형

| 수단 및 목표 | | 정치폭력의 주체 | |
|---------------|--------------------------|-------------------------|-----------------------|
| | | 대중폭력 (저항폭력) | 국가폭력 (정부폭력) |
| 정치폭력 의 전략 | 위협및 변화 | 반항(Protest) 변 화 | 강제(Coercion) 현상유지 |
| | 물리적인 힘 및 급진적 변혁 | 내전(Internal War) 혁명적 | 억압(Repression) 반동적 |

출처: 안정시,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 (1977), p225.

이상의 논의를 기초하여 안정시는 정치폭력을 주체, 목표, 수단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삼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정치폭력의 주체를 크게 정부와 대중으로 나

누고, 이에 따라 폭력의 형태를 정부폭력과 대중폭력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치폭력의 목표는 반동적, 점진적, 혁명적 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폭력의 수단은 폭력 사용의 위협에서부터 물리적 강제력의 명시적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26) (표 1-3 참조)

표 1-3에서 반항행위란 정치체제의 사적 집단이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강제는 주로 반항의 대응수단으로서 표현되는 폭력이며, 기존 체제의 공적부분에 의하여 주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내전은 혁신적 행동전략을 지닌 대중 지향적이고 대규모적인 물리적 정치폭력이다. 억압은 대중적 반란, 반대운동이나 기타 기존 체제의 정치적 안정유지에 대한 인식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강압적인 힘의 행사나 물리적 폭력구조를 말한다.27)

이와 같이 정치폭력은 개념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폭력을 크게 국가에 의한 폭력과 대중 또는 민중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각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력이 가시적으로 행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폭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물리적 폭력의 사용여부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 속에서 특정 국면마다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며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면마다 일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정치폭력의 유형들은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폭력(정부폭력) 과 대중폭력(저항폭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풀란차스(Poulantzas)의 논의에 따를 때, 저항폭력은 국가 일반, 국가유형, 국가형태, 체제수준 등의 네 가지 수준에서 전개된다.28)

첫째는 국가유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자본주의 국가유형으로의 이행과 동시에 그 정치적 상부구조가 민주주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저항이 존재한다. 시민혁명과 전후의 투쟁이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의 저항의 예가 될 것이다.

둘째는 국가형태 및 체제수준이 있다. 예컨대 전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 국가유형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대국가 범주 하에서도 독재적 국가와 민주주

26) 안청시, 전게서, p.225.

27) 상게서

28)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 Verso, 1986), p.184.

의적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시즘이나 제3세계 군부독재와 같이 ‘근대적’인 ‘예외’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적 형태로 유지되는 ‘정상’국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국가형태 및 체제형태의 국가수준에서 민주주의투쟁이 전개되게 된다.²⁹⁾

셋째 체제 이하의 수준, 즉 정권·정부·정책 수준이 있다. 이러한 여러 수준에서 국가의 폭력성 발현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투쟁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도 각 정권에 따라 시기별로 억압과 유화정책을 다르게 구사할 수 있다. 한 정부 시기에도 특정 시기에는 억압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유화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정치폭력의 현실적인 발현양상이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폭력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체제의 존립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전면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위기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한 정부(government) 수준에서의 위기, 한 정부 하에서 특정 국면(conjuncture) 수준의 위기, 한 정부 하 특정 국면에서의 특정 영역(area)에서의 통제 위기, 정권 수준에서의 위기, 체제 수준 및 국가형태 수준에서의 위기 등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체제를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고 할 때, 국가의 동의적 기반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강압과 폭력은 일상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³¹⁾ 전체주의 체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동의기반이 극소화된으로서, 체제 저항자에 대한 ‘폭도’로의 매도전략, 체제 저항자에 대한 테러전략, 그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증하는 대중조작전략 등 정치폭력의 일상적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권·정부 수준에서의 국가폭력성은 특정 정권이나 정부 하에서의 시기시기에 따라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한 정부 하에서도 강경억압정책이 구사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에 유화정책이나 포섭정책이 지배적인 되는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폭력과 저항의 상호관계를 정부 수준에서 보게 되면, 특정 시기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저항이 전개될 수 있다. 이 저항이 시민사회 내에서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국가폭력은 발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저항투쟁이 시민사회의

29) 손호철, "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 『현대한국정치-이론과 역사』 (서울: 사회평론사, 1997).p.57.
30) Bertramsen, Rene Bugge et.al. *State, Economy and Societ*,(London: Unwin Hyman,1991) ,pp.32-41.

31) 박형신. 『정치위기의 사회학』 (서울 : 한울, 1995). p.15.

동의를 받거나 혹은 동의를 폭넓게 받지 못하지만 조직적 동원력에 의하여 위협적으로 전개되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저항의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정치폭력을 동원한 억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여기서 한 정부—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의 통치 시기 내에서도 정치폭력을 동원한 억압에 의존하는 시기와 반대의 시기가 존재하게 된다.

정권적 수준이나 정부적 수준에서, 국가본질로서의 폭력성이 국가현실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국가폭력의 제도적 장치들—예컨대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둘째는 국가통치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폭력이 전면적으로 사용—예컨대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의 동원—되는 것이다. 전자는 제도적 폭력의 강화를 의미하며, 후자는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용을 의미한다. 정치폭력의 현재화는 이처럼 제도화된 장치로서의 국가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또한 더욱더 국가권력 행사의 현실적 양태에서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2.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

피해(victim)에 대한 사전적 분류는 5단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완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 책임이 적은 피해, 가해자와 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는 피해—자발적으로 범죄사건에 참가한 경우—, 가해자보다도 책임이 있는 피해—피해자의 도발이 가해의 주된 요인—, 가장 책임이 큰 피해—정당방위—로 구분하여 언급해 볼 수 있다. 이를 정치폭력의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국가폭력과 대항적 폭력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이 불법적으로 일방적 형태로 가해지는 형태의 피해와 저항적 폭력의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국가권력의 헤게모니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항거의 행위에 의한 피해 등으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형태적인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의 의미 속에는 박해에 의한 ‘희생’의 의미와 함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의미를 동시가지고 있다. 정치적 피해의 사전적 해석으로 피해(victim)와 희생(sacrific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 피해의 경우 피해의 의미가 강하고 가해자에 의한 입은 상처나 손해 등 ‘객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경우라 할 수 있

으며, 희생(sacrifice)라는 말 속에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 여기서 피해의 의미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의미하며, 또한 단순히 소극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희생을 의미한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가해적 측면에서의 정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출은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들 ‘정치적 피해자’ 또는 ‘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³²⁾. ‘열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직접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그 뜻을 성공하지 못한 채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³³⁾ 내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정의는 상반되어있는 입장을 보인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와 저항세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의 지준판단이 달라진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의사’의 사전적 해석은 “의로운 행동으로 그 뜻을 이루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 해석된다. 이는 ‘순국선열’로 국가에 의해 간주되어 국가적 차원의 추모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의해 행동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순국선열’과 같은 동일한 의로운 죽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정치폭력의 발생을 유발시켰던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도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 현재 민주화과정에서의 희생되어진 인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³⁵⁾ 또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분류하기도 한다³⁶⁾. 구조적 타살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열사의 개념에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2) 관련단체에서는 ‘열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컨대 ‘민족민주열사’, ‘통일열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나 희생자의 저항행위자체를 중요시 하고 있다.

33) 김영수, “한국사회 열사계승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2005 총회자료집』, (2005), p.5.

3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3), 열사편 참조.

35) 이러한 명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등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36) 1990년에 나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모음’에 따르면 ‘민족민주열사편’과 ‘희생자편’으로 나누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준비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자료모음: 살아서 만나리라』, (1990), p.1.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희생자’는 “정치적 타살임이 명백함에도 사인진상이나 법적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변혁운동 및 민주화 과정에서 ‘열사’는 저항세력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 1970년대 학생운동활동가들 혹은 재야인사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정치적 이슈를 내걸며 분신 혹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활동가 및 개인은 대부분 열사로 호명되었다.³⁷⁾ 특히, 분신은 자시희생을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의 형태로 이용되었으며, 지배세력의 압도적 폭력성에 대한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는 항거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³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극한적인 저항의 양식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절단하고, 새로운 의미망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분신 그리고 이들의 열사화는 저항세력의 새로운 ‘정치적 상상’의 기폭제로서 작용하였다.³⁹⁾

한국에서 분신자살로 알려진 ‘자살항거’(suicide protest)는 한국에서 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구미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승려들이 정부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분신을 감행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모리슨(Norman Morrison)이라는 반전 운동가가 국무성 계단에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였고, 연이어 로마 가톨릭 신도였던 한 대학생이 유엔본부 앞에서 분신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인도, 티벳, 영국, 터키, 그리고 호주에서도 자살에 의한 저항운동이 보고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1년 기간 중 런던에서 발간된 더 타임즈(The Times) 및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보도된 총 133건의 분신자살 중 약 절반 정도가 정치적 동기로 범해진 ‘정치적 자살’이었으며, 그 모두가 1963년 이후에 발발하였다는 것이다.⁴⁰⁾ 이는 ‘자살항거’가 전근대적인 행동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적 현상이며,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를 위시한 전 세례에 걸쳐 발생한 하나의 일반현상임을 시사한다.⁴¹⁾

37) 김원, “91년 5월투쟁의 일상과 담론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4), p.104.

38)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2003).

39) 김재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구성된 주제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p.40.

40) Hyo jung Kim, “Shame, Anger, and Love in Collective Ac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2002), pp.159-176.

41) Hyo jung Kim, op. cit. pp.159-176.

집단행동방식⁴²⁾으로서 자살항거행위는 퇴장전략의 하나로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 표출(voice by exit strategy)전략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퇴장(exitness)과 저항의사표출(voiceness)라는 두가지 척도 상에서 퇴장의 정도를 부분적(partial)·임시적(temporary)이나 전면적(total)·지속적(permanent)이나, 저항의사표출가 명시적(explicit)이나 암시적이냐(implicit)로 나누고 있다. 이런 척도에 따라 집행행동을 유형화하면 파괴전략(disruptive:파업, 보이콧 등), 도피저항(exit with voice-이민 등), 자살저항(voice by exit-단식, 분신, 투신 등의 자살)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 표출전략의 최고의 형태로서 자살저항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결국 자살항거는 억압적 정치구조 하에서 운동집단의 운동력을 고양함으로서 저항공동체(viable movement communities)의 개건을 위한 목적의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⁴⁾ 자살항거 이외에도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여러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제도화된 관행'에 의한 피해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 광범하고 불확정적인 처벌을 가능케 한 법률들이 있다. 국가체제 자체가 자기 보존을 꾀하는 제도적 관행은 인권침해로 당연히 귀결되며, 결국 국가범죄(state crime)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물리적 폭력, 법·제도적 폭력, 이데올로기적 폭력에 의한 피해이다. 국가에 의한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물리적 폭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전쟁기와 정권의 정치적 위기 때 자행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 정적에 대한 정치적 암살과 인권 유린적인 고문 등을 들 수 있다.⁴⁵⁾ 한편 이데올로기적 폭력은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와 '희생양의 정치'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모든 비판적 생각과 주류 이탈적 사고나 행위가 '좌경' '불순' '용공' '친북'의 혐의로 즉각 연결되며, 혼란, 분열, 해이는 즉각 불순 책동, 북한의 도발 위협, 안보 불안과 동일시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질서, 안정, 안보, 단결, 번영을 즉각 요청하는 심리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감시와 경계체계를 확립시킨다. 그리하여 반공주의 체제 순응성을 강제하는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

42) Albert O. Hirschman의 용어를 원용하자면 자살행위들은 '자살'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저항'이라는 목적을 달성(voice by exit)하고자 하는 한 극단적형태의 집행행동방식(collective action tactic)으로 분류할 수 있다.

43) Hyo jung Kim, op. cit. pp.159-176.

44) ibid.

45) 김정환,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이후 1998), p.138.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⁴⁶⁾ 지배세력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권력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일반 사람들은 ‘대중의 공포’(the fear of the masses) 속에서 이 희생양의 집단효과에 가담하게 된다. 즉 희생양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권력의 ‘희생양의 정치’에 대한 대중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지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저항세력은 ‘용공, 좌경, 극렬, 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 전복’세력의 음모로서 이해되었다.⁴⁷⁾ 정치폭력의 직접적인·간접적인 형태 이외에도 권위주의적 ‘상황’ 자체가 다양한 피해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권위주의적 ‘상황’ 자체가 비(非)국가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결과하는 경우들이 많다. 개별적 주체의 조건에 따라 저항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피해를 당한경우도 있고, 저항활동을 중단한 채 살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또한 저항활동도 합법적·불법적 공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조직적·개별적 저항의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적극적인 저항을 통한 반강제적인 피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희생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강요된 상태에서 피해를 강요받았으며 강요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배세력에 의한 직접적 강요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 강요도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강요되는 피해의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접근은 단선적일 수 없다. 그러나 저항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른 저항형태를 분류하고 저항운동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체적 활동에 따른 형태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란 “국가권력의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폭력과 물리적 국가기구로부터 강요되어진 피해로 국가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통

46)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서울: 삼인, 2000), pp.10-25.

47) 희생양이라는 말은 희생물의 무고함과 함께 희생물에 대한 집단 폭력의 집중과 이 집중의 집단적 결과를 동시에 의미한다. 희생양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 때문이었다. 지라르(R. Girard)는 위협받던 사회적 질서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는 항상 ‘희생양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희생양 메카니즘은 “①폭력이 실재했으며, ②위기도 실재했고, ③그 희생물들이 선택된 것은 집단이 비난하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희생물의 징후, 즉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④그 위기의 책임을 그 희생물에게 씌워서 그 희생물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오염시키는’ 공동체에서 추방시킴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옮김, 『희생양』,(서울: 민음사,1998). pp.44-45.

한 목적성을 갖는 피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를 의미하는 피해와 저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희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폭력과 관련된 피해 의미에 대한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놓고 이견들이 존재했다.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최소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를 최대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요구라는 관점-정치발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2장 한국의 정치발전

제1절 한국 정치발전의 시각과 논의

발전의 문제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래의 일이다. 처음에는 이 문제는 경제발전의 문제와 동일시되었으나 점차 경제발전은 경제적 요인에만 치중해서는 이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발전에 집중했던 학자들의 관심이 비경제적 요인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비교정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어 있는 신생국연구는 자연히 정치문화 및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그 초점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생국이 무상한 변화를 겪고 있는 극히 유동적인 사회이며 빈번한 정변이 잇달아 일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관심이 정치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¹⁾

1960년대에 들면서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많은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개념규정이 정치발전에 관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정치발전의 의미내용에 관해 완전히 일치된 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파이(L. W. Pye)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발전에 관한 잡다한 정의와 개념들을 정리해서 그 중 공통적으로 추려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3개로 모아 이것을 발전증후군(development syndrome)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는 정치발전의 기본적 요인으로 ①평등화, ②정치체제의 능력 증대, ③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를 들고 있다.²⁾ 이는 콜먼(J. S. Coleman)이 정치발전의 3대원리로서 제시한 분화, 평등화, 능력과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³⁾ 한편 동태적 비교분석을 시도한 알몬드(G. A. Almond)와 포웰(G. B. Powell)은 발전의 기준으로서 ①구조기능상의 역할이 분화, ②하위체제의 자율성, ③ 정치문화와 사회화에 있어서의 세속화 등을 들고 체계적인 발전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정치문화면에서 세속화를 정치발전

1) 김운태, 『정치학 원론』 (서울: 박영사, 2003), p.715.

2) Lucian W. Pye,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 Co, 1966), pp.45-47.

3) J. S. Coleman, *Studies i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15.

의 지준으로서 중요시하였다.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세속화개념을 중요시한 앵터(D. E. Apter)도 정치발전을 하나의 사회내에서 기능역할의 증식과 통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행위의 세속적 규범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정치발전으로 인식했다. 올간스키(A. F. K. Organski)는 정치발전이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가 국가목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효율의 증대이다”라고 하여 정치체제의 능력이 정치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한 바 있다.⁵⁾

이상의 제 학자들의 정치발전의 기본적 요인에 관한 견해에는 많은 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①정치체제의 능력의 증대,②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자율성의 수준, ③평등화와 정치적 참여의 확대,④정치문화의 세속적 규범의 보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발전의 논의는 능력의 증대, 자율성, 평등화, 세속화의 4자간의 대립관계와 상호견제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치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의 시작된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 또는 ‘정치현상’을 어떠한 시각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발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어왔다.

정치현상에 대한 시각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체제에서 정치적 역할, 목표성취를 위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란 사회구조에 있어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계급의 강제적 폭력적 수단이 표출하는 현상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일정한 사회발전 단계에 있어 하부구조의 반영물인 정치현상은 전체 사회구성체제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합법칙적인 역사적실체이며, 총체적 표현의 한 양상으로 발전단계상 사회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적 이해관계로 보았을 때 ‘발전’은 사회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사회적 재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이다.⁷⁾

한국의 정치발전은 현상적으로 단순한 기능적 ‘정치발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산

4) G. A. Almond and G. B. Powell,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 Approach* (The Little, Brown and Company, 1966), pp.299.

5) A. F. K. Organski, *The Stages of Political Development* (N.Y: Alfred A. Knopf, 1967),p.7.

6) 김운태, 전계서, p.720.

7) 김홍명, "정치경제학적시각에서 본 정치발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제20권, (1983), pp.199-201.

업자본시대의 값싼 정부가 사회전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형태로 변화되어 왔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발전을 단순히 전사회체계로서 기능중심으로 파악한 관점은 기계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정치발전은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규모의 통합과 분업에 의해 개별국가들의 정치구조를 규정 짓는 일정한 측면과 국가 민족내부에서 상이한 위상과 발전양상을 나타내는 제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의 되어야한다. 따라서 권력에 의해 그 사회가 거쳐 온 역사적 경험을 일정한 틀 지움으로서 정치발전의 독자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8)

정치란 사회제영역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성 속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일련의 현상이나 특수한 작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발전의 의미 또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표2-1) 한국 정치발전의 관점

| 시각 | 개념 | 지향 | 영역 | 범위 | | |
|-----------|-----------------------------------|----------------------------------|------|---------------------------|-----------------|------------------|
| 정치 제도적 시각 | 제도화, 서구화, 근대화 | 자유민주주의체제 탈권위주의 체제 일상의 민주주의 | 정치운동 | 민주주의 투쟁 or 민주화운동 |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 | |
| | | | 사회운동 | | ②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 | 반외세 반독재 투쟁 |
| 정치경제적 시각 | 사회구성체, 사회성격 민중, 계급, 피억압자 | 사회민주주의 사회경제적민주주의 생산자민주주의 | 지하운동 | | ③ 사회구성체 발전 | |

출처: 김홍명,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제20권, (1983). : 최성중, “정치발전의 개념에 대한 소고,”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0집, (1999)을 인용해 재구성.

종래의 한국사회의 정치발전 및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으로는 ‘종속적 발전이론’, ‘신흥공업국론’ ‘관료적 권위주의론’, ‘비공식부문론’, ‘주변화론’ 등의 이론이 있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한국사회가 제3세계 일반의 사회들이나 혹은 종속적 산업화를

8) 김홍명, 전계서, pp.199-201.

경험하는 사회들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회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들에 비추어 한국적 현실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⁹⁾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의 요인을 한국과 비슷한 단계에 놓여 있는 다른 사회들의 발전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이론적으로 분석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범주화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정치 발전단계를 민주화 이행내지 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바탕 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민주화이행과정으로 보는 시각의 중심에는 1987년 6월 항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6월 항쟁을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발전한 계기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인 최근의 정치발전의 시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¹⁰⁾ 통상 한국 민주화의 기점은 1987년이라 말해진다. 1987년은 오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시발점을 상징한다.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일정한 정당성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가 이행기 (transition)를 거쳐 공고화(consolidation)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¹¹⁾

대체적으로 이행기적 시각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민주화운동 또는 항쟁론적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있고 이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민주화 운동이며 그러한 점에서 민주화 항쟁은 대규모 대중이 참여, 권위주의 체제의 타도나 그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의 극적인 표출인 것으로 인식한다.¹²⁾ 민

9) 이러한 이론적 시각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한상진,“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1983); 강민,“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제 17집, (1983) ; 임현진,“중속적 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모,” 변형윤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1985) 등이 있다.

김진균, 조희연,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분단과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p.397.

10)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삼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1단계'를 거친 후 김대중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2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과 한국사회가 김영삼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기' 내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제1단계'를 거친 후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 내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2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 등이 있다.

(정대화, “국민의 정부: 민주화 2단계 진입, 그 성과와 한계,” 학술단체협의회, 『제1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9) : 김세균, “한국민주화과정과 정치적-이념적지형의 변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p.48.

11) 이행(transition)은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시작하여 민주적인 상대적으로 안정적 정치체도의 형성시기를 포괄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공고화(consolidation)는 새로운 민주적 제도 및 이 제도가 수립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Gunther, Richard, et al.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Johns Hopkins Univ, 1995), pp.29-31.

주화운동 또는 항쟁론적 시각은 다시 주체 및 추진세력의 문제에 대해 민중의 주도적인 역할과 한국사회의 체제변혁적인 지향을 강조하는 민중주의적 입장¹³⁾과 중간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간계급론적 입장¹⁴⁾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민중주의적 입장은 1980년대에 등장했던 운동론의 급진주의적 경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간 계급적 입장은 절차적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의회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의 민주화를 요소를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중간층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근대화론’(modernization-theory)의 이론적 전제 위에 성립해 있다.¹⁵⁾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도정치권의 야당세력과 중간계급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정치발전과정의 부분적 설명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⁶⁾

민주화 과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화 이행론이라는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민주화 이행론은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에 걸쳐 남유럽과 남미에 이루어 졌던 군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독재세력의 강·온건과와 민주화운동세력의 강·온건과간의 전략관계 속에서 양 세력의 온건과에 의해 민주화의 정치게임 규칙이 타협점을 이루면서 민주화이행이 실천되어 간다는 것이다.¹⁷⁾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에서 한국의 민주화이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민주화이행은 위로부터의 개방과 아래로부터의 저항간의 변증법적 결과로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균형의 결과였다고 분석한다.¹⁸⁾

12) 정해구·김혜진·정상호,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 오름, 2004),p.13.

13)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는 조현연, “6월항쟁의 이념. 주체. 전략” 학술단체협의회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1』(서울: 당대, 1997), “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서울:한울, 1995)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인 동시에 체제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로 조직화, 대중화, 의식화의 측면에서 그전의 보수적인 저항운동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민중주도의 체제 변혁적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저항운동세력의 다수우과가 6.29선언을 수용함으로써 인해 체제변화의 기회가 실패로 끝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4) 윤상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10-15.

15) 박광주, 『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 지평』(서울: 나남, 1994).pp.103-114.

16) 김동춘, “한국민주화의 주도세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자료집』,(2002).p.12.

17) 오도넬, 슈미터, 화이트헤드,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서울: 한울, 1987),pp.30-41.

18)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1990), 『시장, 국가, 민주주의』(서울: 나남, 1994)에 따르면 정권의 반대세력은 혁명적으로 정권을 전복시킬 물리적 힘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정권은 물리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패랑효과에 의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과멸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화이행의 주

최근의 정치발전의 논의가 이러한 민주화 이행론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민주화 이행연구의 지침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이행론은 구조보다는 행위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행론적 관점은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을 민주화이행과정이라는 도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항쟁이 갖는 운동성을 제대로 포착 못함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논의 역시 국가의 전략적 프로젝트, 혹은 지배블럭 내의 행위자의 선택과 타협을 중시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인 계급관계, 계급역량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¹⁹⁾ 한국 정치발전의 원천은 독재세력의 억압에 대한 불굴의 저항을 가능케 했던 운동의 도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참여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이해를 넘어 전체로서 응집시켜주었던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인한바 있는데 민주화 이행론은 이 같은 독특한 운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민주화란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상태로부터 또 다른 상태인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촉발시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초래하고 민주화라는 과정이 정치발전을 가져다주는 관계이다.²¹⁾

도권을 체제내 온건개혁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19) 이러한 전략선택이론은 민주화를 기본적으로 권력 블럭과 반대세력 간의 내부동학으로 설명한다. 결국 민주화는 권력블럭과 민주화세력의 타협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적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는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개념이 대단히 큰 한계를 갖는 것도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김동춘, 전개서, p.19.)

20) 최장집은 한국에서 ‘운동’이 민주화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오래 지배하고, 정치적 진입의 관문이 차단된 한국과 같은 후발국가에서 운동외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최장집,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한국정치학회, 『한국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2000), pp.31-36.

21)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 p.16.

표2-2)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시각

| 시각 | 입장 | 민주화의 요인 | 비 판 |
|------------------|--------------------|----------------|-------------------------|
| 수구적·보수적 시각 | 급진세력의 기획으로 바라보는 입장 | 민주화의 부정 | 민주화의 부정 |
| 민주화운동 또는 항쟁론적 시각 | 민중주의적 입장 | 운동성 | 운동론의 급진주의적 경향 |
| | 중간계 급론적 입장 | 운동성 | 정치권의 야당세력과 중간계급의 역할만 강조 |
|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 |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적 결과 | 타협의 결과, 정권의 관용 | 운동성의 무시 및 방조 |

출처: 최장집,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한국정치학회, 『한국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2000), : 김동춘, “한국 민주화의 주도세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 손호철,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을 인용해 재구성.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해 철차적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위해 벌여온 저항운동을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발족하면서 등장했다.²²⁾ 이러한 용어는 민주주의를 수행하기위한 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정치발전의 경로로서 용어의 문제는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파시즘, 권위주의의 통제나 외국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민족적 운동의 개념으로 저항운동의 개념이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세력의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는 저항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민주회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변혁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단운동의 개념으로서 사회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의 부분별 특징을 담은 용어는 민족민주운동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2) 손호철, 전게서, p.18.

제2절 한국 정치발전의 성격과 특징

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원과정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현실의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묘사하는 현실주의적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현실운동을 이끄는 목적론적 이상이자 개념²³⁾으로 사용되었다. 후자의 개념에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념의 내용이 달라져 왔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운동의 이념인 동시에 그 이념 자체가 운동의 산물인 역사적 현상이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개념은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의 중심적 측면을 박탈함으로써 급진적 이상으로부터 보수적 정치이념으로 변형되었다.²⁵⁾

현실주의적 개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2차 대전후 냉전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수호의 이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²⁶⁾ 서구 민주주의 현실에 맞추어 민주주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시도는 슈페터(Joseph Schumpeter), 달(Robert Dahl), 립셋(Seymour Martin Lipset)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현실 정치과정의 절차적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대중의 역할을 정치엘리트를 선출하는 것에 국한시켰다.²⁷⁾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 자유민주주의였다. 해방 후 한국이 수용한 자유민주주의는 미소냉전에 의해 이미 세계적으로 보수화된 이념이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과 구별을 위한

23) 송병현·이나미·김면희,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pp.6-20.

24) 송병현·이나미·김면희, 전거서, p.23.

25) 립셋은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에서 “민주주의는 정부관료제를 변화시키는 정기적인 합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Dahl)은 투표로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Seymour M . Lipset, *Political Man :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extended and updated edi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 1981), pp. 130-131.

26) A. Leghtton. Joseph, *Social Philosophies in Conflict: Fascism, Nazism, Communism, Liberal Democrac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1937), pp.120-131.

27) 강정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2002), p.22.

이념이었다. 2차대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이념에 기반을 둔 체제를 형성했으며,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신생독립국가들 역시 서구적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이들 국가들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혁명이 발생하자, 서구 민주주의는 이들과 구별되는 이름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²⁸⁾

특히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존의 정치와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기본적으로 현존 질서를 옹호하려는 보수적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안으로 급진주의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보수적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인민에 의한 지배’의 구현이라는 고전적민주주의의 열망보다 입헌적 절차와 통치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이처럼 축소·해석된 이념이 수입된 것이었다. ²⁹⁾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내재적 성장 없이 외부에서 특히 미군정에 의하여 이식되었다. 또 국내외에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결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범위가 축소된 상황이었다.³⁰⁾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지형의 우경화, 그리고 집권세력의 실현의지 부재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축소를 낳았다.³¹⁾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은 ‘반공과 ’반독재‘ 였다. 즉, 소련 및 동구권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의 반공과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의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의 반독재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³²⁾

이중 반공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주로 독재정권에 의해 강조되었다면, 반독재는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해 주장되었다. 따라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 즉 반공과 반독재는 각각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에 의해 주장되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반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반독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간의 다툼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논쟁사에 중요한 부분이다.

28) C. B. Macpherson 저, 김규일 편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서울: 양영각, 1984), pp.192-193

29) 강정인, 전계서, pp.48-49.

30) 남한에서의 정치의 장은 타율적으로 미군정에 의해 규정되었던 까닭에 반봉건적·외세의존적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구조를 담당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김홍명,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제20권, (1983), p.213.

31) 전재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강정인의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2002), pp.123-124.

32) 송병현·이나미·김면희, 전계서, pp.67-68.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담론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무렵 반공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³⁾ 반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³⁴⁾이승만에 대한 묘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인 ‘반독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였다.³⁵⁾ 반공과 반독재로서 출발한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내용적 측면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측면을 갖게 되었다. 봉건적 권력에 저항하면서 갖게 된 대의제, 선거제, 언론의 자유, 개인주의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내용은 주로 야당과 민주화 세력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독재정권에 의해 주장되어진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악용되면서 그 내용을 왜곡·협애화 되면서 이에 저항세력이 그 이름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³⁶⁾

해방 후 민주주의에 대한 표명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건준은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제요소를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⁷⁾

33) 1955년 신도성은 『사상계』에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과제”란 제목의 글을 실으면서 “요즈음 유행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데 대하여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쓰이고 있으며,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들추는 인사들 중에는 이것을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위한 소극적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쓰고 있다. 신도성,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과제』 (서울: 사상계, 1955), p.100.

34) 이승만에게 있어 반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분단노선은 국내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에게 있어 어떻게 분단의 현실을 미국인에게 인식시킬 것 인가가 주된 과제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의 여론과 현지주둔 사령관들의 호의에 의존하는 운동을 하였고 분단 상황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체제를 전사회적 분야에 확산·심화시켰다. (김홍명, 전계서, p.214)

35) 1959년 『사상계』의 “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글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부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릇된 자유민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글에 의하면“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성격은 과거의 전제군주시대의 가산국가적관념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대한 집권자의 유권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

한태연,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사상계』, (1959), p.19.

36) 송병현·이나미·김면회, 전계서, p.71.

37) 건준은 1945년 발표한 『선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진보적민주주의란 말은 특징이 민주주의를 지칭 한다기 보다 일제식민지배의 반동성에 대한 반대적 의미의 포괄적 언술이었다. 송병현·이나미·김면회, 전계서, p.80.

표2-3) 한국 민주주의 담론의 변화

| | 50년대 | 61년-87년: 개발독재 시대 | |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기 |
|---------------------|--|---|--|---|
| | | 60-70년대 | 80년대 | |
| 지배의 경제적 세대(자본주의 발전) | 전산업화단계. 취약한 비지계급, 해체되어가는 구 지배계급 | 산업화. 개발독재 하에서의 산업화의 진전과 그로 인한 비지계급의 성장. 시장의 성장. | | 포스트-산업화. 신자유주의적 조건 하에서, 국가동원체제 하에서의 왜곡성을 극복하면서, 합리적 시장의 출현을 위한 과제가 제기됨. |
| 현실 정치투쟁 조건 | 민간권위주의. 반공규율사회적 조건 속에서, 안보독재. | 군부권위주의. 부정적 안보에서 긍정적인 목표인 근대화, 개발독재로의 전환. 국가해계모니 프로젝트의 호소력. | 근대화 및 개발의 모순. 모순의 첨예화. 자유주의정치세력(개량)의 비합법화. 장외 운동정치와의 결합. |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른 민주주의로의 이행. |
| 경제적 주류-저항담론 | 원조경제 하 경제적 발전정책담론. | 근대화론(개발주의 담론) 대 민족경제론(국독자론, 사회주의론). 자립경제론이 대안으로 제기됨. 근대화의 종속적 성격에 대한 비판. | 반자본주의담론의 출현 및 확산. 개발독재로 인한 자본주의화에 대한 혁명적 저항. | 새로운 지배담론으로서의 세계화담론. 80년대의 반자본주의담론의 주 변화. 공공성 옹호라고 하는 ‘방어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복합 담론의 부상. |
| 정치적 주류 담론-저항 담론 | 극우적 성격을 갖는 ‘반공주의 담론’. 저항담론의 부재. 자유주의적 경향은 취약(어용적 자유주의와 비합법적인 자유주의) | 한국적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지배의 독재화에 따라, 그나마 취약한 자유주의는 어용적 자유주의로 존립하거나, 비합법적인 급진적 반독재운동에 합류(자유주의와 진보주의운동의 연합=민중운동) | 민주주의를 혁명적 투쟁·진보주의의 혁명화. 진보주의 담론의 혁명화. 자유주의담론은 침묵. | 민주주의 회복에서 민주개혁 담론으로의 전환. 민주개혁의 철저화와 민주개혁의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확산을 둘러싼 지배와 저항의 담론적 각축 존재. 민주주의의 형식적 정착화에 따른 자유주의적 운동의 등장.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적 운동의 성장. |

출처: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동학(3)』 (서울: 함께읽는책, 2003), p.124.

그러나 여운형과 건준의 인식은 이들의 경향으로 볼 때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³⁸⁾ 좌파의 선점적 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된 조직이 한민당 이었다. 한민당은 대체로 일제 식민권력 아래에서 지주 또는 자본가였기 때문에 좌파의 주장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보완해

38) 정해구, “민군정기 이데올로기 갈등과 반공주의”,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pp.14-16.

줄 세력으로 미군정을 찾았으며, 좌파의 성장을 막고자 했던 미군정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기에 한민당은 미국 또는 한국내의 미국계 선교회관에서 교육받은 전문적인 교육계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혹은 보수적인 세력 이었다³⁹⁾ 따라서 미군정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파를 지원하였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교육시켰다.⁴⁰⁾ 한국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소련을 비판하기 위해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⁴¹⁾ 이때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영·미식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⁴²⁾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적·공리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이고 탈정치적 이라는 것이다. 미국식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존 듀이(John Dewey)라 할 수 있는데 미군정기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철학은 거의 듀이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었다.⁴³⁾ 듀이의 주된 주장은 민주주의가 생활양식으로 규정되는 근거는 실용주의이며, 실용주의는 형이상학을 거부하며, 경험은 인간의 행위를 위해서 목적에 맞춘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탐구, 직관, 표현 등은 인간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하는 보다 높은 결정적인 관점에 따라 행해지며, 실용주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하나의 생활방식으로서 민주주의 정신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당시 한국의 교육자들은 듀이의 민주주의 개념을 통해 진리의 상대화, 실용주의, 일상생활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를 각자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개인주의화하고 탈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이는 정치적 문제를 개인의 경험과 개선의 문제로 돌리게 함으로서 문제의 책임을 국가나 권력에 돌리지 않고 국민 각자에게 돌리는 효과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다.⁴⁶⁾ 이러한 민주주의적 개념은 이후 강한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정치적이념이 되었다. 이후의 정권역시 냉전 질서를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이념을 표

39) 정해구, 전계서, pp16-17.

40)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서울: 민영사, 1990), p.409.

41) 손인수, 전계서, p.339.

42) 송병현·이나미·김면회, 전계서, p.83.

43) 김동구, 『미군정기의 교육』 (서울: 민음사, 1995), pp150-151.

44) 손인수, 전계서, p.322.

45) 손인수, 전계서, p.329.

46) 송병현·이나미·김면회, 전계서, p.86.

방해 왔다. 결국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내적으로 계급이익을 대표하고 국제적으로는 반공진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⁴⁷⁾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용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한국에서 독특한 시대적 소임을 담당했다. 한국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시공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유럽 및 미국과 동일한 유형으로만 기능하지 않았고 한국적 조건에서 특수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세력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유달리 강조되면서 적절히 동원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지배 규범은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였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외적 환경 속에서 외부적 힘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존재 이유와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패망으로 얻어진 해방 공간에서 ‘해방자’ 미국의 이상과 체제를 본뜨고 동시에 부과된 이념으로서, 분단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근거지 확보를 위한 보수연합세력을 정당화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산권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는 반공정책의 지주로 그 이념적 가치를 지녔던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도입 과정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의 각종 개혁운동 및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되었던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 민주독립의 정신과 연계되어 발전되지 못하였고, ‘반공의 틀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란 이상한 형태로 피어났으며⁴⁸⁾ 이는 바로 분단체제에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특성을 지녔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개역사는 다른 한편 권위주의 정권의 반복적 출현과 그 붕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1987년 이후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가시적인 진전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196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의 40여 년간의 압축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선발국들과 비교할 경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저항적’ 지킴으로서의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기능이 그것이다.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의 자본주의적

47) 문지영,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 수립 후 1970년대 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2)p.213.

48) 최문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이념의 모색,” 구범모 편,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서울: 고려원, 1992), P.173.

인 발전이 성숙되는 것과는 불균형적으로 지체된 정치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나름대로의 정치발전에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1950-1980년대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이 수용한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 그 이념의 태동기에 봉건질서에 저항하면서 보여준 혁명적인 진보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 성숙기에 들어선 그리고 미소 냉전체제에 의해 이미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념으로 변질되었다.⁴⁹⁾ 한국사회에서는 세계적 추세와 시간적 격차를 보이면서 사회개혁과 대중동원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은 지배 이념에서 대항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⁵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는 집권 세력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역시 서구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도 그러한 이상을 준거로 하여 전개하였다. 일부 야당인사와 재야 지식인들의 반대논리는 반공국가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반공의 실질적 토대구축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질서회복을 강조하였던 것이다.⁵¹⁾ 현실정치에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을 옹호하는 세력은 보수적인 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영역에서의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한국정치와 사회 현실의 균열구조의 제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오히려 진보적인 세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의 균열구조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속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지 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²⁾

49) 강정인, 전계서, P.48.

50) 전재호, 전계서 p.160.

51) 김동춘, . “1960,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1994) pp.226-237.

52) 손호철, 전계서 .p.31-33.

표 2-4) 한국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인식

| 시기 구분 | 이승만, 민주당 정권 시기 | | 박정희 정권 시기 | | 전두환 정권 시기 | |
|----------|--------------------------------|------------|-----------|----------|-----------|-----------------------|
| | 1950년대 후반 | 1960-61 | 1961-72 | 1972-79 | 1980-84 | 1985-87 |
| 민주주의의 성격 |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진보당) | 형식적 민주주의 | 형식적 민주주의 | 형식적 민주주의 | 형식적 민주주의 |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
| 접합 담론 | 반공주의/ 사회주의 (진보당) | 반공주의 지양 | 반일 | 민중 | 민중 반미 | 사회주의 반미 |

출처: 전재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강정인의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2002), p160.

2.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 과정

일반적으로 정권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거시적이고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행위자들 및 그들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해관계를 강조하며 가능성과 선택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이다.⁵³⁾ 가능성에 관한 연구의 접근법 중 하나는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적 접근법은 모든 특정체계를 구성하는 불변의 요소들과 이 요소들이 허용되는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어느 특정한 상황이 어떤 요소들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구조주의 접근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험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상황을 추상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뿐이다.⁵⁴⁾

또 하나의 접근법은 형식논리학적 측면인데, 현실적 상황은 과거 역사에서의 하나의 상황과 비례해서 발생하여 갈라지는 분기점으로 파악하고 정권의 전환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이다.⁵⁵⁾ 이러한 접근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립셋

53)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오도넬 · 슈미터 · 화이트헤드,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서울: 한울, 1987), p98.

54) Etienne Balibar, “The Basic Concepts of Historical Materialism,” Louis Althusser and Etienne Balibar(ed.), *Reading Capital*, (New York: Pantheon, 1970), pp.14-19.

55) 오도넬 · 슈미터 · 화이트헤드, 전제서, p.113.

(Lipset)이다. 립셋(Lipset)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체제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작용시켜야 하는 정치체제로서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치체제는 혼돈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정치의 경쟁 결과 유효한 권위를 어떤 집단에 일정 기간에 걸쳐 부여받지 못한다면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권력의 권위는 비대칭적으로 증대하고 그 반대로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이 극소화 되면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체제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다.⁵⁶⁾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 전체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무관한 강압적인 지배제도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⁵⁷⁾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은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행해진다.⁵⁸⁾

이러한 성격의 권위주의를 유형화하면 보수적 권위주의 체제, 급진적 권위주의 체제, 복합적 권위주의체제, 특정 지배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군사 권위주의체제, 약탈적 권위주의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⁵⁹⁾

이러한 구분은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존재양상을 중심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수적 권위주의체제는 기존의 사회구조나 상황, 특히 지배 계급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특정 지배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갖춤으로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를 배제시키고 노동자의 시위나 조직적 정치활동, 정치적 비판을 강력하게 금지시켰다. 이는 극심한 물리적 강제와 통제가 일상적인 통치방법으로 강구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전형적인 제3세계의 후기 식민사회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식민지로부터 신 식민지적 외압체제로 출발해서 군사쿠데타로 이어진 정치상황은 군사 권위주의 관료체제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지배엘리트의 성격은 명분과 당위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아시아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에게는 정당성 결여로

56) Seymour M . Lipset *Political Man :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extended and updated edi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 1981), pp. 130-131.

57)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학문사사상사, 1997),p.451.

58) Robert „Nisbet, *Prejudices: A Philosophical Diction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18

59) Harmon. Zeigler, *The Political Community, White plains*,(NY: Longman. 1990), p.193.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시대에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연관되었던 친 식민지적 인사들이 통치의 하수인으로 기능했고, 이들은 1940-1950년대의 분단시기에 강대국에 종속된 정치지도자로 그리고 다시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지속시켰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당성의 한계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배엘리트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화로 나아갔다. 근대화의 국민 동원적 시도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치배분에서 오는 불균등성으로 심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배엘리트의 정당성 한계와 경제적 사회갈등의 심화는 자연히 한국사회에서 온건한 방법으로 민주화를 추구했던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적 방법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했던 급진세력 사이에 연대관계를 형성시켰고, 그것이 결국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군부체제를 연성적 권위주의 체제로 변모시켰다. 이른바 유사 민주주의 체제적 속성⁶⁰⁾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⁶¹⁾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신 중산층과 노동자계급과 같은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 층이 형성-발전된 것을 구조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밑으로부터의 국민적 저항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면서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은 한국의 정치발전 방향을 전환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범국민적 저항은 이후 권위주의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시키며 현 시기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과정'⁶²⁾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시기적 형태를 띠고 해체와 재구성되었다. 1945년부터 1950년대 안보와 반공을 악용하는 민간권위주의 정권에서 독재체제를 강화해 가는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군부권위주의를 거쳐 민선군부정권으로서 노태우정권이 등장하였다. 이후 민선민간정권⁶³⁾이지만 연성권위주의⁶⁴⁾성격을 갖는 김영삼정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국의 권위주의 해체 과정은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민주화의 형태

60) 정대화, “국민의 정부: 민주화 2단계 진입, 그 성과와 한계,” 학술단체협의회, 99년 제1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9.

61) 진덕규, 전게서, pp 472-473.

62) 김세균,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한국 민주화과정의 경과와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정치학회편, 『해방50주년 기념논문집』, (1995). pp.30-35.

63)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함께읽는책, 2002), p 25.

64) 연성권위주의 체제는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체제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동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진덕규, 전게서, p. 470)

를 띠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과정과 민주적 제도의 출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⁵⁾

표2-5)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 권위주의 체제기 | | | 민주주의 체제 이행기 | 민주주의 확대-심화과정기 |
|----------|----------|----------------|-------------|---------------|
| 체제 성격 | 민간권위주의정권 | 군부권위주의정권 | 민선군부권위주의정권 | 연성 권위주의정권 |
| 시기 | 이승만정권기 | 박정희· 전두환정권기 | 노태우 정권기 | 김영삼 정권기~ |
| 특징 | 안보 독재 | 개발독재 | 유사 민주주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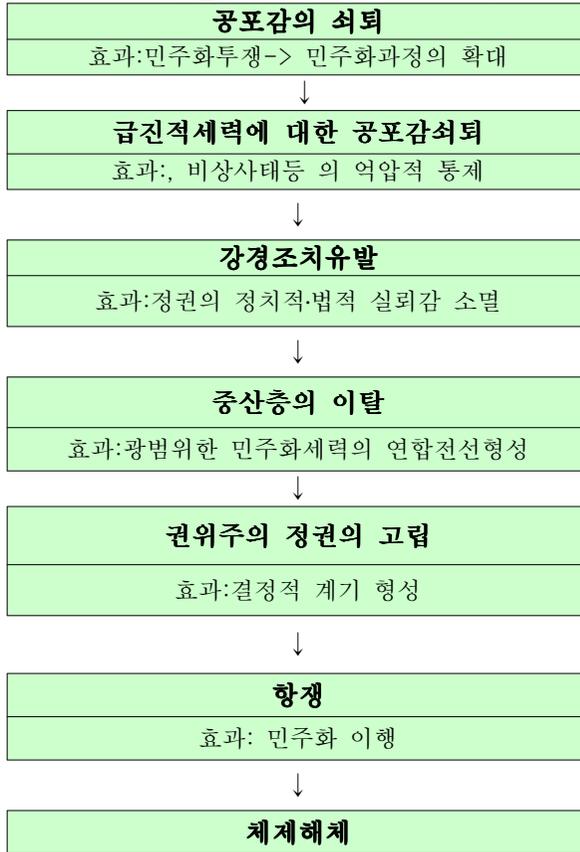
출처: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함께읽는책), 2002년 10월, 『현대정치학』 (서울:학문과 지성사), 1997, 참조하여 재구성

권위주의정권의 해체과정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위기감과 공포감의 쇠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공포감을 조성시켰다. 이러한 공포감은 급진적이고 저항세력들에 의해 조성된 위협의 정도를 과장하여 실제로 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뒤에도 이러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공포감의 기간이 한정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제 이완은 새로운 정치상황을 창출하였다.

정권의 물리적인 ‘반공’ 정책이나 ‘비상사태’형의 통제 등에 대해 정치적·법적 신뢰감이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는 정치적 개방조치에 대한 민주화 압력이 거세지게 되었다. 민주화에 대한 압력과 공포감의 쇠퇴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는데 위기감을 느낀 권위주의 정권의 강경조치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은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의 연합으로 이어졌다. 민주세력의 연합은 정치적·제도적 공간의 개방으로 인해 보수적인 일부 중산층에 까지 확산되었으며, 법률가, 언론인, 학자, 그리고 제도적 정당 내의 직업정치인들도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도적 정당 내 직업정치인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보다 큰 자율성, 정당의 역할 증대, 언론과 대학의 자유 증대, 토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며 대중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65)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 전게서, p113.

표2-6) 권위주의체제의 해체 과정



출처: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 『권위주의정권의 해체와 민주화』(서울: 한울 1987).참조 재구성

중산층의 지지는 노동자 계급과 농민세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제한된 능력과 정치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세력이 되었으며 광범위한 민주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증대된 부는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하층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길다란 피라밋 형의 계층 구조의 모양을, 중산계급이 증대한 마이아몬드 형의 사회 구조에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중산계급의 기질이 결국 온건하고도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유리하게 해주고 과격한 집단을 불리하게 함으로서 그만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산층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상류계급의 정치적인 가치나 형태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상류계급도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 저항세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의

오만한 정치적 형태는 이들에 대한 과격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대항세력의 원천적인 매개적 역할 작용으로서 중산층의 위치를 상징할 수 있다.⁶⁶⁾

한국사회에서 민주세력의 연합은 중산층의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이탈을 불러왔고, 권위주의 정권은 고립화되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수동적인 입장에 놓인 게 된 권위주의 정권은 더 이상 공포감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연대기구가 형성되고 이 조직에 의해서 저항운동이 구체화 되면서 일반 민중들까지 저항의식은 확대되어 갔다. 일반 민중들의 저항 열기는 곧장 사회적 압력으로 변화되어 지배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더 이상 그 권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⁶⁷⁾

현재 한국 정치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민주주의체제'라 할 수 있다. 그간의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민주화를 추동시킨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에서 나오긴 했지만, '타협적 민주화'의 형태로 진척되어왔다.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군부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가능케 하는 '헌법개정'으로 종결되었다. 1987년 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은 크게 보면 형식적-절차적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형해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이 과정은 그러나 그냥 순조롭게 진척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배블록이 대중의 강력한 저항을 억압적으로 탄압하거나 체제내적 운동으로 포섭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 역시 커다란 변모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노동자-민중운동이 폭발하고,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66) Seymour M . Lipset , op. cit. pp.160-162.

67) 오도넬 · 슈미터 · 화이트헤드, 전개서. p.113.

제3장 정치폭력의 발생요인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은 급진적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지향가치는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정치집단이나 정치세력의 정당화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저항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는 이념적 가치로서 정치적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급진-자유-온건-보수-반동의 형태¹⁾로 나타났다.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현상에 대한 도전을 적극 저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형태의 정권은 권위주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저항운동은 기존체제의 근본적이며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 정치형태를 갖추었다.

저항세력의 급진적 정치형태는 지배세력에 의해 사회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피해양으로 이용되었다. 공포심에 의한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저항세력은 ‘용공, 좌경, 극렬, 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전복’ 세력의 음모로 이해되어 정치폭력을 양태하게 되었던 것이다.²⁾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통치의 기본적 수단으로 공권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의 기제와 동의를 기제를 구사하였다. 이 동의라는 것도 결국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리고 역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분단질서와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발생되어졌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피해를 양산해 냈다. 이 침묵과 방관은 역사적으로 구조화 되어졌다.³⁾

1) 정치적 태도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바라디트(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 Their Origins and Impacts)에 의해 구분하고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신용복의 현대정치사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한국의 저항운동이 이데올로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2) 조희연,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피해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서울: 함께읽는 책 2002), p. 62.

3) 조현연, “의문사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민족민주열사·피해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2001년 총회자료집』(2001), p. 83.

제1절 정치 · 이데올로기적 측면

1. 분단의식의 고착화

남북의 분단과 그 후 남북한 간의 경쟁은 한국사회의 사회구조를 북한에 대한 경쟁적 체제로 재편시켰다. 그 경쟁의 축으로서 시도된 고도의 단기적 산업화는 국민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의 권력행사나 경쟁의 실책까지도 모두 정당화해주었다.⁴⁾

분단이라는 역사적 모순과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구조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민주주의적 정치형태, 권력형 부조리, 경제성장과 과행성, 계층간 불평등과 같은 문제 상황들은 분단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⁵⁾ 분단의식은 해방 후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확대 되어왔다. 해방 후 독립운동의 각 분파는 민족주의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해방을 외세에 의한 시혜적인 것으로 상황인식을 잘못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냉전체제로 편입되어가며 분단의 고착화로 치닫게 되었다.⁶⁾ 이러한 상황은 한국민족주의의 반성적 계기가 없이, 식민주의의 유산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적 모순을 한국민족주의의 기준에서 청산시키지 않은 채 분단과 냉전체제로 한국사회 구조가 특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⁷⁾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내부세력들로 하여금 극단화된 정치적 태도의 표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냐 아니면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냐 하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것은 나아가 남한 집권세력에의 동조자냐 아니면 북한 집권세력에의 동조자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유진영 동조자냐 아니면 공산진영 동조자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첨예화된 상황을 매개로 하여 외적인 냉전체제의 요구에 내적인 정치세력의 분화가 일치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진영 동조자=남한집권세력 동조자=남한정

4)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장작과 비평』, 제 14권, 1호 (1976년 봄), pp.250.

5) 박노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한국 사회학 연구』, 제6집, (1982), pp74-76.

6)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서울: 한길사, 1984), p.64.

7) 김진균, “발전과 내생적 변동이론의 필요성,”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서울: 한울, 1983), p133.

부의 정통성 인정, 공산진영 동조자=북한집권세력 동조자=북한정부 정통성 인정이 라고 하는 대립적 등식이 현실화 되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 내부세력의 극단화된 분화가 일어나고, 또 정치적 입장의 극단화된 분화가 일어나면서, 중도적인 입장의 민족내적 근거가 파괴되고, 외적인 냉전논리가 대중의식 속에 일정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⁸⁾ 그리하여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에 주어진 상황은 분단체제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분단의 사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반공이라는 이름 밑에 정당화되기 시작하였다. 냉전논리와 분단체제의 정당화, 분단의 의식적 일상화가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⁹⁾

1950년대는 분단구조의식이 한국전쟁을 통하면서 전 국민적 합의기반으로 확대해 가면서 좌익 잔류자들을 인적인 측면에서 제거, 소외시키는 과정으로 파악 될 수 있다. 온건우파 정도에 속하는 부류들조차 극좌파로 규정하여 제거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들고 나온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한 사실은 바로 그 한 예이다.¹⁰⁾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기층적 모순으로 분단의 고착화가 부각되었다. 4.19혁명은 비록 분단적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의 파괴를 일차적으로 극복한 후 곧이어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를 학생운동, 사회운동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대중 속에 내면화된 분단의식을 매개로 분단현실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4.19혁명은 기층적 모순보다는 표피적인 모순(민주주의의 위협)에 기인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분단의식에 근거한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반격됨으로써 저항운동의 한계가 표출하고 말았다.¹¹⁾

4.19혁명으로부터 5.16에 이르는 기간은 은폐된 민족적 모순, 즉 남북분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운동이 출현한 시기였다.¹²⁾ 혁신계의 통일논의가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였고, 남북학생회담 추진에서

8) 김진균· 조희연,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분단의 정치사회학적 범주화를 위한 시론” 『분단시대의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 p.415.

9) 박현채, 전계서, pp.70-71.

10) 송건호, “60~70년대 통일논의,” 강만길· 송건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p.145-146.

11) 김진균, “완성이 추구되는 4.19민주혁명,” 백낙청· 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단계』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p. 502-511.

12) 성유보, “4월 혁명과 통일논의,” 강만길· 송건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109.

그 결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5.16이후 군부정권은 통일논의에 적극적이었던 혁신계 세력을 강력히 탄압함으로써 분단적 피해의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¹³⁾

5.16이후 정치적 과정은 분단의 고착화에 특징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

5.16이후 군부정권은 4.19혁명을 매개로 표출된 민중적 요구를 흡수하여 그것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환시키는데, 여기서 남북한의 대립을 경제적 경쟁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군부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민중의 생활사적 요구를 흡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남북대립에 대처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정부의 시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책적 도전을 넘어 남북 대립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경향은 군부의 경직된 성향에 의해 가속화되어 사회내적 저항을 이데올로기적 저항으로 환치시켜 탄압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은 이데올로기적 탄압의 성격도 수반함으로써 대중들의 분단의식을 더욱 첨예한 형태로 발전시키게 되었다.¹⁴⁾

이어지는 유신체제 역시 자신의 정권기반을 공산주의와의 대립에서 찾음으로서 사실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분단의식을 가일층 체계적으로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논의 자체가 직접적인 저항이슈로서의 효능을 더욱 상실하게 되었으며, 분단 모순에 대한 저항이 대중적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처럼 분단구조가 일상화된 현실로서 사회성원대다수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은 저항세력을 공산세력과 동일시하여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분단의식의 고착화 과정은 정치폭력의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독특한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첫째, 분단의식은 민주화운동세력이 비합·반합 조직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야기하였다.

역대 권위주의의 정권은 언제나 반대저항세력을 일부 극소수 혼란주의자로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이러한 탄압의 정당성은 ‘국가안보’, ‘사회혼란의 제거’ ‘국민총화’, ‘국민화합’, ‘질서’ 등에서 찾아왔다.¹⁵⁾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분단의식은 권위주의정권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국민의속에서 사회의 여러 세력과 저항운동이 불온

13) 김진균 · 조희연, 전계서, p.418.

14) 김진균 · 조희연, 전계서, p.419

15) 성유보, “분단, 사회, 인간,” 실천문화사, 『실천문학』, 제5권, (1984), p.158.

시 되거나 부정적으로 파악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에 의해 민중부문의 활성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저항의 현재화가 어렵게 되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에서 운동의 합법적공간은 그만큼 좁아지게 되었다.

저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저항의 주체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작용하였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내부응집성을 강화시켜주었으며, 특히 군부 내부의 분파 조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⁷⁾ 또 부정적인 저항관념은 지배층의 안정성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였다. 저항은 곧 혼란이고 혼란은 분단위기의 고조로 이어져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고에 의해 사회적 혼란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권위주의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한 분단의식을 통한 정당성 부여는 결국 합법적 영역의 저항을 부정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합법적 운동공간이 상실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은 비합법적, 반합법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고한 군부의 내부응집성과 대항하기 위해 운동세력은 더욱 조직화되고 급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운동이 저항운동의 전면에 부각되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착시켰다.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관념, 노동대중 일반과 노동운동 주도세력과의 의식적 연대성 결여, 중산층의 체제 동조적인 정치적 성향, 그리고 사회구조의 모순에 도전하는 저항운동을 불온시 하는 일반적 태도에 의해 합법적인 운동공간은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체제 도전적인 세력들의 대안세력 부재를 가져옴으로서 사회운동보다 학생운동이 운동의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폭력에 학생운동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다.

여타 사회운동이 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의식적 자유를 향유하는 학생운동만이 극히 돌출되어 여타의 사회적 문제 상황은 잠재적인 것으로 은폐되고 사회내의 갈등이 마치 정권과 학생운동의 대립인양 비취지게 되었다.

특히 내면화된 분단의식은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착시켰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은 공산주의가 노동계급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에 대해 불온시 하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켰다.

16) 조희연, “중속적 발전과정에 있어 자본과 노동유형의 변모에 관한 연구,” 김진균 편, 『역사와 사회』, 제 1집, (서울: 한울, 1983), p.137.

17) 편집부, 『제3세계 연구』 (서울: 한길사, 1984), pp. 138-140.

서구에 있어 노동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가장 강력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히 사상, 운동이념이기 이전에 적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거부되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적인 경향을 띠거나, 그러한 이념적 기치를 내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지고 체제내적 이념으로 스스로 치장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부여하였다.¹⁸⁾

셋째, 분단의식은 정치적민주화의 진전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의 체제의 복귀를 가져왔다.

분단구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은 대중들의 관용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정치적 문제나 이념적 문제에 일정한 제한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객관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객관적 문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면 즉각적인 저항을 감행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연대가 없고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일회성 저항은 정치적 권력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사회 통제력이 정당화 되고 일상화되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가 정치적 민주화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군부의 재개입을 통하여 ‘권위주의 체제’로의 재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분단의식은 해방 후 세계적 냉전체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주어졌으며, 분단이 한국전쟁을 통해 내면화되면서 한국사회구조의 현실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단의식은 지배층의 정권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레드콤플렉스로 작용하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항 잠재력은 확대되고 저항의 기반은 확대 되었으나, 일반 대중들은 저항운동을 불온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서 객관적 문제 상황에 대한 폭발적 내지 일시적 저항의 형태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분단의식의 고착화로 인한 일반 국민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인식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침묵 과 공포심은 정치폭력이 권위주의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침묵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모든 이념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시였음에도 불구하고

18) 김진균 · 조희연, 전계서, p.423.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주장이외에는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는 사상이었다.¹⁹⁾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시대에 따라 변했으며 새롭게 형성되었다. 반공주의의 출현과 득세는 해방공간이 분단국가의 수립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 간의 각축장이었던 해방정국은 좌파의 헤게모니 장악 및 일종의 이중권력의 시기인 미군정 초기 국면, 찬·반탁과정에서 빚어진 기묘한 ‘이데올로기적 전치’, 좌우갈등의 심화와 억압-저항의 연속적 충돌, ‘혁명적 민주주의’의 진보적 대안국가가 분단국가로 폭력적으로 대체되었던 일련의 과정 이었다²⁰⁾ 이 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식적으로는 갖추되 반드시 반공국가여야 한다는 이른바 ‘미국의 한계선’(American boundary)속에서 진행된 국제적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국내화과정이기도 했다.²¹⁾

한국전쟁의 경험은 공포와 위기 속에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절대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되었고 이를 통해 공포의 기억만이 과장, 신화화되었다. 반공주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압제와 국가보안법, 연좌제 등의 제도적 억압이 결합됨으로서 재생산 되었다.²²⁾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반공주의에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반북주의이다. ‘한국전쟁’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식이다.

둘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의식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적대의식과 이것의 반면(反面)의식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우호적 의식이다.

셋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수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열망의식과 친미 의식이다.²³⁾

19) 반공주의의 형성사를 볼 때, 해방공간에서 반공주의 형성의 주요 세력이었던 친일파들에게 반공주의는 단지 친황제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된 당연한 귀결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에 내재한 자유주의 이념에 무지했기 때문에 반공주의의 무 내용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모리 요시노부,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 특징”, 『한국과 국제정치』, 제5호,(1989), p.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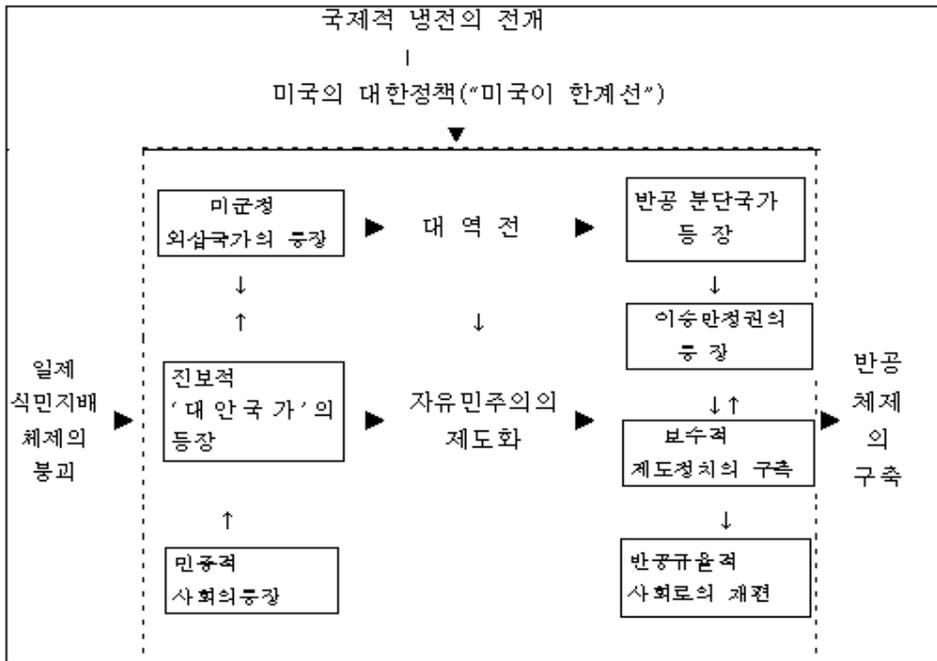
20) 조현연, “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안의 군사문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가을호,(2003), p.119.

21) 이와 관련한 몇몇의 연구는 미국의 한계선이란 개념을 도입, 해방 후 국가형성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시도한바 있다. 즉, 한국의 국가형성은 반공체제의 구축이라는 하한의 목표와 최소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상한의 목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해구,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집, 2001), p.97.

22)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P.32.

(그림) 한국의 국가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의 문제들



* 출처: 정해구,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집, 2001), p.97.

시대에 따라 반공주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되었다. 반공주의는 지배집단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단일 이데올로기이기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 전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공주의는 상황에 따라 지배의 재생산을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접합하여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때론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²⁴⁾

반공주의는 민족주의, 권위주의, 발전주의 등과 시기적으로 접합되었다. 반공주의는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언술에서 잘 나타나듯이 소련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최근의 반공은 호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에 대항하는 반복이데올로기이자, 후진적이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23) 김정훈·조희연, “주류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서울: 함께읽는책, 2003), p.149.

24)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pp.159-160.

성격을 갖고 있다.²⁵⁾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반공주의는 모순적 구성물이다. 그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면서도 친미주의, 반통일주의와 접합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면서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접합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대중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주의,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대중을 생산에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도 하였다.(표3-1 참조)

표3-1) 반공주의의 변화

| | | | |
|--------------|---|---|--|
| 시기구분 |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기: 반공전시사회 (1945-1960) | 반공규율사회의 강압적 강화기: 반공병영사회 (1961-1987) | 반공규율사회의 이완·변형 기: (1987-현재) |
| 핵심담론 | 반공주의와 반소, 반 일 민족주의의 접합 |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발전주의, 민족주의의 접합 | 발전주의를 중심으로 반공 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 |
| 반공주의 의 기능 | 억압과 동원 (민족주의적 동원) | 억압과 동원 (발전주의의 동원) | 억압 혹은 해체? |
| 사 회 적 효과 | 시민사회의 전시화 금단의 정치의 형성 사회의 탈분화의 구 조적 형성 부정적 전통의 재형 성(권위주의, 집단주 의, 연고주의) | 시민사회의 병영화 사회의 탈분화의 억압 적 재생산 부정적 전통의 재창조 (동도서기론) | 시민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분화(기존 담론의 영향력 약화) 발전민족주의를 통한 경제 적 동원 금단의 정치의 해체 |

출처: 김정훈·조희연, “주류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서울: 함께읽는 책, 2003), p.127.

사실상 반공주의는 적대세력에 대한 대항이념의 성격, 억압이데올로기로서의 특징을 갖는다.²⁶⁾ 반공주의의 제도적 토대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반공주의가 억압이데올로기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²⁷⁾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는 섬멸시켜야 할 적과 동일시된 채 일상적

25) 김명섭,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과 햇볕정책,” 『당대비평』, 통권 제5호, (1988), pp.223-225.

26) 김정훈 · 조희연, 전제서, p.126.

27) 서중석, “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 연구』, (1995), p.90.

인 ‘피해양의 정치’와 그 극단으로서의 ‘정치적 죽음’이 출현하게 되었다. ‘반공’ 아니면 모두 ‘용공’이라는 획일화된 도식이 통용되면서 반공주의자 아니면 ‘빨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저항세력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반역의 증표이자 범죄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법과 질서 유지를 구실로 정보기관에 의한 대국민 사찰은 일상화 되었고 정치적 도전과 항거에 대한 불법 체포와 납치, 고문이 횡행하였다. 특히 공안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불법연행’-> 장기구금과 고문->허위 자백->국가보안법 적용과 경찰제 판결’이라는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탄압과 전면적인 정치폭력에는 반공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배 권력의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정치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침묵과 방관과 체념의 사회적 심리가 만각의 사회화²⁹⁾로 이어지면서 정치폭력에 따른 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양산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배체제는 일체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보안법은 죽음과 고문, 인권유린을 합리화 시켜주며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 했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분단의 법제이자 적에 대한 공격과 섬멸의 의지를 담은 법률이었다.³⁰⁾ 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을 휘둘러야 할 필요성이 많았다는

28)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서울: 책세상, 2000), p.123.

29) 조현연, “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안의 군사문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가을호,(2003). p.125.

30)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대전제로 삼는 것은 이른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론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 195(III)>호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합법’ 정부인 것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인 것이다.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서울: 삼인 , 1999), PP.170-171.

이러한 기형성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당시 국회에서조차도 문제제기 되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 국가보안법은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국주의 잔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 『제108차 회의록』,P.998, 김옥주의원 발언)

또“일본놈시대와 같이 잡아다 물 먹이고.....이래서 다 걸려들어갈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 중 『제99차 회의록』,P.847, 조현영 의원 발언)

라는 의견이 제시 될 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국민적 공감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균열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증거였다.³¹⁾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대체로 참혹한 고문을 필연적으로 동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치러야만 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 후에 반국가단체의 조직가입, 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 되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³²⁾ 국가보안법은 제정 되자마자 위력을 발휘했다. 1949년 한해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입건된 숫자만 118,621명에 이르렀으며, 당시 수용된 전체 수감자의 8할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좌익수’로 보고되었다.³³⁾ 또 국가보안법상 전향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수는 30만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집단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다.³⁴⁾

한국전쟁 기간 중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을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³⁵⁾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부역자로 처리된 자는 550,915명에 이르렀으며,³⁶⁾ 867명(1950년 11월 25일 현재)이 사형선고를 받았다.³⁷⁾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박정희 정권에서 부터였다.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군부세력은 반공법을 비롯한 국민 억압적인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구를 창설하였다.³⁸⁾ 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에, 중앙정보부 법은 1961년 6월 10일에 각각 제정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및 규제 등 국내외 정치에서 실질적인 비밀경찰로서 기능하였다.³⁹⁾ 국가권력의 강제력 행사 속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각종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으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그 같은 사찰 및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고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수단

31)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서울: 책세상, 2000), P.26.

32) 대검찰청, 『한국검찰사』,(1976). PP.266-267.

33)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Ⅱ』,(1973), P.180.

34) 김태광, “해방후 최대의 양민참극,‘보도연맹 사건,’” 『말』,1988년 12월호.

35)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 역사비평사, 1997), P.22.

36) 내무부 치안국, 전게서, P.547.

37) 『동아일보』, 1950년 11월 25일 자.

38) 박원순, 전게서, P.30.

39) 조병택,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양식”(석사학위 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1987), P.45.

이 되었다.

표3-2 는 1961년부터 1980년 까지 사이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포함한 각종 정치적 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수이다. 이수치를 근거로 하여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3-2) 1961~80년까지의 정치규제법에 의한 검거인원수

| 연도 | 규제법 국가 보안법 | 반공법 | 정치활동 정화법 | 사회 안전법 | 집시법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 에 관한 특별법 | 국가보위 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긴 급 조 치 9호 | 계 |
|----------|------------------|--------------|--------------|-----------|------------|-----------------------------------|---------------------------|------------------|---------------|
| 1961 | 296 | | | | | | | | 297 |
| 1962 | | | 3,038 | | | | | | 3,038 |
| 1963 | 102 | 86 | | | 239 | | | | 427 |
| 1964 | 29 | 79 | | | 18 | | | | 126 |
| 1965 | 37 | 84 | | | 98 | 3 | | | 222 |
| 1966 | 44 | 104 | | | 7 | 2 | | | 157 |
| 1967 | 44 | 110 | | | 4 | 6 | | | 164 |
| 1968 | 83 | 168 | | | 37 | 1 | | | 289 |
| 1969 | 81 | 323 | | | 27 | 1 | | | 432 |
| 1970 | 204 | 368 | | | 25 | | | | 597 |
| 1971 | 217 | 276 | | | 49 | | | | 543 |
| 1972 | 175 | 507 | | | 24 | 1 | | | 706 |
| 1973 | 164 | 260 | | | 37 | | | | 461 |
| 1974 | 152 | 228 | | | 7 | | | | 87 |
| 1975 | 74 | 328 | | 5 | 13 | | | | 420 |
| 1976 | 121 | 386 | | 9 | 29 | | | 193 | 738 |
| 1977 | 35 | 322 | | 1 | | | | 157 | 515 |
| 1978 | 30 | 208 | | 3 | 6 | | 11 | 215 | 473 |
| 1979 | 57 | 199 | | 1 | 2 | | | 160 | 414 |
| 1980 | 23 | 136 | 811 | | 3 | | 4 | 1 | 978 |
| 계 | 1,968 | 4,167 | 3,849 | 19 | 625 | 15 | 15 | 726 | 11,384 |

출처: 김영래, “한국 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정치학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P.78.

첫째,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전 기간을 통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이 기간 중 국가보안

법 보다 반공법이 훨씬 더 ‘애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체로 보면 반공법 적용인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인원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반공법 제4조(고무·찬양죄)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신시기에는 다른 기간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선포되었던 긴급조치 9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9호의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공법의 남용을 뜻하기도 하다. 넷째,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특히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9년의 3선개헌,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과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났을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 역시 크게 증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저항운동이 민족·민중운동으로 위상이 정립되어 가면서 실천성이 대단히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이론정립이 병행되어가면서 더욱 더 늘어갔다.⁴⁰⁾ 이는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었다면, 1980년대에 이르러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사와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3-3) 1980년대 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제1심 형사공판사건)⁴¹⁾

| 연도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총계 |
|-------|------|------|------|------|------|------|------|------|-------|
| 국가보안법 | 23 | 169 | 171 | 153 | 93 | 176 | 318 | 432 | 1,535 |
| 반공법 | 136 | 65 | 13 | - | 3 | 2 | 5 | - | 224 |
| 계 | 159 | 234 | 184 | 153 | 96 | 178 | 323 | 432 | 1,759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1-1993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3-3 은 전두환 정권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기소인원에 대한 통계표이다. 재판에 회부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그 가운데 13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⁴²⁾ 이는 전두환 정권기

40) 강만길·박현채, "19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사회와 사상』 1998년 9월호, P.33.

41)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었음에도, 1980년 이후 반공법 위반자가 발생한 것은 6차 개정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에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2) 『경향신문』, 1988년 6월 28일자.

전 기간 동안 정치위기가 심화되어 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위기가 심화되었던 시기는 1984년부터 1987년 6월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시기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고, 726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이는 이시기 격렬한 탄압과 저항이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3-4) 1980~1988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내역, 통계

| 연도 유형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9.30.) | 계 |
|--------------|------------|------------|------------|-----------|----------|-----------|------------|------------|-------------|------------------------|
| 계 | 167 | 270 | 234 | 121 | 106 | 127 | 527 | 489 | 191 | 2,232 |
| (명/건) | 116 | 165 | 166 | 108 | 94 | 101 | 365 | 302 | 148 | 1,565 |
| 반국가단체구성·가입 | | 19 5 | 1 1 | 1 1 | | | 17 1 | | | 38 8 |
| 잠입·탈출 | 3 2 | 7 4 | 11 6 | 7 6 | 2 2 | 2 2 | 7 7 | | | 39 29 |
| 자진지원 금품수수 | 1 1 | 3 2 | 2 1 | | | | | | | 6 4 |
| 찬양·고무 | 148 110 | 225 151 | 201 153 | 106 96 | 97 86 | 115 95 | 502 365 | 488 301 | 190 147 | 2,072 1,495 |
| 회합·통신 | 1 1 | | | 3 2 | 2 2 | 2 1 | 1 1 | | | 9 7 |
| 편의제공 | | 2 | 8 1 | | | 3 1 | | | 1 1 | 14 3 |
| 불고지 | 13 1 | 12 1 | 11 4 | | 2 1 | 4 1 | | | | 42 8 |
| 무 고 | 1 1 | 2 2 | | 4 3 | 3 3 | 1 1 | | 1 1 | | 12 11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이러한 증거는 국가보안법 입건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표3-4 는 1980년대 국가보안법의 입건 사건의 내역 통계이다. 여기서는 찬양·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의 성립기와 정권의 최대위기 국면인 1986년과 1987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국가보안법 적용양상이 지닌 특징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됨으로서 진정한 국가안보 보다는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⁴³⁾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으로 구속자 역시 다른 어떤 규제

법에 의한 것보다 많은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전체 공안사범이 1986년 6월 현재 978명에서 1986년 11월 2,643명으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건대사건 구속자를 빼고 나면 1,359명이 되는데 적용법규별로 볼 때 국가보안법 461명, 집시법 391명, 폭행 235명, 사문서 위조 37명, 기타 235명으로 국가보안법이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⁴⁴⁾

표 3-5) 제1심 형사공판 전체사건과 국가보안법사건 처리 선고율 비교 (단위 :%)

| 연도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
|-----------|------|-------|-------|-------|-------|-------|-------|-------|-------|-------|-------|
| 사형 선고율 | 전체 | 0.04 | 0.05 | 0.03 | 0.02 | 0.03 | 0.03 | 0.03 | 0.01 | 0.02 | 0.02 |
| | 국보 | 3.54 | 5.95 | 5.78 | 1.08 | 4.49 | 8.99 | 3.60 | 2.44 | - | 2.44 |
| | 반공 | - | 4.80 | 0.20 | 0.62 | 0.44 | - | - | 0.70 | - | 0.94 |
| 무기 선고율 | 전체 | 0.05 | 0.05 | 0.06 | 0.04 | 0.06 | 0.05 | 0.05 | 0.06 | 0.07 | 0.07 |
| | 국보 | 2.02 | 2.02 | 5.41 | 2.67 | 4.32 | 4.49 | 2.16 | 2.44 | - | 4.88 |
| | 반공 | - | - | 0.60 | 0.62 | 0.88 | 0.29 | - | 1.05 | - | 1.41 |
| 무죄 선고율 | 전체 | 0.88 | 0.62 | 0.51 | 0.55 | 0.42 | 0.32 | 0.39 | 0.48 | 0.50 | 0.46 |
| | 국보 | 5.05 | 0.54 | - | 2.16 | 1.28 | 1.12 | - | - | 3.03 | - |
| | 반공 | 7.96 | 7.01 | 0.99 | 2.18 | 2.64 | 2.06 | 1.24 | 0.35 | 0.43 | 0.47 |
| 집유 선고율 | 전체 | - | - | - | - | - | 43.25 | 43.23 | 42.97 | 43.39 | 44.03 |
| | 국보 | 40.90 | 32.97 | 30.22 | 24.32 | 12.82 | 19.10 | 12.23 | 31.71 | 12.12 | 9.76 |
| | 반공 | 37.24 | 40.22 | 47.42 | 42.68 | 31.28 | 26.55 | 22.83 | 26.92 | 22.84 | 25.35 |

| 연도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
|-----------|------|-------|-------|-------|-------|-------|-------|-------|-------|-------|
| 사형 선고율 | 전체 | 0.03 | 0.03 | 0.03 | 0.02 | 0.02 | 0.01 | 0.02 | 0.01 | - |
| | 국보 | - | 0.10 | 2.33 | 3.31 | 0.82 | 0.97 | 0.40 | - | - |
| | 반공 | 2.14 | - | - | - | - | - | - | - | - |
| 무기 선고율 | 전체 | 0.06 | 0.07 | 0.08 | 0.08 | 0.10 | 0.10 | 0.08 | 0.07 | 0.06 |
| | 국보 | 3.92 | 0.51 | 3.26 | 2.48 | 3.28 | 4.85 | 1.62 | - | 0.43 |
| | 반공 | 1.43 | - | 3.03 | - | - | 50.00 | 14.29 | - | - |
| 무죄 선고율 | 전체 | 0.49 | 0.53 | 0.52 | 0.51 | 0.49 | 0.44 | 0.40 | 0.42 | 0.40 |
| | 국보 | - | - | 0.93 | - | - | 5.83 | - | - | - |
| | 반공 | - | - | - | - | - | - | - | - | - |
| 집유 선고율 | 전체 | 44.13 | 41.71 | 41.16 | 41.28 | 40.23 | 40.38 | 41.67 | 44.24 | 46.40 |
| | 국보 | 15.69 | 32.97 | 30.22 | 24.32 | 12.82 | 19.10 | 12.23 | 31.71 | 70.51 |
| | 반공 | 26.43 | 1.86 | 6.06 | - | 33.33 | - | 14.29 | - | -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범연감』, 1970-1979. 참조 재구성.

43) 대한변호사협회, 『1986년도 인권 보고서』, (1987), P.17.

44) 상계서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화력을 감소시켰다. 이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현상으로 나타났다. 1심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비율이 점점 더 증가해 온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3년 13.2%, 1984년 19.7% 1985년 21.4% 1986년 36%이며 그 이후 제 6공화국까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⁴⁵⁾ (표3-5참조)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에 들어서서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이후 민주화이행기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다시 그 적용이 늘어났다.

노태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1988년 104명, 1989년 312명 그리고 1990년 414명 1991년 357명, 1992년 342명의로 6월 민주항쟁이후 잠시 줄었다가 1989년에 들어서서 전해의 2배로 국가보안법 기소자가 다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5공 시절 구속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늦추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89년부터 다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으로 인한 공안정국의 여파로 풀이된다.

표 3-6) 노태우정권기 국가보안법 기소인원

| 연도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계 |
|-------|------|------|------|------|------|-------|
| 국가보안법 | 104 | 312 | 414 | 357 | 342 | 1,529 |
| 계 | 104 | 312 | 414 | 357 | 342 | 1,529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3년~1997년 을 참조 재구성.

노태우정권기 공안정국은 공안합수부를 통해 더욱 노골화 되었다. 공안합수부가 탄생하여 활동한 77일 동안 무려 85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좌경실상자료집』을 통하여 1989년 좌경세력이 침투한 조직은 전국 12개, 지역 114개인데 핵심세력 수는 학원 6,500여명, 노동 2,200명, 출판문화교육 1,000명, 재야 및 종교계 800명등 10,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적용됨은

45) 『동아일보』, 1988년 3월 3일자.

말할 것도 없고 1989년에서 1992년 이르기까지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적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⁴⁶⁾ (표3-6 참조)

노태우 정권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된 특징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탄압을 받았다. 노동자의 경우 1990년 현재 437명의 구속자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01명이나 되고, 출판인 역시 1988년 10명, 1989년 43명, 1990년 41명. 합계 94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정권 동안 33명이 구속된데 비추어 3배나 구속된 셈이다.⁴⁷⁾ 화가만 해도 이적표현물 및 고무·찬양 혐의로 18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배되어 노태우정권에 들어서서는 예술계에 까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3-7) 김영삼 정권 5년동안 연도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 연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총 |
|------|------|------|------|------|------|------|-------|
| 구속인원 | 112 | 393 | 285 | 499 | 677 | 23 | 1,989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93.2.25.~1998.2.24. 통계임.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서는 정치지향적인 군부세력들을 퇴각시킴으로서 군부정권의 핵심적인 비리정치인들을 제거하거나 주변화 시키게 되었다. 군부개혁,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개혁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부정권의 잔재청산의 일정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⁴⁹⁾.

그러나 1994년 ‘조문과동’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거치면서, 지배담론 자체가 개혁

46) 박원순, 전계서, pp.44-47.

47) 『한겨레 신문』, 1990년 7월 17일자.

48) 한국민족예술인연합,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1년 4월 25일자 성명서

49)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들은 하나회 및 ‘9.9 인맥’ 등 과거 군부 내의 핵심적인 정치군인들을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제거하는 군부의 탈(脫)권위주의화 작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정치인 및 관료들의 부패 척결 및 사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개혁입법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단행 및 95년 1월 9일부터 실시된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경제제도적 개혁 등이었다. 이러한 초기의 개혁조치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이는 90%가 넘는 지지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조희연, 전계서, 208-209).

에서 '세계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김영삼 정권은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둘러싼 극우 보수세력의 비판과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하는 조문파동 등을 구실로 보수화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고 초기의 개혁 지향은 상당 부분 무력화되게 된다.

표3-8) 김영삼 정권 시기 국가보안법의 신분별 적용현황

| 연도 직업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합 계 |
|----------|-------|-------|-------|-------|-------|-------|-------|
| 학생 | 31 | 193 | 102 | 318 | 500 | 15 | 1,159 |
| 노동자 | 5 | 38 | 20 | 38 | 44 | | 145 |
| 재야 | 63 | 128 | 110 | 92 | 89 | 8 | 490 |
| 군인 | 13 | 34 | 53 | 51 | 44 | | 195 |
| 계 | 112 | 393 | 285 | 499 | 677 | 23 | 1,989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93.2.25.~1998.2.24. 통계임.

표 3-9) 김영삼정권기 적용법조별 현황

| 년도 적용조항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계 |
|------------|------|------|------|------|------|------|-------|
| 7조(고무·찬양) | 69 | 339 | 244 | 450 | 666 | 23 | 1,791 |
| 3조(반국가단체) | 30 | 24 | 28 | 28 | - | | 110 |
| 6조(잠입탈출) | 4 | · | 4 | 3 | 3 | | 14 |
| 8조(회합통신) | 8 | 23 | 4 | 15 | 3 | | 53 |
| 4조(국가기밀) | 1 | 2 | 1 | 1 | - | | 5 |
| 9조(편의제공) | · | 5 | - | 2 | 5 | | 12 |
| 10조(불고지죄) | · | | 4 | | | | 4 |
| 계 | 112 | 393 | 285 | 499 | 677 | 23 | 1,989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3.2.25.~1998.2.24. 통계임.

이러한 회귀화는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도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 김영삼정권 시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현황을 보면 1993년 112명, 1994년 393명, 1995년 285명, 1997년 677명으로 과거 군부권위주의시절과 변함없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이 전해에 비해 2배 이상 구속자가 늘어나는 데는 조문파동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1996년부터 1997년 까지 구속자수가 급증하는 데는 연세대 사건과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른 대량 구속사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6년 말에서 1997년 초까지 노동법 과 안기부법의 날치치 통과로 인한 노동계의 광범한 대중투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문민정부인 김영삼정권 시기에 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유효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3-8에서도 확인되는데 김영삼정권시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학생 1,159명, 노동자 145명, 재야 490명, 군인 195명이다. 학생의 구속자수가 많은 것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년 8월에는 학생운동의 연례화된 범민족대회와 관련 진압 과정에서 5,848명의 학생을 연행되었고 이 중 3,365명을 불구속입건, 465명의 학생은 구속되었으며 이 중 438명이 기소되었다.⁵⁰⁾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개혁국면이 1994년부터 회귀화 되면서 노동법, 안기부법, 우르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한 저항에 국가보안법을 유효한 정국위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학생운동의 이념성이 주된 공격이었다면 , 김영삼정권 시절에는 학생운동 자체를 이적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1986년 10월 건국대 사태 때 395명이 구속기소된 것에 비해서도 43명이나 기소자 수가 많은 것이다. 『동아일보』, 1996년 9월 18일자.

표 3-10)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연도별 현황

| 연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총 |
|------|------|------|------|------|------|------|-------|
| 구속인원 | 389 | 288 | 128 | 118 | 126 | 9 | 1,058 |

출처: 민가협 조사통계,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구속 당시 적용된 범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표3-11)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신분별 현황

| 연도 직업 | 1998년 (2.25~)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2.24) | 합 계 |
|----------|------------------|-------|-------|-------|-------|-----------------|-------|
| 학생 | 295 | 227 | 104 | 91 | 114 | 8 | 839 |
| 노동자 | 18 | 1 | 2 | 10 | | | 31 |
| 재야 | 63 | 46 | 16 | 15 | 9 | 1 | 150 |
| 군인 | 13 | 14 | 6 | 2 | 3 | | 38 |
| 계 | 389 | 288 | 128 | 118 | 126 | 9 | 1,058 |

출처: 민가협 조사통계,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구속 당시 적용된 범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2. 국가폭력의 구조화

인간집단 간의 폭력과 학살은 인류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대체로 종족 간의 갈등은 폭력적 양상을 지녔으며, 인종 종교의 차별성에 기초한 폭력은 근대이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조직적인 폭력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 간의 전쟁 혹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신념의 대립,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⁵¹⁾

마르크제에 따르면, 폭력의 개념은 두 가지 각기 다른 형태를 포괄한다. 기성 지배체제가 휘두르는 제도적 폭력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실정법과 관련시켜 볼 때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저항적 폭력이다. ⁵²⁾국가폭력이라고 할

51) 김동춘, “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조회연 편, 『국가폭력 · 민주주의투쟁 · 역사적 피해』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p.432.

때, 그것은 사회의 제집단, 제 계급계층의 투쟁에 대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통치의 한 수단적 행위로서의 국가폭력은 군대나 경찰의 동원, 사법기구를 통한 처벌 등 다양한 공권력의 사용⁵³⁾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국가폭력이란 곧 피해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특정 정권이나 정부 하에서의 시기시기에 따라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한 정부 하에서도 강경억압정책이 구사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에 유화정책이나 포섭정책이 지배적인 되는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 ⁵⁵⁾

표3-12) 국가(폭력)와 민주주의(투쟁)의 관계

| |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 | 민주주의 투쟁의 대립물 | 민주주의 투쟁의 지향 | 피해의 성격 |
|------------------------|--|---|--|-------------------------------|
| 국가 유형 | 전근대적(前민주주의적) 국가 대 근대 민주주의(자본주의)국가 | 전근대적인 국가 폭력의 자의적 행사 | 민주주의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근대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확립. | 원시적이고 절대 권력자의 자의적 폭력행사로 인한 피해 |
| 국가 형태 및 체제(regime) 수준 | 예외국가(과시즘, 제3세계 군부독재 등) 대 민주주의적 '정상' 국가 | 근대적인 반민주주의적 국가. 국가·위기를 매개로 한 민주주의의 허구화와 부정. | 형식적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한 투쟁 | 근대적 '예외'국가의 폭력행사에 의한 피해 |
| 정권·정부·정책 수준 | 강경·억압정책(‘공안정국’ 등) 대 유화·포섭 정책 |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저항에 대한 강경억압적 정책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유지를 위한 투쟁과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지님. | 특정 시기의 강경정책이나 억압정책에 의한 피해 |

출처:조희연, 조현연 “국가 폭력·민주주의 투쟁·역사적 피해: 총론,”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피해』(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p.45.

정권적 수준이나 정부적 수준에서, 국가본질로서의 폭력성이 현실이 되는 것은 두

52) 마르쿠제·포퍼 저, 홍윤기 편역, 『혁명인가 개혁인가: 마르쿠제·포퍼논쟁』(서울: 사계절, 1982).p.144.

53) 조희연·조현연 “국가 폭력·민주주의 투쟁·역사적 피해: 총론,”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피해』(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p.24.

54) 김동춘, 전개서, p.433.

55)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초기와 유화국면, 문민정부에서의 초기 개혁국면과 공안정국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국가폭력의 제도적 장치들—예컨대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둘째는 국가통치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폭력이 전면적으로 사용—예컨대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의 동원—되는 것이다. 전자는 제도적 폭력의 강화를 의미하며, 후자는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용을 의미한다.⁵⁶⁾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 또는 묵인하의 폭력성은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등장해왔다. 한국의 국가폭력은 조선총독부로 상징되는 식민지배체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식민지적 근대를 경험한 나라에서의 공적폭력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인 식민지 상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⁵⁷⁾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가진 한국의 국가폭력은 국가형성의 시기에 한국전쟁을 통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 특히 남북의 분단 상황, 일상적인 군사대결 상황이 국가폭력의 극단화와 전면화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전쟁 공포의 항상적인 동원을 통해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안보가 최상의 이념이 되어 사회는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화, 병영화 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는 적과 동일시되었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분단된 다른 반쪽의 항상적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았다. 안보를 존립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로 삼는 국가는 국론통일과 총화단결, 일사불란, 발본색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제적 동원, 획일적 교육과 사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자유의 억제를 가능케 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치공동체로의 존립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 중에서 국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물리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을 동시에 갖게 했다.⁵⁸⁾

국가폭력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제도화 되었다. 이승만정권이 한국전쟁을 통해 인식된 안보와 반공을 악용하여 국가폭력을 일상화 하였다면, 박정희 정권은 개발 혹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안보명분을 통해 개발과 독재를 정당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의 모순과 독재의 모순이 강화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정치적 위기국면을 가져 왔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는 제도적인 폭력을 유신체제를 통해 통치행위로 전면화하였다.⁵⁹⁾

56) 조희연·조현연, 전게서, pp.55-56.

57)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서울: 책세상, 2000), p.19.

58) 조현연, 전게서, p.21.

59) 조희연·조현연, 전게서, p.92.

통치행위로서 국가폭력은 군사문화에 접합 되면서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 등을 나타냈고, 반사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등을 통해 저항의지를 마비시키고자 하였다. 폭력 그 자체로서의 국가 권력은 극단적 결과인 ‘정치적 죽음’을 불러왔다.

3. 통제기구의 강화

한국사회에서 전면화된 정치폭력은 한편에서는 폭력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화는 법률적 형태와 제도화된 관행의 형태로 나타났다.⁶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 사례, 삼청교육대등의 인권 침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들이다. 물리적 통제의 강화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정보경찰과 정보기관, 군대와 전투경찰등 국가기구를 통해 일상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구는 정권의 소수 친위그룹들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공작정치와 밀실정치로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김대중 납치사건, 장준하의 살해, 김영삼의 국회제명은 공작정치의 실상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친위그룹의 충성경쟁에서 발생한 피해이었으며 희생양이었다.

정권의 물리적 통제기구들은 지배세력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권력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 충정경쟁에 의해 ‘희생양’을 만들어냈다.⁶¹⁾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투쟁세력은 ‘용공, 좌경, 극렬, 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전복’세력의 음모로서 이해되며, 나아가 죽음과 폭력의 의미계열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⁶²⁾

한국에서 정치폭력은 폭력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반공이데올로기와 레드 콤플렉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체제와 그 구체적인 실행체로서 정보기구, 국민들로부터 무의식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 교육, 지배이데올로기를 선

60) 법률적 형태의 국가 폭력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하여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61) 김정환,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 이후, 1998) p.151.

62) 조희연·조현연, 전개서, p.62.

전하고 확산하는 보수언론, 권력형 지식인들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⁶³⁾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 네트워크의 작동은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의 동원에서 시작되었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반공주의와 냉전의식의 공격적인 성향을 의미하며, 왜곡된 공포심에 기초해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이러한 정치폭력 네트워크는 이데올로기의 동원 그 자체만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집단을 필요로 하였다. 정치폭력은 단순재생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면서 기득권 지배세력의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제도권 교육과 언론이었다. 우리의 제도권 교육기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기능을 의식적으로 담당해 왔다. 언론들 또한 제도권 교육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⁶⁵⁾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의 배경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침묵 카르텔’의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 온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의 항상적 선택 말고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의 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⁶⁾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 물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였다. 군대나 경찰의 동원, 사법기구를 통한 처벌,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공권력의 사용을 하여 피해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폭력은 민주주의 투쟁과 격돌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케 했다. 정치폭력과 저항간의 충돌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형태의 피해는

63) 조현연, 전계서, p.22.

64)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서울: 삼인, 1997), p.7.

65) 조희연 · 조현연, 전계서, pp103-106.

66) 단순히 현상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분석적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시민사회 내의 제집단이 독재에 대하여 순응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순응에는 ‘공포’가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공포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람시가 수동적 동의와 능동적 동의를 구분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수동혁명을 통하여 민중들은 새로운 국가주의적 지배에 통합되게 되는 수동적 동의상태에 놓인다고 한다면, 침묵의 카르텔에는 근대화라고 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배에 대한 민중들의 동의를 창출한 것을 포함한다
사쑤 저, 최우길 역, 『그람시와 혁명전략』 (서울: 녹두, 1984), pp. 166-167.

개인적 차원의 피해와 가족사적 차원의 피해,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피해를 낳았다.

국가에 의한 폭력의 행사가 항상적으로 선택되고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국가는 통치와 지배의 기본적 수단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동원과 헤게모니적 동의를 기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두가지 기제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위의 기제를 통한 통치를 완전히 배제한 채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노골적인 폭력 통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⁶⁷⁾

표 3-13) 사회적 통제비용의 구성과 그 변화 (단위:10억원)

| 연도 | 국방비용 | 통제비용 | | | 이데올로기 통제비용 | 합계 |
|------|-------|-----------|---------|------|------------|-------|
| | | 입법 및 선거관리 | 사법 및 경찰 | 일반행정 | | |
| 1970 | | | | | | |
| 1971 | 152 | 5 | 27 | 32 | 5 | 221 |
| 1972 | 200 | 7 | 33 | 88 | 7 | 335 |
| 1973 | 211 | 6 | 38 | 42 | 8 | 305 |
| 1974 | 384 | 8 | 50 | 49 | 12 | 503 |
| 1975 | 642 | 15 | 70 | 66 | 16 | 809 |
| 1976 | 928 | 11 | 122 | 130 | 11 | 1,202 |
| 1977 | 1,068 | 13 | 172 | 169 | 19 | 1,496 |
| 1978 | 1,551 | 21 | 193 | 210 | 31 | 1,949 |
| 1979 | 1,575 | 19 | 234 | 271 | 38 | 2,137 |
| 1980 | 2,542 | 29 | 349 | 381 | 44 | 3,345 |
| 1981 | 2,845 | 36 | 543 | 518 | 52 | 3,993 |
| 1982 | 3,299 | 31 | 580 | 666 | 68 | 4,645 |

출처: 서이중, “한국에 있어서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p.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노골적인 폭력을 자주 선택하고 동원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헤게모니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그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편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구조적으로 내장할 수밖에 없는 냉전·분단·반공질서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도 노골적인 폭력의 동원은 불가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가가 ‘폭력의 이중성-즉 폭력은 그것이 발휘하는 위력만큼 치러야 할 정치적·사회

67) 조희연·조현연, 전거서, p.38.

적 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 폭력이 대내적으로 행사될 경우에 그것이 수반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은 급속히 증폭되다는 것이다.(표3-13참조)

통제비용의 증대는 정치적 비용과 부담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헤게모니적 동의를 기제를 통한 정치적 지배를 관철시킬 역량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물리적 국가장치이자 정치폭력의 구체적 실행집단인 공안기구의 역할이 부상하게 되었다.⁶⁸⁾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공안기구로는 안기부로 대변되는 정보기관, 공안 검찰, 경찰, 군 보안부대를 들 수 있다.

군부와 함께 해당 사회 물리력의 공식적 담당기구로서 경찰과 정보기구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혹은 그것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국가통치권 행사의 외양과 형식 아래 항상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기구이다.⁶⁹⁾

한국의 경찰기구는 경찰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1원적 체제의 국립경찰로서, 방범·풍속·안전, 청소년문제·교통·일반경비·경호경비·해양경찰등 행정적측면과 범죄수사·정보·대공사찰·외사 등 사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사법적측면, 특히 정치권력 수호자의 임무로 거의 단일화 되어왔다.⁷⁰⁾ 한국 경찰기구는 정치권력과 사회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저항세력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위한 경찰기구 내의 물리적 토대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기능해 왔던 시위진압 전담경찰인 전투경찰대와 사복기동대이다. 경찰기구가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기능해온 것은 국기기구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해방이후 한국사회 전개와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전개과정 속에서 정치권력의 등장이 국민적 지지를 결여해 왔다는 것에서 기인하여 비민주적·물리적 통제가 지속되고, 이를 통해 통제기구의 과잉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경찰기구가 물리적 통제기구로서 기능했던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과잉 성장된 경찰기구가 해방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기구가 독립화 되지 못하고 정치과정에 민감한 선거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지휘를 받아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제반 조건 속에서 한국사회의 경찰기구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정치세력을 방어하는 물리력으로

6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215.

69)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4), P.71.

70) 한국정치연구회, 전게서, P.123.

가능해 왔다.

저항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시위진압경찰, 즉 상설진압부대(작전 전투경찰, 의무경찰)와 사복기동대는 주된 경찰기구의 물리적 토대였다. 특히, 1967년 9월 대간첩작전의 전력보강을 위해 모집되었던 전투경찰은 1980년 이후 늘어가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적인 시위진압부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표 3-14 에서도 드러나듯이 1979년 17,202명에서 1980년에는 약 320% 증가한 22,778명으로 그리고 1981년에는 약 44% 증가한 32,705명 등 계속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투경찰과 사복기동대의 수적증가는 억압의 일상화 및 통제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표3-14) 전투경찰 정원 (단위:명)

| 연 도 | 정 원 |
|------|--------|
| 1977 | 12,340 |
| 1978 | 16,417 |
| 1979 | 17,202 |
| 1980 | 22,778 |
| 1981 | 32,705 |
| 1982 | 39,706 |
| 1983 | 45,938 |
| 1984 | 43,292 |
| 1985 | 49,143 |
| 1986 | 53,205 |
| 1987 | 58,700 |

출처: 한삼희, “치안본부대 해부,” 『월간조선』
1988년 3월호

표3-13 에서 드러나듯이 통제비용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민주화요구가 증대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형성되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법 및 경찰 비용 등 직접적인 통제비용의 경우 특히 1980년 이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찰의 특히 공안관련 인원의 증가와 통제비용의 증가는 저항운동이 그만큼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함께 정치폭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표3-15 는 보안수사대에 의한 구속자 현황으로 비록 민주화이행이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중 70~80%가 경찰의 수사에 의한 것으로 다른 기관

에 비해 경찰이 일상적으로 정치폭력을 대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 의한 이러한 물리적 폭력이 강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경찰의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승진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표3-15) 보안수사대가 구속 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

| 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02.8.31 | 계 |
|----------------|-------|-------|-------|-------|-------|-------|-------|-------|-------|---------|--------|
| 국가보안법위반전체 구속인원 | 113 | 338 | 243 | 459 | 663 | 454 | 302 | 123 | 116 | 80 | 2,891명 |
| 보안수사대 구속인원 | 92 | 305 | 218 | 411 | 525 | 350 | 237 | 90 | 83 | 44 | 2,355명 |
| 비율 | 81.4% | 90.2% | 89.7% | 89.5% | 79.2% | 77.1% | 78.5% | 73.2% | 71.6% | 55% | 81.5% |

출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서울:역사비평사, 1997): 경찰청, 2002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참조 재구성.

표3-16)경찰의 공적별 특진내역

| 연도 내역 | 계 | 범인 검거 | 직무 탁월 | 청용 봉사상 | 보안사범 검거 | 경호 경비 | 한총련 수배자 검거 | 간첩 검거 | 정보활동 유공 | 노동법 반대 수배자 검거 | 기소 중지자 검거 | 기타 |
|--------------|-----|-------|-------|--------|---------|-------|------------|-------|---------|---------------|-----------|----|
| 1997년 | 823 | 408 | 57 | 4 | 29 | 7 | 238 | 2 | 21 | 2 | 5 | 50 |
| 1998년 9.3.현재 | 204 | 77 | 10 | 5 | 12 | 19 | 51 | 1 | 1 | | | 28 |

출처: 경찰청, 『1997년, 1998년 경찰 특진내역』, (1998) 참조 재구성.

예컨대 ‘고문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의 경우 1970년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한 뒤 출근 대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특진으로만 고속승진을 했다.⁷¹⁾

표3-16 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1997년의 특진자 823명중 공안관련 특진자는 보안사범검거 29명, 한총련 검거 238명, 정보활동 21명,

7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거서, p.215.

노동법 관련 2명 등 290명으로 3분의 1에 해당한다. 통상 경찰공무원의 승진이 7~10년으로 보았을 때 단시일 내에 승진할 수 있는 계기로서 공안사범의 검거는 경찰로써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여건은 결국 경찰 스스로 공안사건을 통해 실적을 높이려는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쉽게 검거가 가능한 학생들의 검거에 집중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공안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정보기능의 독점과 권력의 집중이 되어있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이다.

안기부는 국외정부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죄·외란죄·군 형법 중 반란죄·이적죄·군사기밀 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및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기부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차출하여 쓸 수 있고 안기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표 3-17) 국가정보원 변천과정

| 분류 | 중앙정보부 → | 국가안전기획부 → | 국가정보원 |
|------|--------------------------------|--|----------------------|
| 구성시기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 국가보위입법위원회(5.17군사 쿠데타 직후) | 국민의정부 출범이후(99.1.22.) |
| 근거법령 | 중앙정보부법 | 국가안전기획부법 | 국가정보원법 |
| 비고 | 1962년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 |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주관 | |

출처: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서울: 역사비평사, 1997) 참조하여 재구성함.

이처럼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과 수사권을 지닌 안기부는 국회·언론·국민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⁷²⁾ 또 공안합동수사본부

7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민주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 (서울: 역사비평, 1989), p.10.

및 관계기관대책회가 정치폭력의 최일선에 존재하였는데 막강한 힘을 지닌 안기부의 권력남용은 비상입법기구에서 통과된 것이기는 하나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비해 공안합동수사본부나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된 권력의 핵심기구로서 안기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 새로운 공안기구로 구성된 것이었다.

표 3-18) 합동수사본부 변천과정

| 분류 | 설립 시기 | 주도 세력 | 본부장 | 구성기관 | 부설기구 | 비고 |
|----------------|-----------------|-------|------------|---|----------------------------|-----------------------------|
|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 10.26 직후 | 보안사 | 보안사령관 | 보안사 중앙정보부 검찰 치안본부 | | |
| 관계기관 대책회의 | 5공시절 | 안기부 | |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 | | |
| 공안 합동수사본부 | 1989년 3월20일 | 안기부 | 대검 공안부장 |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문교부 노동부 | 공안합동정책 협의회 | |
| 한총련좌익 사범합동수사본부 | 1996년 9월2일 | 검찰 | 대검 공안부장 |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 각지검에 지역합수부 설치, 실무협의회 | 97년4월까지 총12회 개최,한총련 370명 구속 |
|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 1997년 5월7일 | 검찰 | 대검 공안부장 |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97년8월31일까지 한총련 관련 795명 구속 |
|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 1998년 3월18일 | 검찰 | 대검 공안부장 | | | |
| 공안대책 협의회 | 1999년 3월12일~ 현재 | 검찰 | 대검 공안부장 | | 중앙기구,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 법제화 |

출처: 민가협 통계자료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서울: 역사비평사,1997) 참조 하여 재구성함.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좌익폭력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검찰·안기부·경찰·보안사 등을 총망라해 설치된 후 (1988년 4월 3일) 전국에서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재야민주인사·언론·출판·노동·학원 등에 대해 수색·압수·연행·구속을 자행하였다. 또 하나의 통제기구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이다. 이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회합을 갖고 그 문제의 성격과 정부당국의 대처방안을 의논해 온 것을 말하

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존재해 왔다.

표3-19) 검찰청 사무기구 개편내용

| 개편일시 | 개편근거 | 개편내용 |
|------------|--------------|---|
| 1973.1.25 | 대통령령 제6472호 | ◦대검찰청 공안부 신설- 공안강력 및 선거 사건 지휘감독 |
| 1975.7.16. | 대통령령 제7698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보안처분 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
| 1980.5.31 | 대통령령 제9895호 |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노동사건 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
| 1981.4.24. | 대통령령 제10296호 | ◦대검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신설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1부를 공안부로 개편, 그 밑에 공안사무과를 신설 |
| 1984.6.30. | 대통령령 제11457호 | ◦대검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공안자료과를 공안제2과로 개편 |
| 1986.4.30. | 대통령령 제11880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 제1, 2부로 하고 공안제1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
| 1986.10.1 | 대통령령 제1190호 |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3, 4과 및 공안기획담당관 신설 ◦대검공안부(공안제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사건 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 ◦서울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하고 공안제2부에 공안제2과를 신설 ◦부산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과로 하고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검 및 서울지검 동부, 남부, 북부지청 특별수사부에 공안부를 각각 신설 |
| 1998.2.28 | 대통령령 제15712호 | ◦대검 공안부의 공안4과 삭제 |

출처: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서울:역사비평사, 1997), p.539.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의 주된 물리적 통제기구는 경찰이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중심의 안보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지배정치권력이 중요한 시기의 정치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설치한 임시비상기구가 중요한 물리적 통제기구로 부각되었다. 국보위와 계엄사합수부, 관계기관대책회의 그리고 공안합수부등이 그것으로 국보위와 계엄사합수부는 지배정치권력이 국가기구를 개편하고 정치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을 설치한 억압적 기구이며, 계엄사합수부(10.26~5.17 쿠데타) -> 관계기관대책회의(전두환정권기) -> 공안합수부(노태우정권이후)로 이어지면서 물리적 기구는 상설화되고 그 역할 또한 확대 되었다.

제2절. 사회 · 경제적 측면

1. 노동통제

국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게 주어진 폭력행사 권한과 국가의 성격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같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특정 사회의 국가와 자본계급이 수행하고 있는 계급지배 양식에 따라 좌우된다.⁷³⁾

계급지배의 양식은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전체적 계급지배, 규제적 계급지배, 헤게모니적 계급지배가 그것이다.

표3-20 은 세가지 유형의 계급지배 양식에 대한 비교한 것이다.⁷⁴⁾

표 3-20) 세 가지 계급지배 양식의 비교

| | | 전체적 계급지배 | 규제적 계급지배 | 헤게모니적 계급지배 |
|----------|-----------------|------------------|------------------------|--------------|
| 계급 관계 | 자본-노조관계 | 일방적 지배 | 공존 | 경영동반자 |
| | 계급타협 여부 | 계급타협 없음 | 소극적 계급타협 | 적극적 계급타협 |
| | 거시정치 | 권위주의 | 부르조아 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 | 생산현장 | 노동기본권 불인정 | 노동기본권 인정 | 산업민주주의 |
| 조절 양식 | 자본·국가의 행위 규제 | 법규범 부재 | 법규범,노동자 물적생존 보장 | 자기규제 |
| | 자본의 실천 | 억압·직접제재 | 기초적 양보 | 공동결정 수용 |
| 국가 역할 | 국가 실천 | 달결권 제약 ·인신구속 | 경제성장,사회적 안전망 | 인적자본투자·복지권 |
| | 국가 기구 | 경찰·비밀경찰·인신 구속 | 중립적 사법부 경제·산업담당 행정부 | 교육·복지·문화·미디어 |

출처: 조희연 편, 『국가폭력 · 민주주의투쟁 · 역사적 희생』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p.235

이중 권위주의적 지배라 할 수 있는 전체적 계급지배를 보면 계급관계의 측면에

73) 조돈문 · 노광표, “국가의 억압적 노동통제와 노동자 피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215.

74) Burawoy ,Michael., *Manufacturing Consent:changes in the Labor Process under Monpoly Capitalism*,(Chicago:U. of Chicgo, 1979).pp.110-135.

서 자본계급과 국가 피지배계급인 노동계급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양보하지 않는 일방적 지배의 특징을 보인다. 지배세력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구속력을 결여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배세력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고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에 대해 자의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 지배양식의 경우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길들여지며 이러한 역할은 주로 경찰·비밀경찰·검찰등 대표적인 물리적 통제기구들에 의해 수행된다.

표4-21) 억압-실천-피해-결과 모형

| 행위유형과 수준 | | 국가의 조치 (보호/억압/시해) | 실천 | 피해 | 반대급부 |
|----------|--------|--------------------------------------|--|--------------------------|-----------------------------------|
| 법률수준 | | 특별조치, 노동관계법 입법, 은사, 위헌조항 | 제정과 개정청원, 법률반대,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탄원, 진정, 파업 | 수배, 연행, 구금 구속, 유죄판결, 복역 | 보호입법 제정, 권리보장 |
| 제도수준 | | 지침, 규정, 회의, 임금가이드 (위계적 통제, 기술적 통제) | 항의, 호소, 집회 및 시위 | 파면, 징직, 감봉, 경고, 해고, 강제휴직 | 원상회복, 사회보장의 증대 |
| 관행 수준 | 가시 차원 | 과잉권력의 행사-블랙리스트 작성 작성목인, 월권, 말과행동의 괴리 | 집단행동, 반격 회피, 순종 | 구타, 고문, 사형, 감시, 차별 | 특혜 배제 |
| | 불투명 차원 | 이데올로기적 통제, 행정부작위로 인한 해태 | 소모적/수세적 논쟁, 방어, 연구주의 | 심리적장애, 반인권적 문화 | 스트레스 과잉 사회적요인의 질병 |
| 사회수준 | | 지배와 억압 | 저항/복종, 투신, 분신, 자해, 개별적 공격행위 | 차별, 침묵, 소외 | 고립, 인정, 참여, 중산층 의식, 사회적기회의 증대와 축소 |

출처: 허상수,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 민주적실천과 역사적 희생,”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함께읽는 책, 2002), p.231.

이러한 물리적 노동통제는 ‘억압-실천-피해-결과’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 3-21에서와 같이 강제적 노동통제는 필연적이 피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강제적 노

동통제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길들이며, 노동자들은 탄압과 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르게 된다.

주로 국가에 의한 노동의 통제는 법적통제, 제도적 통제, 사회적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법적통제가 노동통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주된 법적기제로는 노동 관계법을 들 수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유의미한 개정은 주로 정권교체 직후 이루어졌다. 노동관계법, 특히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개정과정은 각종 규제 입법의 확대와 강화 과정과 동일선상에서 추진되어왔다고 지적된다.⁷⁵⁾

결국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동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반공 규율 사회’를 완성하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국민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 정비의 의미를 띤 것이었다.⁷⁶⁾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1963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1963년 개정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바꾸었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해산 명령권을 주었으며,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했고, 보수노조를 금지했다. 1973년 개정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민간사업인 방위산업도 강제중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⁷⁷⁾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신설, 유니온샵 제도의 폐지, 노조설립요건 강화, 직권중재 범위 확대, 냉각기간 연장 등이었다.⁷⁸⁾

노태우 정권은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법 위반자들을 공안 사범으로 분류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노동통제를 강화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1980년 전두환정권 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제 3자 개입 금지 위반의 혐의로 일체의 노동조합 지원과 연대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개혁을 표방하여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여 광범위한 조직 노동자의 항의과업에 직면하여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동관계법을 새로 만드는 우여곡절을 연출하기도 하였다.⁷⁹⁾

7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85년 노동사회 사정』(서울: 민중사, 1985), p. 34.

76) 허상수,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운동:민주적실천과 역사적 희생,”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 책, 2002) p.239.

77) 이종하, “한국노동입법의파행성,” 노동문제연구소, 『한국의 노동문제』(서울:비봉출판사, 1991),p.450.

78) 박현채·김형기 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서울: 돌베개, 1985),pp.15-30.

다음으로 제도적인 통제를 들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 하였던 것이 ‘노동대책회의’이다.

노동대책회의는 전두환 정권시절 국무총리 훈령 제 163호(1981.2.13) 및 훈령 제 171호(1981.12.1)에 의해 설치되었다. 중앙노동대책회의는 노동부장관(위원장), 국가안전기획부 제 1차장, 치안본부장, 국세청장, 노동부, 경제기획원 등 6개 정부부처 차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노동대책회의’를 구성, 개최하고, 시도지역에도 도지사, 시장, 시도 경찰국장으로 ‘지역노동대책회의’를 구성, 개최하는 등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여왔다.

방대한 행정조직으로 편제된 노동대책회의의 주요 기능은 노사분규의 예방 및 해결 대책, 노사문제에 대한 제3자 개입 방지 대책, ‘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었다.⁸⁰⁾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2월, 특별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을 좌익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중벌을 가하는 조치를 강행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조합결성과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재등록토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155개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22개의 연맹체가 해체되었다.⁸¹⁾ 일상적인 감시·통제는 유신체제에 들어 더욱 강화되었으며 정보기관이 그 핵심에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노조간부들을 매수하여 노동조합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통제했고 산하 사업장들의 동태를 1일보고 형식으로 보고 받았다. 한편 경찰 등 정보·치안기관들도 파업현장에 대한 직접개입은 물론 민조노조운동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민주노조운동과 그를 지원하는 도시산업선교회등 종교계와 재야의 움직임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외부지원 차단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화를 어렵게 했다

전두환정권기에는 계엄당국의 주도로 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1980년 8월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제1차 정화조치로 산별노조 산하에 있던 105개 지역지부가 해산되었고, 9월에 단행된 제 2차 정화조치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191명이 강제로 정화조치되었다. 또한 1천여명의 해고노동

79) 허상수, 전계서, p.242.

8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전계서 p.43.

8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p.569-570.

자 명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노동부, 근로감독관실, 정보기관에 비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취업거부·해고·사직강요·학대·전출·부서이동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⁸²⁾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주로 정권초기에 집중되었는데 새로 출범하는 군사정권들은 노동조합을 대거 해체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구속·해고시킴으로서 현장에서 분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⁸³⁾

노태우 정권기에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고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태우정권기 초기에 노동조합 조직이 팽창한 것은 민주화의영향과 함께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건설 및 운영이 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창설하면서 공안정국이 시작되었고 노동운동단체와 민주노조간부들에 대한 수색·불법연행·구속이 다시 일상화되면서 분규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운동에 대한 강제적 통제가 시작되었다.⁸⁴⁾

1990년대에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알려진 ‘파업시 임금 불지급 지침’을 통해 과거 정권의 임금억제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행정제재 수단으로 통제하였다. 이는 1980년대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비의 복지기금화를 법제화함으로써 그나마 취약하였던 노조 재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⁸⁵⁾

노동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관행수준의 통제와 물리적 강제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가시적 차원과 불투명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유신헌법체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는 한국노총 및 각 산업별 노조에 담당관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사찰하고, 노조의 일부 간부들을 매수하거나 후원하여 긴밀하게 결탁하고, 내부의 조직사정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욱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매월 기밀비(당시 물가수준에서 쌀두 가마니 상당의 금액)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1일 보고 형식의 정보를 제공받고, 중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들 정보기관원들은 기업 수준의 민주노조에도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연행, 고문, 협박하였다.⁸⁶⁾

8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서울: 민중사, 1987), pp.51-52.

8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p.318.

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70~2000 민주노조투쟁과 탄압의 역사』 (서울: 현장에서미래를, 2001), p.159.

85) 노동인권회관, 『노동인권 보고서』 (서울: 역사비평사, 1992), pp.25-35

86) 이태호, 『불꽃이어 이 어둠을 밝혀라:7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 (서울: 돌베개, 1984), pp.30-90.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 활동가에게 가해진 블랙리스트(요주의자 명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해고된 노동자 1천여 명의 명단이 작성되어 전국 기업체와 노동관계기관에 배포되는 바와 같은 과잉권력의 행사등이 이런 유형에 포함된다. 나중에 인천경동산업과 성남 고려피혁노조농성과정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의 규모와 작성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노무관리 차원의 자료가 아니라 관계당국의 협조나 목인이 아니고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⁸⁷⁾

국가에 의한 사회 수준의 통제은 운동역량의 소진을 가져오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규율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졌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선교조직을 ‘빨갱이’라고 악선전함으로써 노동자들과 국민 대중들을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하기도 하였다.⁸⁸⁾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배와 강제적 통제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투신이나 분신과 같은 최후적 수단을 선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 공격행위로 나타났다.⁸⁹⁾

2. 사회적 방조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의 배경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 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침묵 카르텔’의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 온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의 항상적 선택 말고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의 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에 의한 폭력의 노골화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선택,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국가는 통치와 지배의 기본적 수단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동원 기제와 동의의 기제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기제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의의 기제를 통한 정치적 지배를 완전히 배제한 별거벗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87) 원풍모방 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민주노조 10년-원풍모방노동조합활동과 투쟁』 (서울: 풀빛, 1987), p.130.

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항운동2』, (1987), p.124.

89) 허상수, 전게서, pp245-248.

90) 조희연·조현연, 전게서, p.107.

노골적인 지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폭력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 온 데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을 국가 또는 정치폭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나 몰라라 식의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침묵 사회’(silent society)의 구축이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의 작동에 따른 침묵사회화 현상은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역사의 실제함과 역사적 기억, 그리고 역사적 학습에 의한 사회적 침묵이다. 이 침묵과 방관은 전쟁과 분단과 독재라는 역사적 실제함을 통해 형성된 즉자적 피해의식에서 발생한다. “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두가 피난지에서서 만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며, 모두 어떤 질서와 규칙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하고 목숨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이른바 ‘피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체득된 삶의 지혜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⁹¹⁾

둘째, 공포의 동원에 의한 강요된 사회적 침묵으로, 그것은 집단적 증오의 영속화를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기억/망각의 정치의 개입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의 내면화 등 정치적 길들이기의 누적적 효과에 따른 억압적 자기검열체제의 제도화 탓이기도 하다.⁹²⁾

셋째,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침묵으로 보편적인 가치와 공공적인 이해보다는 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안락과 쾌락을 선호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이른바 ‘가족개인(family individual)’화 현상의 심화 속에서 체화된 이기주의적 심리의 자연스러운 반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가 엄청나게 향상된 노동생산성의 토대 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비사회의 안락을 누리는 데 상당 기간 동안 성공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물질적 풍요가 점점 증대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행해지는 것은 통제 메카니즘의 하나가 되고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조직화된 정치적 대안 부재에 따른 필연적 귀결로서 역사적 허무주의와 정치적 무기력증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게 된다. 그러나

91) 김동춘 “사상범 통제의 한국적 특성,” 『분단과 한국사회』 (서울 : 역사비평사. 1997), p65.

92)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서울: 한길사. 1998), p.51.

희망의 조직화를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며 사회적으로 침묵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역대 독재권력이 일반 대중들의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합의 독재’(consensus dictatorship) 개념의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측면이 있다. 일반 대중들은 독재 권력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그 공범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즉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독재 권력의 한 축이었다면,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의도 독재 권력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민중들의 삶의 이율배반성, 즉 권력을 거부하는 자율적 세계와 더불어 교육과 언론, 다양한 상징 조작 등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가 관철되는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적 의식속에, 독재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독재를 지지하는 모순이 가능한 것이다⁹³⁾. 또한 그것은 스피노자(B. Spinoza)의 ‘구성적 대중’과 ‘전복적 대중’, 즉 야누스적인 대중의 이중적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현실 속의 대중은 때로는 누구의 기획도 뛰어넘고 혁명적인 열기로 모든 것을 바꿔 놓는가 하면, 때로는 엄청난 압제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권력의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전도된 정치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과 방관의 사회적 심리가 역사적 망각의 사회화로 이어지면서 술한 정치폭력들의 반복적 출현에 한 몫을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이다⁹⁴⁾.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회적 침묵이 ‘침묵사회’(silent society)화 현상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폭력화에 따른 ‘폭력사회’(violent society)화 현상을 가져오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3.경제적 불평등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불평등은 박정희 정권 이후 시작되었지만 정치적 불평등은 그 이전 분단정권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반공규율사회의 형성은 한국정치의 기본적인 지형을 결정지으면서 정치적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⁹⁵⁾ 반공규율사회란‘내

93)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0), pp7-8.

94) 김삼웅,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 피해자에 대한 의미,” 『열사회보』, 제6호.

9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서울: 오름, 2004), P.67.

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반공이데올로기가 일종의 가상적인 국민적 의사합의로 내재화된 동질적인 '극우공동체'를 지칭한다.⁹⁶⁾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반공규율사회는 체제내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기득권집단의 이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즉 반공규율사회는 기득권집단 이회의 세력에게 정치적 접근의 기회를 봉쇄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과 물리적 장치인 경찰 등을 활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제였다.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반공규율사회라는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산업화가 가능했던 조건은 체제 순응적 이면서 근면한 노동자와 세계경제에서의 유리한 조건으로 정치될 수 있는데⁹⁷⁾ 이러한 조건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정권 시기에 형성된 반공규율사회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⁹⁸⁾ 박정희 정권은 반공규율사회를 기반으로 권위주의적 체제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반공규율사회를 강화했다. 주민등록증, 예비군, 그리고 중앙정보부 등 시민들의 삶을 철저히 감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박정희시기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이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유신체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⁹⁹⁾

이러한 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했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이 수행한 경제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실행적 정당성을 통해 정권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양적인 실적주의는 사회전체의 부를 증가시켰지만 그 부의 분배는 왜곡된 것이었다. 양적성장의 극대화는 재벌등과 같은 특정세력에게 부를 몰아주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¹⁰⁰⁾

96)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서울: 당대, 1998), P.8.

97)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pp.21-39.

98) 조희연, 전게서. p.8

99) 김정훈·조희연, 전게서.p. 126.

1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게서, P.68.

제4장 정치폭력의 시기별 양상

정치폭력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작용과 저항행위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이는 국가범죄로 규정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범죄에는 응당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정권의 민주주의 체제의 파괴행위와 이를 수호하고자 했던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가범죄’로서 규정될 수 있다.¹⁾ 이런 점에서 정치폭력의 양상은 행위자를 중심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사회적 현상을 통해 파악해야 필요가 생긴다. 즉, 한국사회의 정치폭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현대사의 흐름은 국가형성 시기->권위주의 시기->민주주의 이행기의 흐름을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치 권력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독재’적 권위주의정권으로 정착되어 간다.

정치폭력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당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던 지배-피지배구조가 정치폭력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항활동의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저항주체의 개별적·계급적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항활동의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주체별 조건에 따라 정치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항활동이 합법적·불법적 공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조직적·개별적 저항의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치폭력의 강제성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강요’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그런데 ‘강요’의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지배세력에 의한 직접적 강요도 존재하고 간접적 강요도 존재한다. 또한 우발적, 계획적인 선택의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폭력의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저항활동형태의 다양성, 저항활동의 과정이나 주체적 활동의 조건, 강요의 주·객관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전제주의체제 하에서의 국가 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국가범죄로서 특정 지워질 수 있다. 조희연,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피해』 (서울: 함께읽는 책, 2002). p.72.

제1절 이승만 정권기 : 이데올로기와의 결합

1945년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종식되었지만, 정치폭력의 구조는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군정과 정부수립과정에서 일제의 통치구조가 인적·물적으로 재생산되었기 때문이었다. 해방은 민주적질서와 정치구조의 형성을 위한 기회였지만 극단적인 좌우대립의 와중에 국가통제기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미군정 기간 동안 일제의 경찰과 사법기관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 종사자들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권력의 상층부를 형성하였다. 고등경찰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각 경찰서에 사찰과가 신설되었다. 사찰과는 정치·사회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집회와 집단행동, 폭동, 시위, 기타 군정에 대해 반대하는 범죄 행위 일체에 대한 사찰을 맡게 됨으로서 이전의 고등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²⁾ 식민지 지배하에서 확립되었던 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식민지 경찰의 수사관행들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 특히 국내에 정치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이었다. 극단적인 좌우대립은 갈수록 폭력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국가기구의 폭력 또한 무자비해져 갔다.(표 4-1 참조)

표 4-1) 좌익 주도의 정치폭력(1948.1-4)

| 항목 | 경찰습격 | 관공서 공격 | 파괴행위 | 소요·시위 | 파업 | 사망자 | | |
|----|------|--------|------|-------|----|-----|-----|-----|
| | | | | | | 경찰 | 폭도 | 비폭도 |
| 1월 | 0 | 0 | 15 | 6 | 0 | 0 | 1 | 1 |
| 2월 | 130 | 9 | 136 | 125 | 14 | 33 | 74 | 14 |
| 3월 | 118 | 14 | 78 | 76 | 6 | 20 | 73 | 14 |
| 4월 | 52 | 1 | 30 | 118 | 3 | 15 | 62 | 77 |
| 총 | 300 | 24 | 259 | 325 | 23 | 68 | 210 | 106 |

출처: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 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253.

2) 역사문제연구소, 『해방 3년사 연구 입문』 (서울: 까치, 1989), p.102.

표 4-2) 해방공간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폭력인식

| 인물 | 정치수단 으로서의 폭력인식 | 정치목표 로서의 폭력인식 | 정치적 지향점 | 이념적 거점 | 정치적 친화력 | 암살여부 |
|-----|----------------------|---------------------|------------|------------|------------|--------------|
| 김일성 | ○ | ○ | 민족해방 | 사회주의 | ○ | × |
| 이승만 | ○ | △ | 완전독립 | 자유민주 주의 | ○ | × |
| 김구 | ○ | × | 완전통일 | 민족주의 | × | ○ |
| 박헌영 | ○ | ○ | 사회주의 혁명 | 사회주의 | × | △(월북/숙 청) |
| 여운형 | △ | △ | 근로인민 해방 | 민족주의 | ○ | ○ |

출처: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303.

해방 후 한국사회는 민족국가의 건설을 둘러싼 이념적 장이 되었다. 앞서 서술한 대로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대립은 결국 이식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공화국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식된 민주주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한국사회는 반공주의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이식된 민주주의 자체도 반공주의에 의하여 왜곡되게 되었다.³⁾

안보를 위한 반공이념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제어하였고 정치폭력의 증폭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면서 각종 정치적 테러가 빈번했다.

3) 조희연은 해방 후 이 시기를 반공규율사회로 보고 있다. 한국사회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내부 정치사회세력 간의 투쟁이—외세와 결합되면서—‘내전’(civil war)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고착된 분단체제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내전 이후 1950년대에는 “내전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안보를 위한 반공이 내적인 의사(擬似)합의로 진화되고 그것이 개인 및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우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 ‘반공규율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2장. 참조.

표4-3) 이승만 정권기 정치폭력(저항)의 발생현황

| 정치 소요 | | | | 시위주동자 | | | | | | |
|----------------|--------------|-----------------------------|----------------|----------------|---------------|--------------------|--------------|-------------|------------------------|------------------|
| 가두 시위 | 폭동 | 정치파업· 정치분규· 지역적 반란 | 정치테 러· 암살 | 학생 | 정치인 | 시민 대중 | 전문직 | 근로자 | 공 산 주 의 자 | 기 타 |
| 295 (61.6%) | 43 (9.0%) | 14 (2.8%) | 127 (62.1%) | 106 (19.3%) | 91 (16.8%) | 89 (16.4%)) | 53 (9.9%) | 29 (5.4) | 121 (22 .5%) | 50 (9. 3%) |
| 479 | | | | 539 | | | | | | |

출처: 신명순, “한국정치에서 있어 정치시위의 효율성,” 『한국정치학회보』, 제 16집 (1982), p.29.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350. 참조 재구성.

따라서 정치폭력의 양상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에 의한 피해라기 보다 제약 없이 가해지는 억압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승만정권기는 국가의 공안기구의 성격이 물리적 강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이시기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대상자가 주로 좌익성향을 갖는 인사들이 중심이었으며, 정치적 살인과 테러가 중심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최소한 통제의 기제를 사용한다든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면 이 시기는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테러를 방조하는 등 사적폭력 까지 반공주의라는 이념으로 묵인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전쟁 중 국가공권력은 비상시임을 내세워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보도연맹, 부역자 처벌, 국민방위군 사건, 빨치산 토벌 중의 민간인 학살등 공권력의 정치폭력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⁴⁾ 특히 1950년 9-10월 한달 동안 부역자 처벌은 법규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조차 지극히 자의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인민군 치하에 남은 전 주민이 부

4) 이에 대한 연구는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서울:역사비평사, 1999)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국민보도연맹』 (서울: 역사비평사,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역자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도 부역자로 검거된 사람이 15만 3천 8백 25명이었으며 자수자가 39만 7천 90명으로 , 부역자로 취급된 사람은 모두 55만 9백 15명에 달하였다.⁵⁾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가장 크게 의존한 것은 경찰기구의 물리력이었다. 무리한 경찰 병력확장은 창설초기부터 경찰관의 자질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다. 경찰측 자료에서조차 이시기 경찰이 ‘봉사와 예방보다는 진압과 단속이라는 경찰상을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주게 되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⁶⁾

표 4-4) 이승만 정권기 경찰병력의 변화

| 연도 | 병력 | 연도 | 병력 |
|------|--------|------|--------|
| 1939 | 12,314 | 1955 | 47,250 |
| 1940 | 23,888 | 1956 | 39,037 |
| 1947 | 27,600 | 1957 | 39,031 |
| 1950 | 48,010 | 1958 | 39,007 |
| 1951 | 63,427 | 1959 | 33,035 |
| 1952 | 63,427 | 1960 | 33,035 |
| 1953 | 50,731 | 1961 | 29,835 |
| 1954 | 50,731 | 1962 | 29,910 |

출처: 박동서, “경찰행정사(1945-196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966).p.65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에서 권력구조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을 정점으로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었다.⁷⁾ 이시기 독점적 권력운용을 감시할 언론과 정당의 기능은 권력기구의 물리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결국 권력의 시각에서 국민의 의무는 국가=이승만=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고 이로부터 이탈하는 집단과 개인은 ‘비국민’으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⁸⁾ 전쟁을 겪으면서 비대할 대로 비대해지고 갖은 특권을 누렸던 폭압기구들은 전쟁 이후 국민의 충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포에 기초한 충성’⁹⁾은 항상

5) 내무부 치안국, 『경찰 10년사』, (1959), p.267.

6) 박법래, 『한국경찰사』, (경찰대학, 1988), p. 205.

7) 백운선, “이승만 통치의 유산,”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1세기 한국정치학의 도전과 선택』 (1999), P. 13.

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81.

국민들의 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복종을 철저히 내면화하도록 강요하였다.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경찰, 특수대동 수사 정보기관이었고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과 교정기관들이었다. 권력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은 항상 빨갱이로 몰릴 운명에 놓여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연행과 감금, 고문, 간첩 조작 등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에 대한 충성검증은 1인 독재체제의 집권화된 관료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권 내에서는 술한 파벌들 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¹⁰⁾ 이승만에 대한 충성검증은 이들 파벌간의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에 대한 국기기구의 충성은 권력남용과 불법, 위법 등이 동원된 충성경쟁이 되었고 부정부패가 사소한 영역까지 일상화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기 갖가지 형태의 정치테러가 빈발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충성이 애국으로 인식되어버렸던 권력의 개인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승만정권기 정치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사적폭력 집단이 공권력과 결합하여 그 비호 하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다. 이승만의 가부장적 권위에 기댄 자유당 정권 하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만 드러낼 수 있다면 법과 규범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자유당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단체 중 상당수가 지역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정권의 핵심부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¹¹⁾

그 결과 야당탄압과 정치테러, 선거과정에서 폭력행사 등은 경찰과 행정기구 등 국가공권력과 자유당의 정치조직, 그리고 지역의 폭력조직이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1950년대 횡행했던 이른바 정치깡패들은 바로 이런 결합구조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정치폭력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에 의한 폭력의 행사라기보다 제약 없이 가해지는 억압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시기 국가의 공안기구의 성격의 폭압적 기구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이시기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대상자가 주로 좌익성향을 갖는 인사들이 중심이었으며, 정치적 살인과 테러가 중심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최소한 통제의 기제를 사용한다든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

9) 김동춘, “거창사건의 전개과정,” 거창학술대회 발표문, 2000, P.83.

10) 부르스 커밍스 저, 김동서 외 옮김,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p.490.

11) 이기훈, “일제와 이승만 정권기 국가폭력,”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83.

해 왔다면 이 시기는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테러를 방조하는 등 사적폭력 까지 반공주의라는 이념으로 묵인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2절 박정희 정권기 : 구조적 정착

1961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박정희정권 시기는 한편으로는 ‘군부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및 가시화 등 ‘개발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developmental dictatorship)로 규정될 수 있다.¹²⁾

1960년대의 개발독재는 기본적으로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안보독재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지배체제의 계승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반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negative) 국가목표가 ‘근대화’라고 하는 적극적인(positive) 국가 목표로 전환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적 동원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독재와 구별되는 ‘개발’독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¹³⁾

권위주의적인 반민주주의적 체제로서의 개발독재체제가 확립된 1960·70·80년대에 바로 이러한 체제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투쟁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정치폭력이 발생하였다.¹⁴⁾

한국의 개발독재는 다른 제3세계국가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만이 일당적 독재체제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다당제적인 정치적 제도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속에서 독재와 저항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역사 속에서 저항적 사회운동의 전통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⁵⁾

12) 박정희 군부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후에,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 개발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13) 이러한 측면을 국가기능 면에서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로, 국가 형태라는 면에서는 ‘권위주의적 발전 동원체제’(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로 표현된다. Hee-Yeon. Cho, and Jessop .Bob,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Prepared for the workshop, In Search of East Asian Modes of Development: Regulationist Approaches, (Tunghai University, Taichung .2001).pp.1-15.

14) 동일한 개발독재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발독재의 성립과정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의 유무, 개발독재가 유지되는 정치사회적 조건,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의 존재 유무, 경제성장 성취 정도, 저항적 사회운동의 전통 등에 따라 개발독재의 평가를 다를 수 있다.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3), 총론편

15) 김 준.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사회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3). 『경제와 사회』, 제23권,(1994), pp.259-281.

표4-5) 박정희 정권기 정치폭력(저항)의 발생현황(3공화국)

| 정치 소요 | | | | 시위주동자 | | | | | | |
|------------------|--------------|-----------------------------|--------------|----------------|------------|--------------|--------------|--------------|-----------------------|--------------|
| 가두 시위 | 폭동 | 정치과업· 정치분규· 지역적 반란 | 정치테 러· 암살 | 학생 | 정치인 | 시민 대중 | 전문직 | 근로자 | 공 산 주 의 자 | 기 타 |
| 1,106 (97.9%) | 11 (1.0%) | 4 (0.4%) | 9 (0.9%) | 922 (76.2%) | 85 (7%) | 65 (5.3%) | 71 (5.9%) | 38 (3.2%) | 0 | 29 (2.4%) |
| 1,130 | | | | 1,210 | | | | | | |

출처: 신명순, “한국정치에서 있어 정치시위의 효율성,” 『한국정치학회보』, 제 16집 (1982), p.29.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p.350. 참조 재구성.

5.16 쿠데타세력들이 구축한 국가체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수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군부에 기반을 둔 군사독재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기에 고위직 행정관료 25.5% 가 군 장교 출신 인 사였다. 정부 고위관료 4명중 1명은 군 장교출신이었으며 박정희 정권기 재직한 장관은 1백20명중 42명(35%)가 군 장교 출신 인사였다.¹⁶⁾ 당시 군사독재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을 권력유지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1964년 6월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고향되자 비상계엄을 선포, 유신체제가 비상계엄령을 선포, 1965년 8월 한일협정 타결 시 위수령 발동, 1971년 10월 위수령 발동, 1979년 10월 부마항쟁기 위수령 발동 등은 이러한 군의 정치적 동원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¹⁷⁾ 군은 국가가 보유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막강한 물리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정권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은 항상적으로 군부의 개입가능성이 라는 공포와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⁸⁾ 이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저

16) 양성철, 『한국정부론』 (서울: 박영사, 1994), p.214.

17) 오병헌, “군부독재의 칼, 계엄령 연구,” 『신동아』, 1993년 11월호.

18)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 (서울: 돌베개, 1992), pp.193-194.

항의지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전쟁이나 유사시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해야할 명단을 가지고 있어 항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¹⁹⁾

한국사회는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실질적인 능력보다 훨씬 과대 성장한 공안기구를 갖게 되었다. 일제식민지 통치 말기였던 1943년 식민지 경찰의 총수는 2만 2천 7백 28명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1년 경찰력은 남한만 6만 3천 4백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²⁰⁾ 1958년 경찰관 총수는 3만 8천2백73명으로 인구 5백40명당 1명의 경찰이 있었던 셈이다. 일제시대 인구 1천27명당 1명의 경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단이후 한국정부가 얼마나 방대한 공안기구를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²¹⁾ 박정희 정권은 이미 과대성장한 공안기구들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이를 한층 강화하였다.²²⁾ 이밖에 보안사령부등 군 수사기관도 강화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실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보안사령부는 비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면서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했다고 한다.²³⁾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한 군의 정치적 동원,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중앙정보부등 국가공안기구의 강화로 국가권력은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된 강압체제가 구축되었다.

국가의 권력이 현저하게 폭력성을 발휘하게 되는 데는 권력에 대한 동의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960년대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동의의 기반이 축소되어가면서 그에 따른 저항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초반 시기는 개발독재의 ‘국가 위기’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한

19) 박정희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잠재적 저항세력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쿠데타 직후 잠재적 체제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2천여명의 인사가 검검 하였다. 이는 애초에 정권에 저항할 여지가 있는 인사들을 정치영역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1961년 5월 18일) Central Decimal Files 795B.00, RG59,NA.

20) 임대식, “친일, 친미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p.14-22.

21) 오유석, “4월 혁명과 피의 화요일,” 『20세기 한국의 야만』 (서울: 일빛, 2001), p.383.

22) 중앙정보부는 주로 해외 정보등 각 정부기관 내의 정보를 수집, 종합하는 차원의 국가정보기관이 아니었다. 내부 정치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국민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는 대체로 3천명에서 8천명의 요원이 있었던 것을 추정되고 있다.

최완규, “권위주의체제의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988) pp.118-119.

23)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내 전문(1971년 3월 2일), Subject-Numeric Files, Pol 14 Kor S, RG 59,NA, P.7.

24) 조희현, 전개서, p.31.

일회담 반대투쟁은 그 굴욕적이고 정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았고, 정권 자체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게 된다.²⁵⁾ 박정희 정권은 민정이항 이후 처음으로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을 단행하고, 더 나아가 ‘인민혁명당 사건’의 발표를 통해 냉전적 위기의식을 증폭시킴으로서 투쟁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당시 한일회담 반대정서는 전 국민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국민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군사력으로 억압하게 되고, 이는 군사정권의 폭력성이 대중들에게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통한 성립 때문에, 민주주의 정권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하여 박정희식 독재가 곧 민주주의라는 인식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²⁶⁾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졌다.²⁷⁾ 그러나 개발독재는 계급·계층적 불평등, 사회적·지역적 불균등을 동반하게 된다.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변화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순과 그 모순에 대응하는 저항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상징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1970년 11월 3일 ‘전태일 분신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몰고 오는 새로운 문제점, 산업화와 함께 진행되는 도시화의 문제점 등은 새로운 저항을 촉진하게 된다. 1971년 8월 광주대단지 폭동 같은 사건은 바로 산업화가 동반하는 새로운 모순과 저항을 가장 잘 상징하여 준다. 이처럼 개발독재에 있어 최대의 동의부여 기반이었던 성장주의도 그 효력이 약화되어 가면서, 1960년대 개발독재의 위기가 조성된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에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성장의 모순을 따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조작적으로’ 반공주의를 증폭시키며 그것을 제도화하게 된다.²⁸⁾ 1968년 초의 ‘무장계릴라 청와대 침입사건’과 1968년 11월의 ‘울진·삼척지

25)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p.10-30.

26) 유순달, “박정희의 한국적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논단』, 146권, (2001), pp.62-63.

27) 60년대 국민대중의 수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주주의 혹은 박정희 정부의 반민주적 진행에 대하여 일정하게 관용하는 인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8) 1968년 초의 향토예비군 창설, 1968년 4월 대학군사훈련교육 실시방침,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선포 및 반공교육의 강화, 1967년 7월 동백림사건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1968년 8월의 통일혁명당 사건 부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조희연, 전계서, p.87.

구 무장 계털라 침입사건' 등의 사건들은 남북관계를 경색화시킴과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군부정권은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속에서 남한사회의 반공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개발독재의 동의기반을 부수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1972년 2차 인혁당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서 기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1960년대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강화되어가게 된다. 1960년대 말부터 전면화 되어가는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을 시발로 하여 1971년 부정선거반대투쟁과 '교련반대투쟁' 및 '학원자유수호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부터 촉발된 학생과 정치인, 재야인사들의 저항은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박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까지 발동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1960년대 말 및 197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박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범(汎)국민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²⁹⁾.

29) 이러한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간 군부통치 하에서 위축되어 있던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반영으로서 공개적인 저항조직이 출현하게 된다. 71년 4월 21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건설은 그것의 한 표현이다. 이 무렵 반합법적인 공개기구로는 '민주수호청년협의회'(71년 4월 21일 결성),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총연맹'(71년 4월 14일 결성),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71년 4월 20일 결성)가 있다. 이 4개의 단체들은 공동으로 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전활동 및 부정선거규탄투쟁을 전개하였다. 70년대의 재야공개기구는 71년 4월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 79년 3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순으로 변화해간다.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p.90.

표 4-6) 1970년대 양심수 연도별·유형별 증감 현황

| | 1970 | 1971 | 1972 | 1973 | 1974 | 1975 | 1976 | 1977 | 1978 | 1979 | 계 |
|--------------|------|------|------|------|------|------|------|------|------|-------|-------|
| 국가보안법/보안법 | 6 | 27 | 25 | 33 | 28 | 25 | 9 | 6 | 4 | 98 | 261 |
| 집시법 | | 4 | 2 | 45 | | 8 | 1 | 1 | | 11 | 72 |
|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 | 8 | | | 1 | 9 | 1 | | 18 | 1 | 38 |
| 국가보안법/노동법 | | | | 46 | | | | | | | 46 |
| 계엄포고령 | | 8 | 1 | | | | | | | 44 | 53 |
| 내란죄 | | 4 | | 4 | | | | | | | 8 |
| 방화죄 | | | | | | | | 6 | | 3 | 9 |
| 경범죄 처벌법 | | 11 | | 102 | 110 | 10 | | 1 | 96 | 854 | 1,184 |
| 긴급조치 1호 | | | | | 48 | | | | | | 48 |
| 긴급조치 4호 | | | | | 142 | | | | | | 142 |
| 긴급조치 9호 | | | | | | 95 | 56 | 163 | 213 | 113 | 580 |
| 소요죄 | | | | | | | | | | 108 | 108 |
| 기타 | 1 | 94 | 11 | 4 | 2 | 13 | 4 | 3 | 16 | 7 | 155 |
| 계 | 7 | 156 | 30 | 234 | 331 | 160 | 71 | 120 | 347 | 1,239 | 2,704 |

출처: 한국연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편), 『한국현대사 3』 (서울: 풀빛, 1993),p.231.

이러한 저항의 고양을 보여주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권리 획득 및 생존권을 위한 주요 사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인턴 파업, 1971년 7월 사법부 파동,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서울대 교수 및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자주선언, 1971년 9월 서울대부

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의 파업, 1971년 9월 15일 파월노동자 KAL빌딩 습격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저항이 고양되어 가면서 군사정권 수준의 ‘국가위기’가 고조되어 가게 된다.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하여, 정권사수차원에서 국가폭력성을 전면화하면서 ‘전체주의화된 개발독재’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유신체제’였다.³⁰⁾

표 4-7) 박정희 정권기 정치규제법에 의한 총 검거인원수:1961-1980

| 국가보안법 | 반공법 | 정치활동정화법 | 사회안전법 | 집시법 | 비상사태 | | 긴급조치9호 | 계 |
|-------|-------|---------|-------|-----|----------------|--------------|--------|--------|
| | | | | | 하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 | |
| 1,968 | 4,172 | 3,849 | 19 | 625 | 15 | 15 | 726 | 11,389 |

출처: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서울:역사비평사, 1994),p.31 :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p.413 참조 재구성.

1972년부터 시작된 유신체제 하에서는 강제적 통제가 보다 일상적인 제도적 형태로, 그리고 일상적인 국가행위로 나타났다. 1970년대 초반의 위기와 그에 기반을 둔 저항에 위협받은 박정희정권은 여기서 한 단계 높은 군부정권의 전체주의적 강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박정희정권의 전체주의적 강화는 그에 대항하는 저항을 점차 강화시켰다. 1970년대 정치체제는 1960년대 이후의 개발모순의 심화와 군부통치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위기의 만성화에 따라 정치폭력이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1960년대와는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군부통치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환상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반공 냉전이테올로기에 의한 국민들의 ‘환상적 동의’(imaginary cosensus)가 그래도 군사정권의 존재기반을 완전하게 박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1970년대 초를

30) 이와 관련하여 남미의 산업화의 위기와 권위주의정권 성립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관료적 권위주의론’(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식민지파시즘’의 등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경과하면서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본질이 대중적으로 노정되고 반공 냉전이테올로기가 부분적으로 이완됨에 따라 이제는 물리적 강압과 폭력을 전면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박정희 정권은 나아가게 된다.

유신체제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국가기구의 물리력이 강화된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예는 시국사범의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1970년 시국사범의 숫자는 3백 43명이었으나 유신말기인 1979년에는 1천2백 39명으로 증가한다.³¹⁾

표 4-8) 긴급조치 발동 상황

| 긴급조치 | 주요 내용 | 발동기간 |
|---------|---|--------------------|
| 긴급조치 1호 |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 하는 행위의 일체금지 | 1974.1.8~1974.8.23 |
| 긴급조치 2호 |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1974.1.8~1974.8.23 |
| 긴급조치 3호 |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강화,매점매석 엄단 | 1974.1.14~1975.1.1 |
| 긴급조치 4호 | 전민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금지 학생들의 시위, 집회, 농성 금지 | 1974.4.3~1974.8.23 |
| 긴급조치 5호 |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 1974.8.23 |
| 긴급조치 6호 | 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조치 | 1975.1.1 |
| 긴급조치 7호 | 고려대학교 휴교, 학교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함 | 1975.4.8~1975.5.13 |
| 긴급조치 8호 | 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 |
| 긴급조치 9호 | 유언비어날조,유포,왜곡전파,집회,시위,신문,방송,통신,등에 의한 헌법부정,개헌청원 및 선전행위 금지 사건허가없는 일체의 학생집회 및 시위 금지 이조치에의한 주무장관관의 명령은 사법심사에서 제외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병력출동 요청시 지원 | 1975.5.13~1979.12 |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5.

이 시기 박정희정권은 집권당과 국회, 야당까지 통제하였으며, 공작정치와 밀실정치가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김대중의 일본 망명과 납치 살해 시도, 장준하의 살해, 김영삼의 국회 제명 등은 유신시대의 공작정치의 실상을 증언하여 주는

31) 이우재,“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역사비평』 봄호, (1991), p.317.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할 극단적 상황이 긴급조치라 할 수 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은 특정국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조치에서부터 전체 사회를 일상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포괄적 긴급조치들을 선포하게 된다. 이러한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1975년 5월에 선포된 긴급조치 9호였다.(표4-8참조)

이처럼 일상화된 물리적 강제와 폭력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먼저 안기부 등 정보기관들이 제도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서부터,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밀착감시와 통제를 하게 된다. 전화 도청에서부터 각종 하급 정보요원의 고용, 심지어 문체 학생들의 동태파악을 위하여 교수를 동원하는 등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언론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국민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작’이 행해지게 된다. 반체제적인 지식인이나 재야인사들, 저항적 학생운동을 비롯한의 공작이나 침투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거나 저항적 진영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매도를 일상적으로 동원하게 된다.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에는 국가요원들이 ‘보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그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게 된다.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조작에서 ‘국민총화’와 같은 담론들이 채택되고 활용되었으며 안보이데올로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권유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게 된다.³²⁾

제 3절 전두환 · 노태우 정권기 : 상시적 제도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저항운동은 전 국민적 운동으로 비상하여 가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화가 지배적인 시대정신이 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유신체제와 광주민중항쟁에서 드러난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1980년대의 국민적 민주화운동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³³⁾

1980년 광주항쟁은 전면화된 국가폭력성에 의한 피해의 가장 극적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⁴⁾1980년 광주항쟁은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선

3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 서강대. 1997), pp.56-59.

33) 조희연, 전개서, p.46.

34)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2001), pp.10-15.

광주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는바, 집단학살로 인한 사망자, 중경상 등 신체적 피해자, 구속 등의 피해자들의 규모가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³⁵⁾

이처럼 1980년대 저항의 출발점에 광주민중항쟁이 존재한다. 광주민중항쟁을 통하여 1980년대 사회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어 가지 시작하였으며, 반독재 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다.³⁶⁾ 저항운동의 급진적 인식은 결국 전두환 정권의 집권의 정당성이 학살에 있음에 따른 동의의 기반이 축소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급진적 인식은 저항의 강화로 나타났다.³⁷⁾ 저항운동의 강화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이러한 강박관념은 결국 민주화운동에 대해 과민하리만치 완강하게 대응하게 만들었다.³⁸⁾

전두환 정권의 완강한 대응으로 ‘청계피복 노동조합’ ‘원풍모방 노동조합’ 등 1970년대의 민주노조가 해체되고 사회운동조직들이 대부분 해체되는 등 운동의 잠복기 및 침체기로 들어가게 된다.³⁹⁾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저항운동은 대항 대상과 내용의 인식이 명확히 되면서 저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1980년대 저항운동의 대중적 전개과정은 곧 운동주체들의 변혁적 인식의 명확화 과정이자 운동론(변혁론)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론 및 변혁론상의 제쟁점과 기본 내용은 이 시기에 변혁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사회 구조의 본질적 성격, 변혁의 체제적 내용, 변혁의 주체, 변혁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인식의 심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체계화된 이념의 형태로 제시된다.⁴⁰⁾

35) 90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관한 법률과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특별담화에 따라 광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집계한 시민의 인명 피해는 총 3,013명으로 나타났다. 총 166명이 숨지고 47명이 행방불명됐으며 2,80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경상자 가운데 1,064명은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당했으며 이중 627명은 국가내란죄 등으로 구속당하는 고초를 겪었다(『중앙일보』, 1995년 11월 26일 자).

36) 광주민중항쟁은 미국과 군부독재는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대항학살을 서슴치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은 반미반독재투쟁의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었다. 광주항쟁을 통하여 변혁적 사회운동의 다양한 인식적 내용들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상의 변화는 국가본질로서의 국가폭력성에 대한 인식, 그러한 폭력적 국가에 대한 저항의 당위성이었다.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서울:돌베개, 1992), P.67.

37) 80년대 초반의 운동가들의 인식의 혁명적 전환은 바로 동의적 기반의 축소와 민주적 저항의 강화 사이의 일종의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동의적 기반의 축소는 보다 급진적 인식을 낳고, 이러한 급진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민주적 투쟁의 강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서울: 한울, 1989), P.15.

38) 박세길, 전계서, P.79.

39)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P.48.

40) 경찰청, 『해방 이후 좌익운동권 변천사: 1945년-1991년』, (1992), p.295.

급진적 인식의 심화는 군사독재정권 측의 대대적인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좌경’ ‘용공’ ‘이적’ ‘불순세력’ 등의 용어들은 사회운동에 대해 군사정권이 애용하였던 용어들이다. 폭력적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 반공 등 극우적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 또한 안보와 반공을 무기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법’과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써 정권에 반대하는 각종 저항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였다.⁴¹⁾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시위, 농성이 잇따랐고, 각종 지하유인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다양한 비공개 조직들이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전두환 정권이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군, 정보기관, 경찰 등의 각종 ‘국가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해 정보를 캐고 유형무형의 통제를 가했다.

시위, 농성 등 각종 투쟁에 대해서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사전 봉쇄하거나 강제해산 시키면서 대간첩사건만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은 어느덧 시위진압이 임무의 전부가 되다시피 되었다. 정보기관 또한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국민을 감시하고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앙정보부와 그 지휘아래 있는 경찰기관의 고유 업무였으나, 전두환 정권에 와서는 안기부뿐만 아니라 군부대내의 사찰업무를 관장하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까지도 동원되었다. 이시기 오히려 활동 면에서는 보안사가 안기부에 능가할 정도였다.⁴²⁾ 이러한 공안기구들에 의해 전두환 정권기 7년 동안 하루에 평균 1.6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으며⁴³⁾, 1981~83년 동안 1천 4백여 명의 학생이 제적되었다.⁴⁴⁾

41) 언론사의 가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수십억원의 자본을 자져야만 일간신문을 발행할 자격을 주었고, ‘방송윤리 심의규정’을 두어 사실상 사전검열을 합법화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엮음, 『인권보고서』, 제3집, (서울: 역사비평사, 1989), PP.152-153.

42) 박세길, 전개서, pp.82-83,

43) 『동아일보』, 1992년 6월 29일자.

44) 한용 외,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서울: 청년사, 1989), P.94.

표 4-9) 1980년대 정치규제법과 구속자 현황: 1980-1987

| 연도 | 국가보안법 | 반공법 | 정치활동 정화법 | 사회안전법 | 집시법 | 계 |
|----------|--------------|------------|-------------|-----------|--------------|---------------|
| 1980 | 23 | 136 | 811 | | 365 | 1,355 |
| 1981 | 169 | | | | 311 | 480 |
| 1982 | 171 | | | | 197 | 368 |
| 1983 | 153 | | | | 388 | 541 |
| 1984 | 108 | | | 4 | 156 | 268 |
| 1985 | 143 | | | 1 | 840 | 984 |
| 1986 | 525 | | | 3 | 2,574 | 3,102 |
| 1987 | 786 | | | 3 | 4,172 | 4,961 |
| 계 | 2,078 | 136 | 811 | 11 | 9,003 | 12,059 |

출처: 박종성, 『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p.406.

1980년대 전반 및 중반의 시기는 광주항쟁을 통해서 이미 그 동의적 기반을 상실한 정권이 오로지 폭력성에 의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준 시기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동의적 기반의 붕괴가 저항주체들의 인식의 급진화를 낳음으로서 더욱 강화된 저항을 결과하게 됨을 극적으로 보여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 및 중반의 시기에는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폭력성을 노골화해갔으며, 이것은 엄청난 개인적·집단적 피해를 낳았다. 1985년의 김근태 고문사건이나 1986년 권인숙 성고문사건, 1987년의 박종철 사건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폭력의 특징적인 점은, 1970년대와 달리 저항운동을—긴급조치 9호와 같은 방식으로—법적 통제장치에 의해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저항이 전국적·전 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됨으로서 1970년대와 같은 탄압 기제들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의 경우에 있어서 체적이나 구속 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운동적 삶을 향한 ‘통과 의례’ 정도로 인식되고 저항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저항이 1970년대와 다른 차원에서 전투적·혁명적 방향으로 ‘심화’됨으로서 정치폭력 또한 더욱 심화되었다. 체적이나 구속과 같은 유

형의 피해의 규모가 질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고문 등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의 피해도 급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1970년대에는 저항행위 자체가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일부노동자 등 선진적 저항집단들에 국한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 저항 자체가 전국민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전체 계층 및 전국민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1960년대 이후의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투쟁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면적·일상적인 폭력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동의기반이 철저하게 붕괴하였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6월 10일부터 6월 29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전국적인 민주주의 투쟁에 동참하였다. 이는 1970년대까지 전체주의체제와 정치폭력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던 중간층들이 독재체제로부터 폭넓게 이반함으로써 정치폭력에 맞서는 저항운동에 대한 동의적 기반이 폭넓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존재하였던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6월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체제가 균열되는 바로 그 시점에, 노동대중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전국적, 전산업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7, 8, 9월 동안에 전국의 4,000여개 기업체에서 27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파업과 농성, 시위에 참가하였는가 하면, 6.29 선언 이후 10월까지 결성된 신규 노동조합은 1,100여개에 이르렀다. 이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기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사실 1950년대 분단의 고착화 속에서 노동계급 등 기층 민중들은 ‘침묵’과 방어적 생존에 머물러야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대중의 역동화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정치폭력에 대응하면서 그 이전 시기에 가장 침묵을 강요당하였던 계급이 저항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어떤 점에서 이전 시기의 노동자들의 피해는 주로 구조적인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저항적 역동화는 정치폭력에 맞서는 집단이 단순히 학생이나 지식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실제 이후 시기의 노동자들의 피해는 보다 적극적인 저항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피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4-10 참조)

표 4-10) 노태우 정권기 연도별 해고, 구속, 수배 노동자 수

| 연도 | 해고 | 수배자 | 수배자 | 계 |
|------|-------|-----|-----|-------|
| 1987 | | | 452 | |
| 1988 | 240 | | 79 | 319 |
| 1989 | 2,653 | | 605 | 3,258 |
| 1990 | 904 | | 486 | 1,390 |
| 1991 | 733 | 34 | 494 | 1,227 |
| 1992 | 362 | 13 | 184 | 546 |

출처: 이강로, “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1990-1999,”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1999 가을), p.140을 참조해 재구성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었다.⁴⁵⁾

위로부터의 이행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폭력과 관련하여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과거의 물리적 국가기구의 해체적 재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통제를 담당했던 국가요원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국가기구와 국가요원의 측면에서 구 권위주의적 국가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후 민주주의 이행국면에서 정권 차원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이전과 같은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이 다시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보게 되면, 정치폭력이 결코 감소하지 않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주화 이행에 대한 선언은 있었지만 구속자 수가 전체적으로는 3배 88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세력에 정치폭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즉 언제든지 정권의 체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과거와 같은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45)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1998), p.68.

표 4-11) 6.29선언 이전-이후 구속자 현황 비교

| | 학생 | 노동자 | 재야 및 기타 | 계 |
|-----------|-----|-----|---------|-----|
| 6.29선언 이전 | 139 | 44 | 99 | 282 |
| 6.29선언 이후 | 207 | 413 | 50 | 670 |
| 소계 | 346 | 457 | 149 | 952 |

출처: 장성욱, “6.29선언 이후 구속된 양심수들” 『신동아』 1988년 1월호 p,340.
(1985년부터 1987년 11월 6일 현재).

그러나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국가폭력성에 반대하는 저항 자체가 불법화되고 비공식화 되었으나 민주주의가 부활함으로서 일정하게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저항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 저항행위—1970년대 중후반 긴급조치 9호 하에서는 일체의 저항행위—를 불법화시켜 놓고 저항행동이 발생하는 즉시 정치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는 저항—결사와 집단행동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저항행위가 현재화하는 자유가 주어짐으로서,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위기적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폭력성이 발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폭력성의 발현과 그에 대응하는 투쟁의 표현 양상, 양자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과거 일방적으로 통제당하던 대중운동들이 조직적·정치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저항운동이 학생운동의 전투적인 투쟁과 재야운동의 상징적 선도투쟁에 비조직적인 일반 대중들이 참여함으로서 나타난 형태였다면 1987년 이후에는 저항운동이 조직화 정치화 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민주주의적 의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운동의 행위가 확대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예를 통일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⁴⁶⁾. 학생들은 노태우정권 출범을 계기로 저항공간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여, 학생운동의 투쟁을 이른바 ‘통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1988년 3월 서울대

46) 윤지훈, “반공규율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 고찰”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 2002).p.1-10.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의 ‘남북한청년학생 공동체육대회와 국토순례대행진’ 제안으로 촉발된 통일운동은 1988년 5월 조성만 군의 ‘양심수 석방과 올림픽 남북한 공동 주최’를 주장하는 명동성당 할복 투신 자살사건, 1988년 ‘8.15남북학생회담 추진 투쟁’, 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투쟁, 1989년과 1990년 ‘8.15범민족대회 개최 투쟁’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은 한편으로는 저항운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저항운동의 새로운 공세에 직면한 노태우 정권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물리적 사용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폭력이 더욱 정교화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로 전면화 되었다.

1987년 노태우정권은 ‘좌경척결을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8월27일 김정렬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운동의 배후에 불순, 좌경세력이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 통제에 나선다.⁴⁷⁾ 또 노동현장에 침투하거나 배후에 노학연대투쟁을 시도한다는 혐의로 좌경 사건 관련자 1천6백18명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다.⁴⁸⁾

이러한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는 1989년 현대중공업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물리력의 사용이나, 1989년 3월 서울지하철 쟁의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나타났다. 또 ‘참교육’을 지향하면서 1989년 5월 28일 결성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67명의 구속과 1,550명의 해직, 10,000여명의 탈퇴각서 제출이라고 하는 물리적 강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물리적 통제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12에서 보이듯이 민주화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위의 횟수와 참가인원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항운동이 조직화됨에 따른 상시적 투쟁이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 공간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에서 보이듯이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시위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운동의 조직적 발전, 저항운동의 회복과 강화, 시민사회 내에서의 비판적 분위기는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구조와 결합되면서 노태우 정권을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4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87노동사회사정』, (1988), p.17.

48) 『중앙일보』, 1987년 8월 28일자.

표 4-12) 6월항쟁 이후 시위의 횟수와 인원(1986~1997)

| | 학원 | | 노동 | | 경제·사회 | |
|------|--------------|------------------|--------------|------------------|---------------|------------------|
|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횟수 | 인원 |
| 1986 | 2,001 | 475,692 | 397 | 57,260 | | |
| 1987 | 5,581 | 1,756,325 | 4,676 | 714,311 | 304 | 14,113 |
| 1988 | 4,246 | 1,015,032 | 1,998 | 364,542 | 1,412 | 66,364 |
| 1989 | 4,526 | 1,267,126 | 1,703 | 398,729 | 2,013 | 230,039 |
| 1990 | 7,551 | 1,429,823 | 441 | 167,865 | 2,317 | 278,226 |
| 1991 | 7,852 | 2,016,867 | 234 | 186,113 | 2,370 | 233,860 |
| 1992 | 6,555 | 1,420,961 | 235 | 104,489 | 2,635 | 340,689 |
| 1993 | 9,506 | 1,309,118 | 114 | 108,577 | 3,413 | 582,095 |
| 1994 | 7,353 | 1,324,486 | 121 | 104,339 | 3,512 | 582,106 |
| 1995 | 5,708 | 915,562 | 88 | 49,717 | 4,194 | 595,604 |
| 1996 | 5,840 | 993,960 | 89 | 79,495 | 4,006 | 696,916 |
| 1997 | - | - | 2,208 | 919,947 | 4,366 | 580,015 |
| 1998 | - | - | 3,974 | 868,378 | 4,550 | 660,015 |
| 1999 | - | - | 6,563 | 1,153,021 | 6,656 | 1,010,724 |
| 2000 | - | - | 6,985 | 1,352,800 | 10,792 | 1,260,741 |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86~2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4) p.60.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군부정권 세력들의 재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다. 1987년 대선을 통해 어렵게 집권한 구체제세력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것이 바로 1990년 1월 22일 선포된 3당합당이었다. 3당 합당은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위기탈출 및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시도였지만, 저항운동의 입장에서는 노태우정권의 정략적 성격과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⁴⁹⁾ 3당 합당 이후 노태우정권 말기까지의 시기는 3당합당 체제의 모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활성화와 전투적 저항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3당 합당 이후 저항의 재활성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치폭력의 재 노출은 1991년 5월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군이 시위 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시작한 1991년 5월 정국은 이른바 ‘분신정국’으로 발전되어갔다. 이 5월 정국은 대기업연대회의 관계로 구속 중이던 박창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5월 6일 새벽 변사체로 발견됨으로서 발단

49) 정관용, “3당합당의 구조적 본질과 실천적 대안” 『계간 동향과 전망』, 통권 제7호, (1990), pp.198-201.

이 된 전국적 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5월 정국은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분신⁵⁰⁾과 정치투쟁 및 노동자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노태우정권기 지역, 업종별 노조 건설 현황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
| 마창노련 87.12.14 | 현노련 2기 88. | 광노협 89. 3. 5 | 현총련 3기 90 | 현총련 4기 91. 1 | 대학노련 92. 8.30 |
| 사무금융노련 87.11.27 | 진노련 88. 4.16 | 시설관리노협 89. 1.28 | 전강노 90. 4.28 | 포항노대 91. 3 | |
| 현노협 1기 87.8 | 민출노협 88. 1.19 | 성남노련 89. 5. 1 | 대노협 1기 90.12. 3 | 경주노대(협) 91.10.26 | |
| 병원노련 87.12.17 | 서노협 88. 5.29 | 전일노 89. 4.23 | 대기업연대회의 90.12 | | |
| | 화물운송노련 88. 9.12 | 부노협 89. 9 | | | |
| | 인노협 88. 6.18 | 의보총련 89. 5 | | | |
| | 언론노련 88.11.26 | 대구노련 89.11. 8 | | | |
| | 전북노련 88. 8 | 전교조 89. 5.28 | | | |
| | 부산노련 88. 8 | 전문노련 89.10.14 | | | |
| | 경기남부노련 88.12.28 | 건설노련 89.12.16 | | | |

출처: 민주노총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우 정치적 저항으로서 자살방식은 활복과 투신이 많았다.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분신은 희귀한 현상이었다.⁵¹⁾ 한국에서 분신은 은폐된 자살이 아닌 공개된 자살이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을 의식한 것이었다.⁵²⁾ 이처럼 분신은 자기피해를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을

50) 91년 5월 투쟁기간 동안 분신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전남대 박승희(4.29), 안동대 김영균(5.1), 경원대 천세용(5.3), 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5.8), 광주 윤용하(5.12), 이정순(5.10), 전남 김철수(5.18), 광주 정상순(5.22), 성균관대 김귀정(5.25), 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6.8), 공성교통 택시노동자 석광수(6.15) 등이었다

김정환,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한다-91년 5월투쟁 읽기』 (서울: 이후, 2001), p.47.

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4), p.105.

52) 오성환, “한국 분신의 상징적 의미,” 『비교민속학』, 12집, (1999), p.427.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형태였다. 한국사회에서 분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였다.⁵³⁾ 분신이라고 하는 정권에 대한 전투적 저항의 출현은 폭력과의 대적(對敵)적 저항을 통해서 요구를 표출하는 투쟁방식과 달리, 자기피해를 통해서 요구를 표출하고 시민사회 제집단의 행동화를 촉진하는 저항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이와 같이 민주화로 이행되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성을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는 저항운동 또한 더욱 조직화 되면서 정치폭력은 오히려 과거 정권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

이시기 노태우 정권하에서 과거의 이념적 저항 내 반체제운동과 구별되는 온건한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된다.⁵⁵⁾

1989년 7월 이념적 사회운동을 지향하고 실사구시를 표방한 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을 시작으로 폭넓은 정체성을 가지는 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부상한 시민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급이해가 아닌 공공선(common good)의 추구, 일상생활 이슈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 비합법적 방식 대신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활용한 운동, 민중운동의 급진적 이데올로기와는 구별되는 온건한 이념, 기층 민중에 기반한 운동, 중간층에 기반한 운동, 반체제운동이기보다는 개혁적 대안을 만드는 운동, 대중적 동원의 방식보다는 대중들의 윤리적·합리적 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과거의 ‘탈정치화된’ 시민운동과는 구별되는 강력한 ‘정치적’ 비판성을 발휘하였다. 즉 정부정책이나 제도정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가두에서 국가권력과의 ‘폭력적’ 충돌을 수반하는 저항운동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법률의 개폐, 권력의 부정부패 등을 체제내적인 방법으로, 나아가 제도적 수단을 적극 이용한 체제 내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민중운동과 달리 시민운동과의 대결과정에서는 정치폭력이 전면화 될 필요가 없게 된다.⁵⁶⁾

그러나 노태우 정권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온건한 중간층 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의 출현과 확장뿐만 아니라, 중간층운동 영역의 급진화가 출현하게 된다는 점에서

5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p130.

54) 조희연, 전개서, p.134.

55) 조희연, 전개서, pp.137-140.

56) 조희연, 전개서, p.137.

또 다른 정치폭력의 조건이 발견된다. 즉 온건한 중간층운동의 출현과 동시에, 급진화된 중간층운동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1987년 이전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가 중간층 영역으로 확장되어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⁵⁷⁾.

1987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87년 2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1987년 11월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88년 4월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1988년 11월에는 ‘학술단체협의회’, 1988년 12월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0년 1월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창립되었다.

중간층 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교사노조, 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이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의 결성에서부터 본격화된 교육민주화운동 및 교원노동운동은 40여명의 구속자와 1,000여명의 교사의 해직을 이겨내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중간층 운동의 향방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중간층 운동이 기존의 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정치폭력의 사용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온건한 시민운동의 경우와는 반대로, 1987년 6월 항쟁이 확장한 ‘불완전한 민주주의’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을 통하여 그것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중간층 운동의 진보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의 축소로 인한 정치폭력의 축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1987년 이후의 저항운동은 바로 사회적금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이러한 금지에 도전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여기서 다양한 정치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정치폭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민주화’에 의한 구 국가기구와 국가요원의 지속이라고 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중간층 운동의 진보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시기 정치폭력의 또 하나의 양상은 정치폭력의 대상에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비중이 강화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중심이 학생이나 지식인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노동자 등

57) 조희연, “국가민주화와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2002), pp.4-5.

피해가 증대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피해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생운동이 국가권력이 용인하지 않는 새로운 '금단'의 영역, 즉 통일운동의 영역을 새로운 저항 영역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제4절 김영삼 정권기 : 연례적 대립화

김영삼 정권은 민선정부로서 인권을 신장하고 정치폭력을 지향하기 위한 민주화 이행의 과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강제적 국가기구의 개혁과 악법의 폐지, 정치지향적인 사법기관의 개혁, 정보기관의 권한 및 기구의 축소, 언론개혁, 민주적인사의 등용 등이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안기부의 예산심의, 안기부의 수사권 가운데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죄·불고지죄, 기무사의 수사권 가운데 균형법에 있는 군사기밀 누설죄, 이적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었으며,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이 폐지되었다.⁵⁸⁾ 그러나 안기부나 기무사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누렸던 수사권한을 무기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지도부에 대해 비밀리에 수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야당인사의 감시와 학원의 사찰로 이어지면서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 정치적 의문사가 김영삼정권 시절에 특히 증가하고 의문사건에 수사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김영삼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학내 사찰이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은 김영삼정권의 권위주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밝혀진 것만 해도 10건에 이르는데 1999년 충북대학교 학내동향 경찰포착, 1994년 조선대학교에 대한 2년간 사찰, 1992년 부산대학교 유급프락치운용, 1992년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학생 도청, 1991년 대구교대 동사무소 직원이 정보수집활동, 1990년 경기대학교 범민족대회 중 군 보안대 방위병을 이용한 사찰 등 여전히 정치적 대항세력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⁵⁹⁾ 이러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선거과정에서 더욱 심해 관변단체를 동원한 시국광고, 우정연구소라는 우편검열기관을 수단으로 한 서신검열⁶⁰⁾ 등이 존재하였으며, 4.13총선 직후에는 학생운동권 5,0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사찰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도

5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8집, (1993), p.34.

59) 『한국대학신문』, 2002년 2월 8일자.

60) 손중양, “안기부의 우편검열의 본산, 우정연구소,” 『말』, 제71호, (1992. 5), pp.150-153.

했다.⁶¹⁾

국가기관의 불법적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될 수 있다. 1992년 법무부가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폭행·감금·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람은 2백58명에 이었다.⁶²⁾

김영삼 정권하에서 저항운동의 시발은 1995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투쟁’이었다. 광주학살 주요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시점을 앞두고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12.12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광주항쟁을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재평가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진상 자체의 규명 및 주모자에 대한 처벌은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세력과의 재집권연합의 한계 때문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전·노 구속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요구가 고양되고 전면화 되었다. 이 투쟁에서 민교협 등 교수운동의 여론 확산에서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전국적인 교수의 서명 및 시위 등 일련의 활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여론을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⁶³⁾ 사실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의 집권으로 1979년과 1980년에 걸친 신군부의 쿠데타와 광주유혈참사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다. 우선 12.12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5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총 10건의 고소·고발장과 8건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었다.⁶⁴⁾ 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공소권없음 이었다.⁶⁵⁾ 한편, 1994년 들어 5.18에 대한 고소·고발도 줄을 이었는데, 광주학살 관련 혐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최초의 시도는 1988년 10월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의 전두환·노태우 등 군 고위지휘관 9명에 대해 광주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이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61) 『문화일보』, 2002년 7월 4일자.

62) 법무부, “1992년도 국회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2” (1992), p.365.

63) 강남훈, “지식인운동-교수들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서울: 당대, 1997), pp.256-259.

64) 『동아연감 1995』, p.554.

65) 2.12 사건은 소장 군부세력의 ...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 병력을 불법동원해 군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킨 명백한 군사반란사건”이나, 전.노 전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 34명에 대해 14년간의 통치기간중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과 법정에서 세워 단죄할 경우 우려되는 국가적 혼란을 고려하여 기소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일보』, 1994년 10월 30일자.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다. 1994년 5월부터 1995년 4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총 70건에 달하였다.⁶⁶⁾ 1995년 7월 19일, 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검찰은 내란혐의로 고소·고발된 전·노 등 58명 전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의하면, 1980년 당시 신군부의 내란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나, 5.18은 신군부의 정치적 변혁과정의 일부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⁷⁾

그러나 1995년 10월 19일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계좌 폭로 사건은 12.12, 5.17,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문제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태도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 수사에서 금융기관에 숨겨져 있던 노태우의 비자금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당사자인 노태우는 물론 김대중과 김영삼 등이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10월 27일, 노태우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재임 중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현재 1,700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씨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직전, 김대중은 "14대 대선 기간 중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했음을 밝히면서, 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받았음을 암시하였다.⁶⁸⁾

비자금 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킴은 물론, 그 동안 잠시 정치적 이슈에서 비껴나 있던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를 정치적 현안으로 끌어 올리는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3김정치 청산'을 외치던 개혁신당은 김대중을 향하여 "광주학살의 원흉으로부터 2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과연 광주 영령들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⁶⁹⁾ 이를 시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한국부인회 등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공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11일 297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다.⁷⁰⁾ 야당이 적극적으로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사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

66) 『동아연감 1996』, p.614.

67) 『조선일보』, 1995년 7월 20일자.

68) 『중앙일보』, 1995년 10월 28일자.

69) 『조선일보』, 1995년 10월 28일자.

고, 김영삼 대통령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 정립을 통해 기존의 입장 변화로도 모하였다. 그 결과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 정권은 '5.18특별법' 제정을 전격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회는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 때 불가능해 보였던 12.12와 5.18 관련 혐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⁷¹⁾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는 구속되었고, 1995년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치폭력에 대하여 저항함으로써 피해를 강요당하는 조건에서, 과거 정치폭력의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아래로부터의 힘에 강제하였던 이 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사건이었다.

표 4-14)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

| 연도 | 구분 | 구속인원 | 기소 | 불기소 | 수사중 |
|-------------|----|------|-----|-----|-----|
| 1996 | | 465 | 438 | 27 | |
| 1997 | | 191 | 191 | | |
| 1998 | | 127 | 121 | 6 | |
| 1999 | | 162 | 149 | 13 | |
| 2000 | | 101 | 95 | 6 | |
| 2001(1월~8월) | | 13 | 4 | | 9 |
| 계 | | 594 | 560 | 25 | 9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를 정치폭력과 저항, 피해의 상호관계 속에서 분석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군부권위주의정권이 퇴진하고 민주주의 이행기로 이전하고 민간정부가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치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 이후 1990년 까지 시국 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 7백 48명이다. 그러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990년 집계한 양심수 숫자는 4천 1백 7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평균 구속자 수도 전두환 정권 때 평균 구속자 1,61명의 4배에 가까운 하루 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속자 분포도 주로 대학생과 노동

70) 『조선일보』, 1995년 11월 13일자.

71) 대통령비서실, 『김영삼대통령 연설문집3』 (서울: 공보처 1996), pp. 547-548.

자가 전제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1989년 공안정국 하의 한해 구속자 수가 전체구속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⁷²⁾

1988년 말부터 1989년 6월 까지 구속된 시국관련 구속자 6백 45명중 구속노동자 수는 2백 66명에 달하였으며, 1990년 5월 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3백 61명으로 3백 25명이 노동단체의 활동가들이었다.⁷³⁾ 경찰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 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6월 까지 처리한 구속영장 사건 8천 8백여건 중에서 검사가 기각한 사건은 15% 1천 3백 20건에 달하였다.⁷⁴⁾ 민가협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1996년 7월까지의 양심수는 1천 9백 45명에 이르고 있으며,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매일 2명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⁷⁵⁾

이렇듯 민주화이행이후에도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하여 구 국가기구의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폭력성의 민주적 통제기제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저항운동의 강화로 인한 기존 질서의 위기 국면에서 관성적으로 과거의 국가폭력성이 다시 전면화되고 재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차원에서 이전보다는 폭넓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저항운동이 이러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게 되었고—예컨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 학생운동의 통일투쟁 등—이것이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정치폭력의 동원을 통한 통제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7년 이전의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는 주로 학생들이나 지식인이 피해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 1987년 이후에는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과 교사 등의 중간층 집단이 새로운 피해의 ‘사회적 지대’가 되어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과거의 개발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은 정권, 정부, 정책적 수준에서—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국가폭력성이 주기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2) 이한열추모사업회 편, 『진단 제6공화국』 (서울; 두리, 1991) pp.197-198.

73) 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 『1990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울, 1990), p.21.

7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전계서, 2002, p.167.

75)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참조.

제5장 정치폭력의 유형

제1절 개괄적 유형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사회적 차원의 폭력과 개인적 차원의 폭력이 있으며 신체적 위해와 정신적 차원의 폭력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을 형태적 유형과 영역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폭력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접근방식은 가해적 측면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피해를 중심으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폭력의 상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형태중심의 유형분석은 주로 사망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5-1참조) 이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피해의 영역에서 정치적 사망의 형태가 다른 피해의 양태를 대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5-1) 정치적 사망의 신분별 분류 (2005년 현재)

| | | 노동자 | 학 생 | 농 민 | 빈 민 | 시 민 | 재 아 | 진보정치 | 군 경 | 합계 |
|-----------------------|------------|-----|-----|-----|-----|-----|-----|---|-----|----|
| 박 정 희 정 권 | 1960 년대 | | | | | | |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종 박재복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목 손순남 윤성만 이양섭 최종천 최한무 하상혁 황대현 | | 18 |
| | 1970 | 전태일 | | | | | | 권오금 | | 2 |
| | 1971 | 김진수 | | | | | | 김대석 | | 2 |
| | 1972 | | | | | | | 고봉울 이연승 한태갑 한현수 | | 4 |
| | 1973 | | | | | | 최종길 |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 | 5 |
| | 1974 | | | | | | | 김태원 박윤엽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명원 | | 6 |
| | 1975 | | 김상진 | | | | 장준하 |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우홍선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하야청 | | 14 |
| | 1976 | | | | | | |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 | 4 |
| | 1977 | | | | | | | 김경익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 | 4 |
| | 1978 | | 정법영 | | | | | 박정래 이훈등 탁해섭 | | 4 |
| | 1979 | 김경숙 | | | | | |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 | 4 |
| | 소 계 | 3 | 2 | | | | 2 | 60 | | 67 |

| | | | | | | | | | |
|-----------------------|------|---|--------------------------------------|-----|-----|-----|------------------------|---|----|
| 전 두 환 정 권 | 1980 | 김종태 | 김의기 | | | 임기운 | 김규창 김승운 김용선 변형만 노천도 | | 8 |
| | 1981 | | 김태훈 최중철 | | | | 이재문 최점수 | | 4 |
| | 1982 | | | | 문영수 | | 신항식 | 정성희 | 3 |
| | 1983 | | 황정하 | | | | 신창길 | 이운성 김두황 한영현 최운순 한희철 | 7 |
| | 1984 | 박종만 | | | | | | 허원근 | 2 |
| | 1985 | 홍기일 | 기 혁 우종원 송광영 | | | | 이용문 황필구 | | 6 |
| | 1986 |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해정 이경환 김성수 진성일 | 오한섭 | 김상원 | 강상철 | 전재권 강동창 | | 15 |
| | 1987 | 이순덕 황보영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응수 | 박중철 표정두 박선영 이재용 이한열 박태영 | | 이태춘 | 채광석 |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 32 |
| 소 계 | 17 | 20 | 1 | 3 | 3 | 17 | 16 | 77 | |

| | | 노동자 | 학 생 | 농 민 | 빈 민 | 시 민 | 재 야 | 진보정치 | 군 경 | 합계 |
|-----------------------|------|--|---|-----|---------|------------|----------------|--------------------|-------------|-----|
| 노 태 우 정 권 | 1988 |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운범 정용훈 문용섭 문승연 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순 | 유병진 곽현정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 김길호 | | | 고정희 정성규 신영일 | 유진근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 박종근 우인수 양영진 | 28 |
| | 1989 |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중하 이재호 |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 | 정상율 이재식 | 김병구 | 함석현 | 이상율 조용순 | | 21 |
| | 1990 |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오원석 | 김용갑 신장호 정성목 김수경 심광보 김기훈 최응현 | | 이원기 | | 조영래 김병근 | 정대철 김병인 | 박성은 | 21 |
| | 1991 | 김봉환 신용길 박장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치철 권미경 |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 | | 이정순 정상순 | 김기실 김영환 양용찬 |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 송중호 남현진 손석용 | 29 |
| | 1992 | 임희진 박복실 최성근 이광응 윤재영 | 이상렬 박현민 | | 김선호 | | 최성묵 오원진 | 박관수 김대봉 이태영 | | 13 |
| | 합 계 | 46 | 26 | 1 | 4 | 3 | 11 | 14 | 7 | 112 |

| | | 노동자 | 학 생 | 농 민 | 빈 민 | 시 민 | 재 야 | 진보정치 | 군 경 | 합계 |
|-----------|---------|--|-------------------------------|------------|---------|-----|--------------------|-------------|-----|----|
| 김영삼 정권 | 1993 |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 이경동 한상용 | 김영자 | | | 황인철 성순희 | 이래선 현승중 권두영 | | 19 |
| | 1994 | 김성운 김상옥 최성목 김낙성 임중호 | 이창환 신건수 | 김순복 손구용 | | | 김남주 문익환 이오수 이범영 | 김광삼 | | 14 |
| | 1995 | 양봉수 박삼훈 서진근 조수원 | 장현구 | | 최정환 이덕인 | | 박현채 | 정중서 강철순 | 오원택 | 11 |
| | 1996 |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박문곤 | 노수석 진철원 권희정 황해인 오영권 박동학 | | 신연숙 | | 김말룡 | 김도한 문한영 | | 15 |
| | 1997 | 홍장길 |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이형관 | 최중진 | 민병일 박순덕 | | | 권양섭 진태운 | | 10 |
| | 소 계 | 26 | 15 | 4 | 5 | | 8 | 10 | 1 | 69 |
| 1998 | 최대림 최명아 | | | | | | | | 2 | |
| 년도 미상 | | | | | | |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 | 4 | |
| 합 계 | 94 | 63 | 6 | 9 | 6 | 24 | 105 | 24 | 331 | |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 살리라 2』, (200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를 참조해 재구성.

정치적사망은 분신이나 자살, 타살, 사고사, 의문사, 행방불명 등 다양한 형태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피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저항과정에서 각종 신체적 피해를 받아서 상이나 질병을 얻는 경우들이며, 사법적 처벌을 받아서 일정기간 신체가 구금되는 투옥, 수배, 각종 학사징계, 해직 등 각종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강요당하는 경우들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는 1969년 8월 7일 (3선 개헌안 발의일)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피해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현재(2005년 8월)까지의 현황을 통해 권위주의정권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의 규모를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에 접수된 민주화운동 관련 현황은 보면 제1차 및 제2차 신청접수 건은 총 10,807건(보상 1,295건, 명예회복 9,512건)이었으며, 2004년 법 개정 후 추가 접수된 제3차(2004. 7. 1~8. 31.) 및 제4차(2004. 10. 1~12. 31.) 신청접수 건은 1,183건(보상 244건, 명예회복 939건)으로 2005. 6. 현재 총 11,990건이 위원회에 신청접수

되었다.

표5-2)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접수 및 심의 현황 (2005. 8. 현재)

| | 계 | 보상 | | | 명예회복 | | | |
|-----------|--------|-------|-----|-------|--------|-------|-------|------|
| | | 소계 | 사망 | 상이 | 소계 | 유죄판결 | 해직 | 학사징계 |
| 신청건수 | 11,990 | 1,539 | 314 | 1,225 | 10,451 | 6,437 | 3,510 | 504 |
| 심의건수(75%) | 8,9964 | 1,092 | 204 | 888 | 7,872 | 4,735 | 2,759 | 378 |
| 인용(80%) | 7,098 | 532 | 88 | 444 | 6,566 | 4,287 | 2,041 | 238 |
| 기각(20%) | 1,866 | 560 | 116 | 444 | 1,306 | 448 | 718 | 140 |
| 잔여건수 | 3,026 | 447 | 110 | 337 | 2,579 | 1,702 | 751 | 126 |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표5-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년 이후¹⁾에만 11,990명의 다종다양한 피해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의 유형은 사망이나 행방불명과 각종 상이를 당한 경우와, 유죄판결이나 해직, 학사징계 등을 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사망의 경우가 314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이를 당한 경우가 1,225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직, 투옥, 각종 학사징계 등 각종 유무형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10,451명(88%)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표 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를 지역별로 보게 되면, 51%인(6,227건)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 중에서는 호남이 20%(2,377건), 부산경남이 12%(1,529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망사건이나 상이사건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4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한 사람들을 직업별·사건발생년도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피해중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원과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표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례

1)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69년 8월 7일 3선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점 이후의 민주화운동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계들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 및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투쟁, 각종 학생시위사건,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 1967년 7월 11일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1967년 6·8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1969년 이전에 진행된 다양한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를 신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인한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실재는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²⁾

표5-3) 196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유형

| 시 도 | 총 계 | 보상 | | | | 명예회복 | | | | |
|-----|--------|-------|-----|-------|------|--------|-------|-------|------|----|
| | | 소계 | 사망 | 상이 | 행방불명 | 소계 | 유죄판결 | 해직 | 학사징계 | 기타 |
| 계 | 11,990 | 1,539 | 301 | 1,225 | 13 | 10,451 | 6,437 | 3,510 | 499 | 5 |
| 서울 | 3,493 | 453 | 88 | 344 | 3 | 3,058 | 1,963 | 934 | 161 | - |
| 부산 | 732 | 87 | 15 | 72 | - | 645 | 328 | 295 | 20 | 2 |
| 대구 | 443 | 72 | 19 | 51 | 2 | 371 | 194 | 149 | 28 | - |
| 인천 | 595 | 55 | 11 | 44 | - | 540 | 389 | 140 | 11 | - |
| 광주 | 1,059 | 227 | 17 | 207 | 3 | 832 | 510 | 253 | 69 | - |
| 대전 | 253 | 30 | 8 | 22 | - | 223 | 134 | 82 | 7 | - |
| 울산 | 214 | 22 | 5 | 17 | - | 192 | 131 | 55 | 6 | - |
| 경기 | 2,139 | 200 | 51 | 147 | 2 | 1,939 | 1,079 | 780 | 80 | - |
| 강원 | 305 | 37 | 7 | 30 | - | 268 | 177 | 87 | 4 | - |
| 충북 | 262 | 22 | 5 | 17 | - | 240 | 157 | 76 | 7 | - |
| 충남 | 226 | 21 | 8 | 13 | - | 205 | 104 | 85 | 15 | 1 |
| 전북 | 652 | 88 | 11 | 75 | 2 | 564 | 388 | 136 | 40 | - |
| 전남 | 552 | 105 | 25 | 80 | - | 447 | 252 | 180 | 15 | - |
| 경북 | 368 | 53 | 7 | 46 | - | 315 | 224 | 87 | 4 | - |
| 경남 | 583 | 71 | 21 | 49 | 1 | 512 | 360 | 123 | 29 | - |
| 제주 | 114 | 14 | 3 | 11 | - | 100 | 47 | 48 | 3 | 2 |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2005. 8월 현재)

2) 실제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용율은 80%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관의 사정을 감안한다 한다면 위수치가 일부에 해당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간접적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신청현황을 그 분석에 대상으로 삼았다.

표5-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자의 직업별 구성

| 구분 | 계 | 학생 | 교원 | 언론 | 노동 | 기타 |
|--------|--------|-------|-------|-----|-------|-------|
| 1차신청자 | 8,440 | 2,545 | 1,893 | 600 | 1,500 | 1,902 |
| 2차 신청자 | 2,367 | 1,215 | 105 | 198 | 295 | 554 |
| 합계 | 10,807 | 3,760 | 1,998 | 798 | 1,795 | 2,456 |
| 비율(%) | 100 | 34.8 | 18.5 | 7.4 | 16.6 | 22.7 |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2 현재)

그런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죽음의 원인이 독재적 상황에 의한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 피해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간접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치적 사망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직접살인이란 국가가 정치폭력에 대한 능동적 행위주체이자 직접적인 가해자인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적살해, 법을 통한 살인, 고문치사 또는 폭행치사, 정치적 의문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간접살인이란 국가가 정치폭력의 간접적 가해자로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살인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조, 묵인하는 경우를 뜻한다.³⁾ 대표적인 예로는 분신, 투신자살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폭력은 민주화의 역사와 어느 정도 경향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독재의 시기에 정치폭력이 극대화되고 국가에 의한 직접살인의 유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반면, 민주화이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1987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그 경향성이 약화되고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1987년 이후 정치폭력과 정치적 피해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정치폭력은 상존하고 있고, 정치폭력 발생의 조건 역시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는 이미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서울: 책세상, 2002), p. 45.

제2절. 형태적 유형

1. 정치적 살인 및 테러

일제 식민지시대 이후 미소에 의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는 한국사회에 침예한 반공과 냉전의 논리를 내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판 매카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항운동은 이른바 공산주의 운동으로 간주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역대 정치권력은 분단과 반공을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저항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했다.⁴⁾

이승만 독재아래에서 그리고 군사정권들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한 이들은 협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였다. 이 두 법의 위력이 어떠한지는 몇 가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같은 해 11월 25일 현재까지 867명이 사형선고 받았으며 1961년에서 1980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1,968명이었고 반공법 위반혐의자는 4,167명이었다.⁵⁾ 또한, 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593명이었고, 사형선고 받은 수는 53명 이었다. 1964-1987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138명으로 나타났다.⁶⁾

이러한 정치적 살인 및 테러는 이승만정권에서 박정희정권 까지의 야당인사나 재야인사들의 피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민주화 운동 초기에 시민사회의 미발달로 인하여 정치사회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었다. 여당, 야당, 재야세력이 주요한 구성원이었던 정치사회의 역동성은 학생, 노동, 종교, 재야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수준에 따라 달라져왔다.

정당은 정치사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시민사회를 연계시키는 중요한 정치단위이다. 정치가 국민의 이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때, 국민의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에 대변 할 수 있는 조직체인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형식적이었거

4) 조현연, 전계서, p.83.

5)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역사비평사, 2000), p.30.

6) 『동아춘추』, 1963. 1월호.

나, 제한적이었다. 권위주의 정치에 의해 유린된 정당정치는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투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⁷⁾

정치과정에서 정당은 대체로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거나,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정당은 여당이거나 야당 모두 주변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야당정치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정도가 민감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린즈에 의하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치적 반대도 정권이 관용하는 수준의 반대와 정권에 의해 억압되는 반대가 존재한다. 전자를 체제 내의 반대(opposition outside system)라고 한다.⁸⁾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정권하의 야당은 권위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체제 내 권력이익을 독점적으로 수혜 하는 혜택을 누리는 권위주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며, 반면에 운동정치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상징성을 가진 민주화세력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독재정치의 수혜자로서, 혹은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야당의 양면성은 제도정치와 저항운동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달리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하 야당정치의 양면성은 야당정치인의 민주화투쟁 목표와 내용이 다른 민주화세력의 요구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야당정치인들의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 권력 장악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하의 야당과 저항운동의 결합은 최소주의적 민주화 내용을 기반으로 가능하였다. 야당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이해관계와 독재정치와 민주정치 사이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강경한 저항이나 온건한 타협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체제라 하더라도 야당은 제도정치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억압과 피해는 다른 부문에 비해 강하거나 크지 않았다. 그러나 독재의 강화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은 정치인이며, 그중에 야당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7) 김용복, “한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정치: 민주적 실천·역사적 피해·정치적 보상,” 조희연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피해』 (서울: 함께읽는책, 2002), pp.345-346.

8) J. Linz, “*opposition to an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s*” R. Dahl ed. *Regimes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3).pp.1-18.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일반적 탄압인 경우에는 저항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저항의 의지나 행동이 국가 권력에 의해 선별적인 탄압을 받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전자는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인하여 야당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당정치인도 포함하는 정치인 전반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야당정치인들이 받은 피해는 여러 가지이다. 정치활동의 중단, 고문과 구속 등 육체적 고통, 감시, 협박 등 정신적 피해,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손실 등이 그것이다.⁹⁾

정치권에 있어 피해의 유형은 정치적 테러, 정치활동의 규제, 조작사건 및 고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테러의 경우는 이승만정권기에 주로 야당세력을 탄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1956년의 장면 저격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56년 5.15 선거에서 부통령에 이기붕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이 권위 시에 우선 그 권한을 승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통령 자리를 야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자유당 세력에게는 실제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4.19혁명 이후에 밝혀진바 이기붕이 직접 지시하였다고 한다.¹⁰⁾ 한편, 선거 기간 중 야당에 대한 정치적 테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는데, 1954년 5.20 총선은 어쩌나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였는지 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곤봉정치’로 불리기도 하였다.¹¹⁾ 1956년 총선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범석조차 선거막바지에 테러를 당하였고 투표소의 야당 참관인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테러는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야당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57년 진보당 전남도당 추진위 임춘호에 대한 테러로 그와 임신 중이던 그의 부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후 도주하였고, 진보당 사무국장 조중한의 집에도 괴한이 침입하여 그와 4명의 자녀에게도 칼질을 하고 달아났다.¹²⁾ 이는 사적 폭력집단이 공권력과 결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사적폭력이라 할 수 있다.

9) 김용복, 전계서, pp.347-358.

10)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서울: 지와사랑, 2001), pp.148-153.

1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서울: 역사비평사, 1999), pp.76-77.

12) 『조선일보』, 1957년 7월 19일자.

공권력과 결합한 사적폭력은 주로 정치깡패로 지칭 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정재·유지광등이 연상되지만 정권의 비호를 받은 정치깡패는 서울과 지방의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독점적 이익을 보호받으면서 야당이나 학생 등의 저항을 분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³⁾

다음으로 정치활동의 피규제를 들 수 있는데 정당인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피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활동의 피규제는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탄압의 기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이후 대대적인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쿠데타 직후 정당인 6백 6명, 사회단체 관련자 2백56명, 학생 70명, 교사 5백 46명, 등 2천 14명을 체포하였으며¹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정치인 중 부정권패한 인사들의 정계진출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중견지도자급 정치인등을 포함한 3,000여 명이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활동 규제를 받게 되었다. ¹⁵⁾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 또한 1980년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계엄사령부는 김종필, 김대중 등을 포함한 26명을 연행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 하였다. 신군부는 “정치풍토쇄신”이란 명분하에 10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정치인 567명에 대해 1988년 6월 30일까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표5-5 참조)

정치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 외에도 야당정치인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저항 때문에 독재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제도정치권 내의 야당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의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별적, 집단적인 의원직 사직을 통한 항의 방법이었다.

1975년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하다가, 결국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 1986년 유성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국시문제를 제기하다가 구속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1973년 일본에서 정권비판을 행하던 김대중씨를 정보기관이 납치하여 살해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납치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어진 김대중의 가택연금 조치나

1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83.

14) 조국, “한국근현대사에서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여름호, (1988). pp.334-335.

15) 김용복, 전계서, p.368.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김영삼씨 가택연금조치, 김대중씨 해외추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5) 정치활동 피규제 상황

| 규제 계기 | 규제 기간 | 규제 내용 및 해제 | 총 규제수 |
|----------|-------------------------|--|----------|
| 5.16 쿠데타 | 1961.5.16 ~1963.1.1 |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한 적격,부적격 판정 단계적 해제(1962.12월 말부터 1968.8.15까지) | 3,000여 명 |
| 10월 유신 | 1972.10.17 ~12.27 | 정당활동중지,국회해산,일괄해제 | 전국회의원 |
| 5.17쿠데타 | 1980.5.17 ~1981.1.24 | 비상계엄확대,정치풍토쇄신명분으로규제 단계적 해제(1983.2.25부터 1985.3.6까지) | 567명 |

출처: 김용복, “한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정치:민주적 실천 · 역사적피해 · 정치적보상,”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피해』 (서울: 함께읽는 책, 2002), p.370.

마지막으로 정치공작을 들 수 있다.

반정권성향의 야당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작된 사건에 얽혀 매거나.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도덕성을 훼손시켜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이다. 주로 정보기관에 의해 진행되는데, 야당정치인을 사기범, 간통범 등의 혐의로 정치활동을 제약한 경우이다.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은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언들을 통해 볼 때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¹⁶⁾

대표적인 정치공작사건이 1980년 5월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1980년 신군부세력은 장국장악을 위해 김대중씨와 재야인사 등 26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당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사형, 예춘호, 김상현, 한화갑, 기옥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문익환목사 등 재야인사, 이해찬, 설훈등 학생운동권도 함께 기소되어 옥고를 치렀다.

폭압적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인들은 정치규제, 고문, 투옥 등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 정치적 탄압과 피해는 정치적 타협 속에서 해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피해는 정치인으로 귀중한 자산이 되어왔다.

16) 김형욱, 『김형욱 회고록1,2,3』 (서울: 아침 1985). 참조.

이러한 야당정치의 이중성은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야당정치인들은 무원칙한 타협과 연합이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사법적 살인

사법적 살인은 주로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의 기제로 작용하면서 피해의 한 유형으로 구분 되어질 수 있다. 특히 사법적 살인은 공안기구의 조직적 개입을 통한 용공 및 반국가단체 만들기를 통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적 살인의 사례들은 사건마다 배경 성격 혐의점 활동내용이 다르지만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 복과 관련되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 지식인, 통일운동 활동가들로 공안기구에 의한 조작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진보당과 중앙사회당은 합법정당이었으며 민족일보사도 합법적 제도언론사였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 혁명공약시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와 위수령, 국가보위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유신시대에는 종교집회 설교집 까지도 긴급조치위반혐의의 대상이었다. 비공개된 정당, 정치결성체의 등장은 이 같은 공안조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안조건이 아니고, 사상, 양심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는 조건이었다면 비공개될 이유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이 사건들 일반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나 활동은 더욱 유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선진 민주사회의 진보세력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란 예측도 하게 된다. 정치적 사건에서의 사법처형은 정치적 후진성과 사법체계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인식은 민주화과정에서 저항운동의 피해가 크고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보수정치세력들이 제도 자체를 정치라고 생각하여 사회내 모순과 갈등, 사회 세력들 간의 대결을 그 하위에 두는 것과 달리, 진보정치 세력들은 제도가 각 계급, 계층의 사회정치적 모순과 갈등 그리고 투쟁이 산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¹⁷⁾

저항운동의 범주는 단지 제도 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만을 포함하는 것

17) 이광일, “보수정치와 급진정치의 경계,” 민주노동당, 『이론과 실천』 창간호, (2001).

은 아니며 ‘운동의 정치’라는 의미에서 반합법, 제도 밖의 비합법 정치운동 모두를 포함한다.¹⁸⁾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권력은 이들을 시민사회로부터 배제, 혹은 주변화 시키고 이들의 정치 활동을 금압하여 기존의 체제와 독점적 사회정치구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규율 및 탄압대상은 무엇보다 기존의 체제운영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며 재구성하고자 하는 저항운동내부의 ‘급진(radical)정치세력’이었다.

둘째, 계층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체제내화 시키기 위해 이른바 저항운동에 대한 억압을 일상화 한다. 모든 정보를 독점, 재구성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특정한 사회정치세력에게 가하는 용공, 친공 등의 이념 공세를 동반한 ‘빨갱이’로의 낙인, 탄압, 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선전은 각종 이데올로기 기제들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반공이라는 규율 메커니즘을 불러냄으로서 정치적으로 대중통제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다. 체제의 주요 탄압대상으로 설정 될 수밖에 없는 저항세력은 상대적 의미에서 ‘진보’로 분류된 세력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반정권사범’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공안관련사범 혹은 시국사범으로 분류되는 범주로 현실을 비판하거나 반정권적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 야당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탄압대상의 포괄성은 급진정치 세력 및 그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과 와해에 있다기보다, 특정한 정치상황의 돌파를 위해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반공 메커니즘을 환기시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하는 기제 또한 다양하였다.

첫째, 권위주의 정권은 주로 비(반)합법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저항운동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한다. 일단 이 사건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된다.

둘째, 국가 권력은 저항운동을 외부의 적, 북한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데, 특히 보통교육으로서의 초·중등 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였다. 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기구들 또한

18)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피해』 (서울: 함께읽는 책, 2002) p.300.

준 국가기구로서 국가기구들과 짝을 이루어 반공홍보 및 대중동원기제로 기능하였다..

셋째,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과 통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기제들에 의해 수행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미시적인 사적 관계 및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국가의 통제 및 탄압은 관련 대상자들의 인신구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장 기초적 재생산 단위인 가족, 나아가 인척관계로까지 확장되었다. 그 대표적 기제가 연좌제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회모순의 해소를 목표로 한 저항운동이 공적활동과 가족 등 사적관계 사이에 계속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서 그 활동의 위축 및 고립을 조장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¹⁹⁾

이승만 정권기의 대표적 저항운동의 탄압은 진보당 사건이다. 진보당 사건은 1952년 부산정치과동과 1956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 정치를 강화 시키던 이승만 정권이 대중의 지지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조봉함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평화 통일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조봉암 이외의 주요 진보당 간부들 또한 모두 무죄로 석방된 사실은 그 정치적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재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²⁰⁾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내세우며 저항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 검거하여 쿠데타 발발 1주일 만에 2,014명의 정치인들을 검거하였고 1961년말 까지 3,500여 명이 구속하였다.²¹⁾ 특히 ‘민족일보’사건은 전쟁이후 진보적 언론에 대한 가장 큰 탄압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사장 조용수에게는 형이 집행 되었다.²²⁾ 이 시기 진보정치 세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이하 인혁당)이었다. 1964년8월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일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 57명으로 조직된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 그 중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고 발표했다.²³⁾

그러나 이사건은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중앙정보부가 받은 자백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영장발부를 거부하고, 그중 일부가 사퇴하였다.²⁴⁾

19) 이광일, 전게서 ,pp,310-311.

20) 『동아일보』 1999년 8월 16일자.

2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1992), p.318.

22)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재판사』, 제2권, (1962). pp.207-208.

23) 편집부여음, 『공안사건기록-1964-86』 (서울: 세계, 1986),pp.13-16.

표 5-6) 진보당 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 관련자 | 직업 | 1심 형량 | 확정 형량 |
|-----|---------|-------|-------|
| 조봉암 | 무직 | 징역 5년 | 사형 |
| 박기출 | 의사 | 무죄 | 무죄 |
| 김달호 | 변호사 | 무죄 | 무죄 |
| 윤길중 | 변호사 | 무죄 | 무죄 |
| 조규택 | 무직 | 무죄 | 무죄 |
| 조규희 | 무직 | 무죄 | 무죄 |
| 신창균 | 무직 | 무죄 | 무죄 |
| 김기철 | 무직 | 무죄 | 무죄 |
| 김병휘 | 무직 | 무죄 | 무죄 |
| 이동화 | 성균관대 교수 | 무죄 | 무죄 |
| 정태영 | 동양통신사기자 | 무죄 | 무죄 |
| 이명하 | 무직 | 무죄 | 무죄 |
| 최희규 | 무직 | 무죄 | 무죄 |
| 안경득 | 약종상 | 무죄 | 무죄 |
| 박준길 | 무직 | 무죄 | 무죄 |
| 권대복 | 무직 | 무죄 | 무죄 |
| 전세룡 | 무직 | 징역10월 | 징역2년 |

출처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서울: 역사비평사, 2000)를 참조해 재구성.

결국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숙직관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사건을 기소하였지만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²⁵⁾(표5-7참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이 그들의 객관적 활동 및 사실여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효과의 제고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박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운동에 대해 이른바 북한의 조종을 받는 지하조직이 개입하였다는 낙인을 찍음으로서 저항운동의 동력을 약화, 순치시키려 한 것이었다.²⁶⁾ 이와 같은 간첩단 사건의 관계자는 대부분 얼마 안가 석방되었고, 현재 사면·복권되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24) 이상우. “민족일보, 인혁당사건의 전말,” 『신동아』 6월호, pp.335-336.

25) 박태순, 김동춘 “제조명 60년대 사회운동 8-인혁당 사건과 60년대 정치사,” 『월간 중앙』 9월호, (1990), pp.550-551.

26) 인혁당사건의 조작설에 대하여서는 김형욱, 전계서, pp.135-136.

표 5-7) 제 1차 인민혁명당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 관련자 | 직업 | 1심형량 | 확정 형량 |
|-----|------------|-------|-------------|
| 도예중 | 무직 | 징역 3년 | 징역 3년 |
| 양춘우 | 무직 | 징역 2년 | 징역 1년 |
| 김한덕 | 목재상 | 무죄 | 징역 1년 |
| 김영광 | 회사원 | 무죄 | 징역 1년 |
| 박현채 | 서울상대 강사 | 무죄 | 징역 1년 |
| 정도영 | 합동통신 조사부장 | 무죄 | 징역 1년 |
| 박중기 | 한국여론사 취재부장 | 무죄 | 징역 1년 |
| 김용수 | 운수업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 임창순 | 해동고전 연구부장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 이재문 | 대구매일신문기자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 김경희 | 민중서관 사원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 전무배 | 서울신문 기자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 김중태 | 서울문리대 4년 | 무죄 | 징역 1년(집유3년) |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1)』 1987, p.451

박정희정권기에 발표된 간첩단 사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는 시점에 당국의 간첩단사건 발표가 많아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다. 박정희정권기 간첩단사건의 발표 횟수를 보면 1969년-15건, 1971년-11건, 1974년-10건으로 특정시기 두드러지게 많다.²⁷⁾ 이들 연도는 모두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던 해였다. 1969년은 3선개헌 반대운동이 한창인 때였고, 1971년은 대통령선거와 학생들의 교련반대운동이 있었으며, 1974년은 민청학련사건 등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고조되는 시점이었다. 유신체제기 안보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는 더욱 극단화되어 간다.

유신체제기 대표적인 탄압사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학생운동을 연결고리 삼아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혁신계 청년운동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그 배후로 지목 당시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북한의 책동에 의한 것처럼 발표하였던 사건이었다.²⁸⁾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964년 1차 인혁당사건과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은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은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²⁹⁾ 시노트 신부는 그의 수기에서 이 사건이 발표되기

27)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 (1994), pp.8-15.

28) 이철,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 『역사비평』 가을호(1991), pp.260-261.

전 CIA서울책임자 그레그(D.Grag)는 박정희정권의 2인자로부터 ‘용공조작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⁰⁾ 결국 이들의 죄목은 정보부 요원들이 피고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한 진술서가 전부였다. 이것은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되었다는 폭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³¹⁾

표 5-8) 제2차 인혁혁명당사건 관련자 재판현황

| 관련자 | 확정 형량 | 관련자 | 확정형량 |
|-----|-------|-----|--------------|
| 도예중 | 사형 | 이태환 | 무기 |
| 서도원 | 사형 | 전창일 | 무기 |
| 하재완 | 사형 | 이성재 | 무기 |
| 송상진 | 사형 | 김중대 | 징역20년(자정15년) |
| 이수병 | 사형 | 이창복 | 징역20년(자정15년) |
| 우홍선 | 사형 | 조만호 | 징역20년(자정15년) |
| 김용원 | 사형 | 이재형 | 징역20년(자정15년) |
| 여정남 | 사형 | 정만진 | 징역20년(자정15년) |
| 김한덕 | 무기 | 전재권 | 징역15년(자정15년) |
| 유진곤 | 무기 | 임구호 | 징역15년(자정15년) |
| 나경일 | 무기 | 황현승 | 징역15년(자정15년) |
| 강창덕 | 무기 | | |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1』 1987, pp.351-367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관련자들이 사형된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는데, 이것은 공개적 독재체제로서의 유신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

인혁당사건이 이렇게 조작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반공법의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점, 우선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1차 인혁당사건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중앙정보부의 강한 집착 등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³²⁾(표5-8 참조)

29) 첫째, 두 사건은 6.3 항쟁, 민청학련의 활동 등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격렬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둘째, 두 사건 모두 인혁당이 학생 시위를 공산 혁명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동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셋째, 두 번 모두 박 정권을 전복하고 노동자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넷째, 중앙정보부의 동일한 인물이 사건 수사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광일, 전개서, 2002, p.326.

30) N. Poulantzas, *State, Power and Socialism*,(London: Verso, 1980). pp.240-241.

31) 김재명. “유신독재의 체물 인혁당 사건,”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서울: 학민사, 2001), p.177

32) 이광일, 전개서, 2002, p.326.

이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당전선(이하 남민전) 사건이다. 대체로 이 조직은 구 혁명운동인자와 1960년대 혁명조직운동의 하부에서 성장한 신 혁명운동인자들이 결합된 형태였고 이런 점에서 신 혁명운동인자 중심으로 지도부가 변화해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³³⁾ 박정희정권은 1979년 10월 9일, 16일 그리고 11월 13일 3차례에 걸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여 관련자 78명 가운데 자수 2명을 포함, 모두 7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각계각층이 망라된 74명이란 규모에도 불구하고 10.26사태와 연이은 민주화의 열기 - 이른바 ‘서울의 봄’-에 묻혀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기소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1970년대 말 이후 재야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와 민주노동운동 간의 긴장구조, 교회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의 출현으로 표현되었다.³⁴⁾

전두환정권기의 대표적 조직사건으로는 이른바 ‘제헌의회그룹사건’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의 고양과 헌법개정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전두환정권의 정치적입지가 매우 좁았던 시기로 전두환정권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각종 사건을 양산하였다. 이른바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사건’(이른바 전노추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당결성기도사건(이른바 ML당사건), 반제동맹당(Anti-Imperialist League)사건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³⁵⁾

냉전분단체제에서 저항운동은 권위주의정권 혹은 보수적 우익권력의 지속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이른바 과대 성장된 국가의 권력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대칭적 사회관계의 반영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들 저항운동의 피해는 매우 크고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권위주의, 국가권력은 사회관계의 모순에 주목하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기존 질서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저항한 세력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른바 개별적, 집단적 ‘피해자’가 되었다.

33) 조희연,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서울: 한울, 1993),p.164.

34)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1999),pp137-150.

35) 박원순, 전계서, p.276.

3. 정치적 의문사

여러가지 개념요소를 상징할 수 있으나 ‘의문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해명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에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³⁶⁾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보통 후자를 가리킨다.³⁷⁾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한국의 현대사, 특히 5공 이후 형성된 개념이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서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단순 의문사와는 구별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동기는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활동, 학생운동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치적 의문사를 낳았다. 정치적 압제와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암살 등의 생명권침해가 잇따랐다. 그 가운데 죽음의 타살여부와 가해자, 그 동기, 과정 등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의문의 죽음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독재치하에서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의 사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의문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사인을 어느 정도 밝혀낸 죽음조차도 그 유족과 주변 인사들에 의해 의혹이 가지지 않아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인에 대한 의혹을 과학적으로는 결코 풀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엄혹한 독재치하였기 때문에 유족들 스스로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고 언론이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어려웠던 사건들이다. 정작 이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증거들이 산일되고 법적 공소시효는 경과되어 어떠한 진상조사 작업이나 법적 처단 및 배상작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종길교수 사건과 장준하사건은 유신시대 벌어졌던 가장 유명한 의문사들이다.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종길은 1973.10.19.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수사를 받

36)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89), p. 157.

37) 박원순,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민족민주열사·피해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 회의 자료집』, (1997), p 11.

던 중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 유가족들에게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술한 의문이 제기되어 고문치사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통치하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6월 항쟁 이후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얼마 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서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한편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던 장준하는 1975.8.17.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산 중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경찰은 등산 중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역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로 보고된 경우는 주로 반정권활동에 관련된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정치권력의 개입이 추정되는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자살 등으로 처리되었다³⁸⁾. 물론 가족과 친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의문사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도움과 변호사단체와 의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5공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숫자는 그 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공화국을 거쳐 심지어 김영삼 정권까지 지속되었다.

전국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투옥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1명에 이른다. 그 중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92명, 학생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60명, 빈민노동·군경·일반시민들이 64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³⁹⁾. 물론 이 가운데 정확히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1997년의 ‘민족민주열사 피해자자료모음’은 35명의 의문사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⁴⁰⁾.

38) 편집부, 『한국인권의 실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2), p. 129.

39) 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열사회보』, 제6호, p. 22.

40) 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살아서 만나리라』, (1997), pp. 288-290.

1988년 11월 4일 평화민주당은 제5공화국 통치기간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34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⁴¹⁾

표 5-9)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분류 (괄호 안은 행불자, 2002년 현재)

| 년도별 | 인원 | 백분율 | 연령별 | 인원 | 백분율 | 가해기 관별 | 인원 | 백분율 | 직업별 | 인원 | 백분율 |
|----------|-------|-------|-----|----|-------|-----------|----|-------|----------------------------|----|------|
| 60년 대 | | | 10대 | 4 | 5 | 국가정 보원 | 9 | 11.25 | 학생 | 18 | 22.5 |
| 70년 대 | 13(1) | 16.25 | 20대 | 53 | 66.25 | 경찰 | 22 | 27.5 | 회사원 | 3 | 3.8 |
| 80년 대 | 52(3) | 65 | 30대 | 8 | 10 | 국방부 | 27 | 33.75 | 교수·조 교·연구 원 | 3 | 3.8 |
| 90년 대 | 15(1) | 18.75 | 40대 | 4 | 5 | 국가·정 권 | 9 | 11.25 | 사업 | 2 | 2.5 |
| 계 | 80 | 100 | 50대 | 5 | 6.25 | 미군 | 1 | 1.25 | 장기수 | 5 | 6.3 |
| | | | 60대 | 3 | 3.75 | 불특정 | 12 | 15 | 재야인 사·정치 인 | 2 | 2.5 |
| | | | 미상 | 3 | 3.75 | 계 | 80 | 100 | 공무원 | 1 | 1.3 |
| | | | 계 | 80 | 100 | | | | 군인 | 27 | 33.8 |
| | | | | | | | | | 노동자· 무직·노 점상·운 전수 | 15 | 18.8 |
| | | | | | | | | | 기타(가 정주부 등) | 4 | 5.0 |
| | | | | | | | | | 계 | 80 | 100 |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

41) 대한변호사협회편, 『인권보고서』, 제3집,(1988), pp.90-91.

-문영수(운전사), 김성수(서울대생), 김상원(노동자), 박선영, 박관현, 정경식, 정성희, 김두황, 최운순, 김용권, 정연관, 노철승(군부대 자살로 발표), 이승환, 박필호, 정재곤, 박상구, 허완근, 이윤성, 한영현, 한희철 (서울대생), 최우혁, 임기운(목사), 이종원(서울대생), 신호수(노동자), 박종철, 고정희, 이태춘, 박종근, 이이동, 이승삼, 장춘근, 서대일, 장영식, 이동일.

‘의문사’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택들의 역사적 결과로, 대부분 그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원인은 정치폭력(국가테러리즘)이다. ‘의문사’가 빚은 비극은 가족사적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특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의문사 사건으로 80건이 신청(2002년 현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신청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다수는 사망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표5-9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한 의문사사건들을 발생연도별·연령별·가해기관별·직업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5-9을 보게 되면, 발생연도별로는 1980년대에 52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3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해기관별로는 국방부(군복무 중 사망자)에 의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많고 다음으로 경찰이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군인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이 18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정치폭력의 가장 침해한 피해들이 1980년대 20대 학생들(군인들 중 많은 학생들은 학생징집자들 이다)을 대상으로 주로 군대와 경찰조직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군인들 중 다수가 학생으로 징집된 경우임을 감안한다면, 의문사의 다수는 학생운동을 상대로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정치적 자살 및 타살

독재에 대한 저항은 분신과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형태를 낳았다. 분신과 투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로 선택되어 왔다.⁴²⁾

1970년 청계피복 노동자인 전태일의 분신에서 시작하여 1979년 경찰의 강제적 진압에 의한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투신, 1986년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의 분신을 거쳐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과 노동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과 투신자살을 결행했다. 특히 1991년 5월 투쟁 정국 당시 일어난 일련의 분신, 투신사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전태일 분신자살은 국가에 의한 간접살인의 대명사였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42) 조현연, 전개서, p. 123.

삶과 그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개발독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⁴³⁾ 한편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86년 이전까지의 반미운동이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회 또는 중립의 촉구를 내용으로 돌출 형태로 전개된 것이라면, 1986년 이후에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 또는 식민지이지 결코 우방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 근거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반전반핵운동과 전방 입소 반대투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재호와 이세진은 경찰의 진압 앞에서 분신을 결행하기에 이른다. 1991년 5월에 극단적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강경대의 치사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강경대 치사사건은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갔으며, 더욱이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철, 윤용하, 김철수, 이정순 등 11명이나 분신자살하는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첨예하게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저항의 과정속에서 발생한 역사상 전례 없는 타살과 자살의 비극적 반복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실로 컸다. 자살이라 하더라도 분신과 투신을 통해 죽음을 선택한 것, 그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치폭력이 사회를 짓누르는 반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치상황에 치열하게 저항하기 위한 피해정신의 표출임에 분명하다.

과거 정치적 타살들이 4.19혁명 당시 김주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그 사건 자체로 끝났지만, 1987년 박종철과 이한열, 그리고 1991년 강경대 사건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되어 갔다. 일종의 전투나 혈전을 연상시키는 시위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며, 이것은 군부독재의 시기 이후에도 여전했다.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속의 이한열에 이어, 1991년 5월의 강경대와 김귀정 등 시위 현장에서 진압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무수한 죽임이 양산되었고 노수석, 류재율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군부체제를 벗어난 이른바 문민정권시절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도 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우연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정치폭력에 의한 결과였다.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얼마만한 정치폭력들이 있었으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얼마만한 피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전모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43) 조현연, 전개서, p. 124.

현재 까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자 특히 사망자는 331명으로 추정된다.⁴⁴⁾ 사망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죽음(자결)으로서 분신 70명, 할복 2명, 투신 12명, 음독 5명, 목매 5명 등 94명이며 타의에 의한 죽음으로서 타살 18명, 옥사 105명, 의문사 42명, 병사 47명, 사고사 25명 등 237명이다. 직업별로는 1) 노동자 전태일(1970) 등 94명, 2) 농민 6명, 3) 학생 김상진(1975) 등 63명, 4) 도시빈민 이재식(1989)등 9명, 5) 재야인사 최종길(1973) 등 24명, 6) 시민 이정순(1991) 등 6명, 7) 장기수 조봉암(1960) 등 105명, 그리고 8) 군경 한희철(1983) 등 24명이다.

이 통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기간 중에 사망한 이들이나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삼청교육대와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피해(사망)의 시기별 발생빈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시기에 67명, 전두환 정권시기에 77명, 노태우 정권시기에 112명, 김영삼 정권시기에 69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의 피해자는 저항의 전형을 이루는 모든 형태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곧 분신(전태일), 할복(김상진), 투신(김경숙), 의문사(최종길), 사형(인혁당) 등의 형태들이 모두 발생했다. 이후 정권들의 시기 에는 가장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인 자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두환 정권 시기 분신이 17건에 이르렀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분신이 2배 이상 증가한 36건,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도 16건이나 되었다.(표5-10 참조)

이들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주장은 민주주의의 실현, 조국통일의 성취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었다. 이것은 각 정권의 반민주성과 지배체제에 대한 직접적이며 격렬한 저항을 죽음의 형식으로서 표출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44) 아직 까지 관련 국가기구로부터 구체적 통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정된 추정치를 근거로 사망자를 그 대상으로 파악한 것임 (2005.5.22현재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유가협· 민가협, 전게서, 2005 , 참조)

표 5-10) 정치적 피해의 형태별 분류 (2005년 현재)

| | | 분 신 | 할복 | 투신 | 타 살 | 음독 | 단식 | 목매 | 의문의 죽음 | 병 사 | 사고사 |
|-----------------------|------|--------------------------------------|-----|------------|-------------------|-----|----|------------|---|-----|-------------------------------|
| 박 정 희 정 권 | 1960 | | | | | | | | | | |
| | 1970 | 전태일 | | | | | | | | | |
| | 1971 | | | | 김진수 | | | | | | |
| | 1972 | | | | | | | | | | |
| | 1973 | | | | | | | | 최종길 | | |
| | 1974 | | | | | | | | | | |
| | 1975 | | 김상진 | | | | | | 장준하 | | |
| | 1976 | | | | | | | | | | |
| | 1977 | | | | | | | | | | |
| | 1978 | | | | | | | | 정법영 | | |
| | 1979 | | | 김경숙 | | | | | | | |
| | 소 계 | 1 | 1 | 1 | 1 | | | | 3 | | |
| 전 두 환 정 권 | 1980 | 김종태 | | 김의기 | | | | | 임기윤 | | |
| | 1981 | | | 김태훈 | | | | | | 최종철 | |
| | 1982 | | | | | | | | 문영수 정성희 | | |
| | 1983 | | | 황정하 | | | | | 이윤성 김두항 한영현 최은순 한희철 | | |
| | 1984 | 박종만 | | | | | | | 허원근 | | |
| | 1985 | 홍기일 송광영 | | | | 기 혁 | | | 우종원 | | |
| | 1986 | 박영진 변형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진성일 강상철 | | 박해정 이경환 | 김상원 | 오한섭 | | | 신호수 김성수 | | |
| | 1987 | 표정두 황보영국 이석구 김수배 박응수 박태영 | | 김성애 |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 | | 박선영 장재완 |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이태춘 | 이순덕 | 채광석 이재용 김현욱 유인식 이대용 박용선 |
| | 소 계 | 17 | | 6 | 4 | 2 | | 2 | 21 | 2 | 6 |

| | | 분 신 | 할복 | 투신 | 타살 | 음독 | 단식 | 목매 | 의문의 죽음 | 병 사 | 사고사 |
|-------|------|--|-----|------------|--------------------|-----|-----|-----|--------------------------------------|--|--------------------|
| 노태우정권 | 1988 | 이대건 김장수 최윤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최덕수 박래진 | 조성만 | 양영진 | 김길호 | | | | 정경식 오범근 문용섭 배중순 우인수 박종근 고정희 | 문송면 유병진 신영일 곽현정 | 송철순 정성규 |
| | 1989 |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강현중 김중하 남태현 이재식 | | 김병구 | 이상남 최성조 정상울 | | | | 이재호 이철규 이내창 | 함석현 | 조정식 |
| | 1990 |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상호 원태조 심광보 | | 김수경 최응현 | | 정성묵 | | 이원기 | 김용갑 박성은 | 오원식 김기훈 조영래 김병곤 | 배주영 강민호 신장호 |
| | 1991 |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철수 이정순 정상순 손석웅 김기설 양홍찬 | | 권미경 | 강경대 김귀정 | | | | 박창수 송종호 남현진 문승필 김영환 | 김봉환 신용길 | 유재관 김치철 고재욱 류정하 |
| | 1992 | | | | 김선호 | | | | | 임희진 박복실 이상렬 박현민 이광웅 최성근 최성묵 오원진 윤재영 | |
| | 소 계 | 36 | 1 | 5 | 7 | 1 | | 1 | 17 | 20 | 10 |
| 김영삼정권 | 1993 | 이경동 한상용 | | | | | | | | 황인철 성순희 김영자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임혜란 | 서영호 김주리 최 응 |
| | 1994 | 최성묵 | | | | 김성운 | | 임중호 | | 김상옥 김낙성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
| | 1995 |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장현구 최정환 | | | | | | 조수원 | 이덕인 | 박현채 | 오원택 |
| | 1996 | 김시자 진철원 황해인 오영권 박동학 | | | 신연숙 노수석 | | 권희정 | | |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김말룡 | 박문곤 |
| | 1997 | 한상근 | | | 류재을 김준배 민병일 박순덕 | | 홍장길 | | | | 이형관 최종진 |
| | 소 계 | 14 | | | 6 | 2 | 1 | 2 | 1 | 24 | 9 |
| 1998 | 최대립 | | | | | | | | | 최명아 | |
| 합 계 | 69 | 2 | 12 | 18 | 5 | 1 | 5 | 42 | 47 | 25 | |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 살리라 2』, (200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를 참조해 재구성.

5. 사법적 처벌

권위주의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피해들은 법적, 제도적 수단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의 흐름을 통해서, 정치폭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11) 주요 법률별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 수⁴⁵⁾

(단위: 명)

| | 국가보안법 | | | 반공법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
| | 검거자 | 구속자 | 기소자 | 검거자 | 구속자 | 기소자 | 검거자 | 구속자 | 기소자 |
| 1965 | 153 | 91(141) | 115(139) | 150 | 87(200) | 89(186) | 712 | 113(520) | 148(516) |
| 1966 | 139 | 83(116) | 32(56) | 203 | 103(211) | 107(187) | 47 | 36(245) | 26(229) |
| 1967 | 168 | 47(102) | 61(105) | 106 | 93(150) | 94(137) | 591 | 13(388) | 90(389) |
| 1968 | 231 | 126(235) | 151(233) | 548 | 221(429) | 393(423) | 97 | 10(203) | 113(203) |
| 1969 | 80 | 38(53) | 52(53) | 409 | 299(484) | 396(477) | 98 | 5(124) | 76(125) |
| 1970 | 38 | 47(71) | 61(71) | 289 | 226(348) | 276(318) | 55 | 5(109) | 59(106) |
| 1971 | 97 | 48(81) | 64(80) | 232 | 144(265) | 193(256) | 210 | 20(164) | 91(161) |
| 1972 | 278 | 133(308) | 209(308) | 437 | 250(425) | 328(422) | 96 | 1(74) | 29(72) |
| 1973 | 76 | 68(100) | 71(98) | 445 | 226(369) | 315(369) | 85 | 10(30) | 15(30) |
| 1974 | 86 | 32(47) | 21(43) | 269 | 200(240) | 189(207) | 19 | 3(19) | 12(19) |
| 1975 | 22 | 13(25) | 20(25) | 349 | 291(350) | 315(350) | 82 | 41(82) | 46(82) |
| 1976 | 29 | 18(44) | 32(44) | 319 | 259(315) | 270(315) | 32 | 0(7) | 0(7) |
| 1977 | ? | ? | ? | ? | ? | ? | 0 | 0(10) | 143(166) |
| 1978 | ? | ? | ? | ? | ? | ? | 12 | 10(20) | 18(21) |
| 1979 | ? | ? | ? | ? | ? | ? | 26 | 28(63) | 49(64) |
| 1980 | ? | ? | ? |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 폐지 | | | 340 | 2(23) | 11(23) |
| 1981 | ? | ? | ? | | | | 311 | 132(240) | 180(240) |
| 1982 | ? | ? | ? | | | | 197 | 117(193) | 144(193) |
| 1983 | ? | ? | ? | | | | 388 | 270(368) | 313(368) |
| 1984 | ? | ? | ? | | | | 156 | 18(311) | 135(310) |
| 1985 | 143 | 100(160) | 119(156) | | | | 840 | 318(570) | 361(569) |
| 1986 | 523 | 336(421) | 339(420) | | | | 2,574 | 1,594(2,480) | 1,241(2,480) |
| 1987 | 786 | 420(587) | 431(583) | | | | 4,172 | 707(1,464) | 522(1,462) |
| 1988 | 221 | 101(210) | 111(209) | | | | 1,509 | 348(790) | 346(789) |
| 1989 | 886 | 253(494) | 320(485) | | | | 1,185 | 204(882) | 411(881) |
| 1990 | 1,223 | 361(654) | 426(638) | | | | 2,818 | 496(1,861) | 691(1,851) |
| 1991 | 1,005 | 354(628) | 358(601) | | | | 1,497 | 356(1,607) | 599(1,591) |
| 1992 | 609 | 280(421) | 304(414) | | | | 799 | 92(613) | 158(608) |
| 1993 | 375 | 93(207) | 114(202) | | | | 460 | 24(277) | 66(277) |
| 1994 | 714 | 291(401) | 320(401) | | | | 763 | 59(356) | 126(351) |
| 1995 | 715 | 224(305) | 232(305) | | | | 442 | 44(373) | 115(373) |
| 1996 | 733 | 185(261) | 225(261) | | | | 9,383 | 353(2,128) | 508(2,128) |
| 1997 | 901 | 62(101) | 86(101) | | | | 2,309 | 283(2,274) | 635(2,274)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1965~1997을 인용해 재구성.

45) * () 안의 수치는 전체 대상자의 수이며, 각 항목의 수치는 연관관계가 없음.

* 1977~1984년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경우 통계자료 자체가 누락되어 있음. 1977~1979는 긴급조치로, 1980은 비상계엄으로, 1981~1984는 원인불명으로 판단됨.

표5-11 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의 주요 법률별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수를 보여주고 있다.⁴⁶⁾ 이 표에서 보면 1980년에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기 까지, 집시법이나 긴급조치에 의한 처벌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이념적 성향을 띤다고 판단되어 반공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조직사건 등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처벌자 수가 증대하고 그 속에는 학생 등 일반 반독재민주화운동 참여자가 다수 포함되게 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반공법을 흡수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이념적으로도 급진화 되어가고 투쟁양식의 면에서도 전투적이 되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수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면 법의 적용사례 역시 감소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의 적용사례가 다같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그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형사사법의 적용과정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⁴⁷⁾ 이것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물리적 강제성을 갖고 있었던 구 국가기구와 국가요원 및 사회통제 법제의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3절 영역별 유형

1. 재야운동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와 시민 사회 및 계급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그 발전이 제약되고 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조숙한 민주주의’에

46) 최정기, “한국의 정치변동과 사법적 처벌의 변화,”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피해』 (서울: 함께읽는책, 2002), p.413.

47) 최정기, 전게서, pp.411-414.

의해 일시에 주어졌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의 습득과 더불어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한 독재의 시행이 거꾸로 민주화 운동의 급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이 주로 그 사회의 계급 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강력한 국가의 존재,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강력한 국가 권력의 독재에 대한 저항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재야세력등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적 야당과 재야세력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재야세력은 다음과 같은 네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과거에는 정치인이었으나 지금은 강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정치권을 떠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룹, 둘째 종교계, 언론계, 문인, 법조인, 교수 등의 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전문가 또는 지식인 그룹, 셋째 학생운동 출신 그룹, 넷째 노동운동 출신 그룹 등이 그것이다⁴⁸⁾ 다른 한편 활동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야세력은 제도정치권이 아니라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비제도권 정치사회에 걸치는 영역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재야세력이란 비정치인이지만 민주화운동에는 적극 참여했던, 그러나 계급적으로는 그 어떤 하나로 특정화시키거나 환원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부류의 인사들과 그룹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야운동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항운동의 영역이나 연합전선의 특징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과정상 피해의 일부로 포함되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를 통해 그 역할과 피해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5-12은 재야 관련 구속자 현황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재야인사의 현황이다.

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에 앞서 민주적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연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6월 항쟁이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의 ‘최대민주화연합’을 가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운동본부는 민주적 야당에서부터 재야세력의 상층과 하층 모든 인사 및 운동조직들을 결집 이를 국민항쟁으로 연결시켜냈던 중심적인 기구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960년대부터 그 형성의 태동이 시작되었던 재야세력의 민주

48) 박태균, “한국민주주의 주도세력,”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p.160-170.

화운동은 6월 항쟁을 통해 그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야세력의 역할은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는 재야세력의 총 결집체를 만들어내었지만 제도권 정치가 과거 비제도권에서 재야세력이 수행했던 역할을 수렴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표 5-12) 재야운동의 구속자 현황

| 연도 직업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합 계 |
|----------|-------|-------|-------|-------|-----------------|-------|-------------|
| 구속자 | 112 | 393 | 285 | 499 | 677 | 413 | 2,379 |
| 재야 | 63 | 128 | 110 | 92 | 89 | 71 | 553 |
| 연도 직업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2.24) | 합 계 | 총 계 |
| 구속자 | 288 | 128 | 118 | 126 | 9 | 699 | 3078 |
| 재야 | 46 | 16 | 15 | 9 | 1 | 147 | 700 |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 보고서』 1993.2.25.~2003 .2.24 조사 통계를 인용해 재구성.

1990년대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된 한국의 운동추세가 보여주듯, 재야세력의 약화는 정치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일수도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에서의 재야세력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2. 학생운동

한국현대사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권위주의 정권이 퇴진하던 시기에는 항상 학생운동이 저항의 중심에 있었다. 1960년4.19 시기 김주열 및 대학생들의 피해, 1979년 박정희의 암살 직전 부산. 마산 대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시기 박종철 및 이한열의 사망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따라서 강고한 국가폭력과 자기 피해적 학생운동의 치열한

상호공방은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다.⁴⁹⁾

정권의 탄압정도와 학생운동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말해주는 이론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진압이 시위를 격화시키는 확률은 매우 높다. 한국 학생운동과 정권의 물리적 통제의 상관관계가 바로 이러한 직접적 예일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종종 더 커다란 폭력과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발전되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정치의 일탈성을 증폭시킨 데는 군부 권위정권과 이에 맞서는 저항세력에 각각 물리력을 담보해준 군부와 학생이라는 두 집단의 정치적 역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즉, 도식적으로 살펴볼 때 군부는 보수-수구세력의 최종 물리적 지지기반이었고 학생집단은 진보-혁신세력의 최첨병으로 변혁운동의 물리력을 대부분 제공했었다.⁵⁰⁾

거시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 학생운동은 대체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970~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생운동이 점점 민족적(반외세)반관료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⁵¹⁾

학생운동과 권위주의정권의 대립 구조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970년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평등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운동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념적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²⁾

한국 학생운동의 이념성은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대외 의존성, 정치적 억압, 부문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지속된 학생운동은 1980년대에 정권주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이전의 학생운동과 달리 급진적 이념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을 강조하게 되었다.⁵³⁾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는 냉전논리적인 보편성의 논리와 특수성의 논리가 평행선을 긋고 진행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지하씨클(under circle)등에서 급진주의적인 사회과학서적 및 각종 이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49) 전재호, “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민주적 실천과 역사적피해,”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피해』 (서울: 함께읽는 책, 2002),P.182.

50) 김도중, “한국학생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NGO학회, 『한국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찰』, (2003),p.41.

51) 김한구,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양대, 『한국학 논집』, 15집 (1989), P.316.

52) 이재봉,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8집, (1990),p.25

53) 배규한 · 한도현 · 백진아, “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부, 1996),pp.10-25.

이러한 책들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여 의식화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⁵⁴⁾ 이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급진사회학이론이 저항운동의 이념적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급진사회학은 빈자, 육체노동자, 소수민족, 여성 등 사회적 피억압자 집단의 위치에서 사회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미국의 학생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론이었다. 급진적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착상을 마르크스로부터 끌어왔기 때문에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급진적’이라는 용어를 ‘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인식되게 되었다.⁵⁵⁾ 이것은 공산주의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저항운동의 좌경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켰으며, 사회적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매도되어 피해를 강요받아야 했다. 동시에 남미에서 태동한 종속이론, 해방신학, 민중교육론이 소개되어 제 3세계적 위치에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민중론과 민중운동은 단순한 정권차원의 저항운동에서 벗어나 정치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⁵⁶⁾

1980년대의 학생운동의 논리는 사회 전영역을 통하여 그 역량을 축적시켜 궁극적으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구조를 변혁시킨다는 것이었다. 사회구조의 전부분에 나타나는 제모순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단 상황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민족통일운동이 민족주의 최대 당면과제로 등장했다.⁵⁷⁾

통일운동은 한국 학생운동의 존재구속성에서 발현된 운동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던 운동이었다.⁵⁸⁾ 학생운동의 논리가 통일운동으로 귀결된 것은 4.19로 표출된 반독재 민주화의 이념이 1960년대 말까지 일관된 흐름을 보이면서부터였다. 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1980년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반외세 민족통일운동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⁵⁹⁾.

학생운동의 지향이 강한 정치성을 띠게 되는 배경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상황, 급속한 산업화, 전통적인 정치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권위주의적 정치·사회구

54) 방영준, “한국민중주의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고찰,” 『국민윤리 연구』, 제22호, (86.3). p. 22.

55) J. Sherman Howard & L. Wood, James 저, 남춘호 옮김, 『새로운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1983), p. 29.

56) 방영준, 전게서, p.18.

57) 방영준, 전게서, p. 49.

58) 권형철,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서울: 일송정, 1990), 제 3부: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론 I, II』 (서울: 백산서당, 1988) 참조.

59)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서울:형성사, 1987), pp.430-437.

조의 현실과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강화로 인해 ‘독재성’이 증가하면서 학생운동과 정권의 강경대응 사이에서 진압과 반발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면서 학생운동이 정치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⁶⁰⁾ 학생운동의 정치지향성은 이념화 조직화 제도화과정을 밟아 가는데 1980년대 초반 급진이념의 유입으로 인해 이념화가 이루어지고, 1980년대 학생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되어, 전대협이 결성으로 제도화되었으며 1990년대 한총련 이후 퇴조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⁶¹⁾

한국 학생운동의 이러한 정치지향성은 강고한 권위주의정권의 정치폭력과 상호공방 속에서 피해를 양태하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이데올로기적 통제, 법적통제, 제도적 통제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사용된 것은 반공주의와 반인륜 담론이었다. 반공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이 저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많은 학생운동 조직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이용하였다. 반인륜 담론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반윤리적, 반인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서 학생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이용하였다.⁶²⁾

반공주의적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박정희 정권기(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사건 이라 할 수 있다.

민청학련은 긴급조치 1,2호라는 철권통치에 맞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전국규모의 투쟁조직을 건설하여 유신체제에 타격을 가하려고 만든 조직이었다.⁶³⁾

민청학련 사건은 관련자(사형, 무기, 징역형)만 해서 217명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직후 유신반대인사들은 구속시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정권이 학생운동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다는 시나리오를 통해 반유신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⁴⁾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 더 강도 높게 학생운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통

60) 서정안, “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안건보장학과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89), pp51-61.

61)한홍수·김도중,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24집,(1993), pp.64-66.

62) 전재호, 전계서, pp,184-185.

6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2003). 참조

64) 전재호, 전계서, p.184.

제를 가했다. 1980년 서울의 봄 시기부터 학생운동들의 민주화 요구를 북한의 적화책동과 연결시켰으며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동에 의한 것인 낭반공주의를 구사하여 물리적 사용을 정당화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19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1986년 건국대사건 이었다.

1986년 건국대 사건은 당시 국민들이 개헌 열망에 따라 수세에 몰린 전두환 정권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학생들의 강경투쟁을 유도한 사건이었다.⁶⁵⁾

1986년 10월 28일 발생한 건국대 사건은 전국 26개 대학교 학생들이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발족식을 거행하던 중 경찰이 진압에 맞섰다가 건물로 피신하여 4일에 걸쳐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과 언론에 의해 북괴의 주장노선에 “동조, 추종하는 학원내의 공산혁명분자”로 매도되었고⁶⁶⁾학생운동 사상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1,525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1,28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⁶⁷⁾

1990년 대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 8월의‘연세대사건’이다. 한총련 제6차 통일대축전과 제1차 범청학련 총회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범민족대회 남측대표로 간한총련의 두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추어 통일축전을 열고 판문점으로의 행진하려던 계획이 봉쇄 되면서 발생하였다. 판문점으로의 행진이 좌절된 약 2만 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를 거점으로 농성에 들어가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림으로서 학생운동의 이적성논란을 불러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총련 주류의 친북/폭력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연행자 5천7백15명. 구속자 4백 75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⁶⁸⁾

학생운동에 대한 피해의 양상은 법적기제를 통해서도 발생하였다.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등의 비상조치와 사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계엄령과 위수령이 박정희정권시기에 주로 동원되었다면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경범죄처벌법,계엄포고령,소요죄,특수공무집

65) 공안당국이 학생운동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일부러 사상 유례없는 투망작전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돌았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갑작스럽게 방한한 것이란지, 김대중이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정권측이 모종의 비상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실록민주화운동” 『경향신문』, 2004년 11월 21일자)

66) 『동아일보』, 1986.10.31 일자

67) 전재호, 전개서, p.185.

68) “한총련과 연대사태” 『월간 사회평론 길』, 96권 10호.(1996). pp.54-64.

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도로교통법, 화염병 처벌법,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은 권위주의 통치시기 내내 학생운동을 통제하는 법적기제였다.⁶⁹⁾ 그중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전두환시기에 증가하였고 통일운동이 활발해진 노태우정권시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⁷⁰⁾ 학생운동에 있어 다른 부문운동과 다른 피해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제징집은 박정희정권이 시작하고, 전두환정권이 본격적으로 실시한 운동권 학생들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군에 입대시키는 제도였다. 또한 전두환정권은 강제 징집자들을 이용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녹화사업까지 실시하였다.⁷¹⁾

1980년 계엄 상황에서 시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학생들의 처리과정에서 강제징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책은 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수립되었다. 문제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문교부·안기부·치안본부 등은 합동심사과정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입대·훈방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경찰과 학교·병무청·보안사에 통보하였다.⁷²⁾

학생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되어진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자료 등을 통해 일정권분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에서 김영삼정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망한 학생운동관련 피해자는 102명, 구속자수는 14,118명에 이른다.(표5-13참조)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정희정권기에는 1,200명, 전두환정권기 5,325명, 노태우정권기 4,010명, 김영삼정권기 2,686여명이 정치적 이유로 사망하거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이들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청위원회’에 접수된

69) 박정희정권기에는 ‘반공법’‘계엄포고령’‘소요죄’등이 주로 적용되었고, 전두환정권기에는 화염병이 등장함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 및 방화치상’그리고 위장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절도죄’등이 주로 적용되었다. (전제호, 전계서, p.192)

70) 노태우정권기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에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 80%나 차지하고 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 역사비평사, 1997), pp.43-49.

71) 1988년 국정감사에서 행해진 병무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81년부터 83년 까지 강제 징집된 인원은 447명에 이른다. (국회, 『198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1988.)

7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p.296-297.

학생 관련자는 (1차신청자와 2차 신청자) 3,760명이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학생관련 의문사의 경우는 36명이다.

표5-13) 시기별 학생관련 사망자 및 구속자 현황

| 시기 | 유형 | 정치적사망자 | | | | 구속자 | 합계 | |
|-----------|----|------------|-----------|------------|------------|------------|----------------|----------------|
| | | 자 살 | 타살 | 사고사 ·병사 | 의문사 | | | |
| | | | | | 일반 | | | 군의문사 |
| 박정희 정권 | | 1명 | | | 2명 | | 1,197명 | 1,200명 |
| 전두환 정권 | | 14명 | 2명 | 2명 | 3명 | 17명 | 5,287명 | 5,325명 |
| 노태우 정권 | | 14명 | 2명 | 9명 | 8명 | 6명 | 3,971명 | 4,010명 |
| 김영삼 정권 | | 9명 | 3명 | 7명 | 2명 | 1명 | 3,663명 | 3,686명 |
| 합계 | | 38명 | 7명 | 18명 | 15명 | 24명 | 14,118명 | 17,804명 |

*출처: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피해자자료집:끝내살리라2』 2005, pp.412-415: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 (서울: 함께읽는 책, 2002)p.163
 한국기독교교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198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1986-1999:
 평화민주당 『인권백서/1988~1989』 199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1989-1998』를 참조 재구성함.

학생운동의 피해 중 가장 극적인 사례로는 정치적 사망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사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권력에 대한 항거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낸 자살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고사 내지 병사와 의문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살의 경우도 분신, 활복, 투신, 음독, 목매, 단식등 여러 가지 항거형태에 따라 피해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항거행위는 학생들의 자살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절망과 비판의 표시로 정치권력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띤 ‘정치적 자살’로 볼 수 있다.⁷³⁾

정치적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 이들은 총 38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더욱 세분화해보면 분신 22명, 할복 2명, 투신 9명, 음독 2명, 목매 2명, 단식 1명 등이다.

학생운동에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4월로 서울대 김상진이 유신헌법철폐와 박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자유성토포대회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 후 할복자살 하면서부터였다. 김상진의 할복은 당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충격을 주었으며 긴급조치9호의 선포로 인한 강압통치에도 불구하고 김상진군 추도시위가 일어났다. 자살을 통한 항거는 전두환정권기에 들어서 서강대생 김의기가 투신한 것을 비롯해 총14명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살을 선택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있었던 노태우정권기에도 학생들의 항거는 전두환정권에 비해 줄지 않았다. 이시기에 자살한 대학생은 10명에 달한다.⁷⁴⁾ 노태우 정권기중 특이할 만한 점은 ‘분신정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1991년 5월에 노정권에 항거하는 분신이 많았다는 점이다. 4명의 대학생이 노정권에 항거하여 분신하였으며⁷⁵⁾ 4명의 고교생이 노정권의 전교조 탄압 및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항거하여 자살하였다.⁷⁶⁾

73) 지배권력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하여 변화의 열망을 추구하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치열한 선택이 정치적 자살(분신 등)이라 할 수 있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1996), p.243.

74) 1988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단국대생 **최덕수**, 조국통일을 요구하며 할복 투신한 서울대생 **조성만**, 6월 군사파쇼타도를 요구하며 분신한 숭실대생 **박래전**, 10월 통일의 꽃이 피기를 원하며 투신한 **양영진**, 1989년 4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외치며 분신한 서울교대생 **남태현**, 1990년 11월 민주화운동에 복무하지 못함을 비판하여 투신한 **최웅현**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족민주열사·피해자자료집: 끝내살리라2』, (2005).참조.

75) 1991년 4월 노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전남대생 **박승희**, 안동대생 **김영균**, 경원대생 **천세용**, 군북무중 8월 조국투쟁을 외치며 투신한 대구대생 **손석용**등이 이에 해당한다.(상계서)

76) 1990년 대구경화여고생 **김수경**, 공주고 **정성목**,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 1991년 전남보성고생 **김철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5-14) 학생운동 관련 정치적 사망자

| 시기 | 유형 | 자 살 | 타살 | 사고사· 병사 | 의문사 | | 계 |
|----------------|------|------------------------------|-------------|-------------------|--------------------|--|-----|
| | | | | | 일반 | 군경 | |
| 박 정 회 정 권 기 | | 김상진(75) | | | 심오석(76) 정범영(78) | | |
| | 소계 | 1명 | | | 2명 | | 3명 |
| 전 두 환 정 권 기 | 1980 | 김의기 | | | | | 1명 |
| | 1981 | 김태훈 | | 최종철 | | | 2명 |
| | 1982 | | | | 노진수 | 정성희,이진래 | 3명 |
| | 1983 | 황정하 | | | | 이윤성,김두환,한영현, 최운순,한희철 | 6명 |
| | 1984 | | | | | 허원근,임용준 | 2명 |
| | 1985 | 기혁,송광영 | | | 우종원 | | 3명 |
| | 1986 | 김세진,이재호,이동수, 박혜정,이경환,진성일 | | | 김성수 | | 7명 |
| | 1987 | 박선영,박태영,장재완 | 박종철, 이한열 | 이재용 | | 최우혁,노철승,이승삼, 박필호,김용권 이이동,박상구,정연관 | 15명 |
| | 소계 | 14명 | 2명 | 2명 | 3명 | 17명 | 38명 |
| 노 태 우 정 권 기 | 1988 | 조성만,최덕수,박래전, 양영진 | | 유병진 곽현정 | 안치용, 박인순 | 박종근,우인수, | 10명 |
| | 1989 | 남태현 | | | 이철규 이내창 | | 3명 |
| | 1990 | 정성목,김수경 심광보,최응현 | | 신장호 김기훈 김학수 | 김용갑 김진홍 | 박성은 | 10명 |
| | 1991 | 김영균,천세용 박승희,김철수,손석용 | 강경대 김귀정 | 고재욱 류정하 | 문승필 탁은주 | 송중호,남현진 | 13명 |
| | 1992 | | | 이상렬 박현민 | | 정도준 | 3명 |
| | 소계 | 14명 | 2명 | 9명 | 8명 | 6명 | 39명 |
| 김 영 삼 정 권 기 | 1993 | 이경동,한상용 | | 박기호 진광수 | | | 4명 |
| | 1994 | | | 이창환 신건수 | | | 2명 |
| | 1995 | 장현구 | | 육지회 | | | 2명 |
| | 1996 | 진철원,황혜인,권희정(단 식),오영권, 이상희 | 노수석 | 김하영 | 박동학 정인택 | 오원택 | 10명 |
| | 1997 | 한상근 | 류제을 김준배 | 이형관 | | | 4명 |
| | 소계 | 9명 | 3명 | 7명 | 2명 | 1명 | 22명 |
| 합 계 | | 38명 | 7명 | 18명 | 15명 | 24명 | |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 살리라 2』, (200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를 참조해 재구성.

이러한 항거행위는 김영삼 정권 아래서도 그치지 않았다. 김영삼정권에서 반정권 투쟁의 표시로 자살한 학생은 9명에 이르고 있다.⁷⁷⁾

정치적 살인으로 지칭되는 타살과 사고사는 학생들에 한한다면 전두환 정권시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살인이란 정치폭력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의 사망이 법적인 절차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망이라면 ‘정치적 살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사고사이건 타살이건 공권력에 의한 직접살인이건 간접살인이든 이를 정치적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⁷⁸⁾ 박정희정권에서의 정치적 살인은 주로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자신의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해하는 방식이었다. 전두환정권 역시 수사기관들의 조작에 의해 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이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써 고문이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고문에 의한 정신이상과 이로 인한 사망, 고문 중 사망등도 정치적 살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살인은 노태우정권 시기에 급속히 증가하여 김영삼정권까지 이어지는데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표 5-14참조) 전두환 정권기 대표적인 정치적 살인은 박종철, 이한열을 들 수 있다.⁷⁹⁾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관에 고문에 의해 살해된 박정철의 경우는 고문을 통해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접살인’으로 볼 수 있지만, 고문을 허용한 정권의 부도덕성이 피의자의 사망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접살인’이었다.

또한 이한열의 경우처럼 ‘강압적 시위진압의 필연적 결과’로서 정치적 살인이 발생한다. 물리적 폭력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단순한 시위참가가 생명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시위참가자의 치사는 단

77) 1993년 9월 임용고사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김영삼 정권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광주교대생 **이경동**, 11월 초등교육개혁과 교대교육정상화를 요구하며 분신한 광주교대생 **한상용**, 1995년 학생운동 중 당한 구타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분신한 경원대생 **장현구**, 1996년 노동해방을 염원하며 분신한 성균관생 **황혜인**,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며 단식 및 점거농성중 단식후유증으로 사망한 **권희정**,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오영권**, 1997년 노동약법·안기부법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대한체육과학대생 **한상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78) 전재호, 전게서, p.206.

79) 이외에도 1987년 6월 경찰의 검거를 피하다 사망한 한국외국어대생 **이재용**, 부마항쟁에 참여후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수 사망한 부산대생 **최종철**이 학생운동관련 사고로 사망하였다.

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⁸⁰⁾

6월 항쟁이후 주춤했던 정치적 살인은 1991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경대, 김귀정을 들 수 있다. 1991년 3월 명지대생 강경대가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백골단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고 5월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는 노태우정권이 이 전두환정권 못지 않은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⁸¹⁾

이러한 정치적 살인은 김영삼정권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강경진압하였고, 결국 정치적 살인을 가져왔다. 1996년 3월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쫓겨 달아나던 중 사망한 연세대생 노수석과 1997년 3월 ‘대선자금 공개, 부정권패정권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남총련결의대회’에서 투석전을 전개하던 중 사망한 조선대생 류재을, 1997년 9월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도피 중 사망한 광주대 김준배 는 김영삼정권 시기 대표적인 정치적 살인의 피해자였다.⁸²⁾

의문사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강제징집이 본격화되었던 전두환정권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학생운동의 의문사 범주에는 학생운동 과정에서의 의문사와 군복부중 의문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문사 모두가 정치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단정 할 수 없지만 정황으로 보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⁸³⁾

학생운동 관련의문사의 유형은 살해 혹은 살해로 추정되는 주체 및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과거 안기부등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 · 경찰 · 군 (보안사, 기무사)와 학교재단이 그것이다. 가장 많은 학생운동 관련 의문사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군으로 총 15건, 그 다음이 경찰로 5건, 다음이 국가정보기관 · 학교 순으로 각각 1건씩이다.(표5-15참조)

80) 강정인, “91년 5월투쟁과 죽음:저항주체의 내면 읽기,” 『1991년 5월투쟁, 죽음과 폭력의 정치를 넘어』, 91년 5월 투쟁 학술심포지엄, 2001. p.31.

81) 이외에도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감시인단 활동중 화재로 질식한 **유병진**, 건대사건이전과 이후 수차례 연행되어 고문의 후유증으로 가결한 **박현정**, 광주생지순례와 전대협 제4기 출범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가던중 장성에서 김문을 피하다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신장호**, 5.18 10주기 집회에서 과도한 최루탄 흡입으로 쓰러져 입원 운명한 **김학수**, 학원자주화 투쟁중 단식과 농활활동 등으로 인한 병 약화로 운명한 **김기훈**, 학생회 활동과 관련해 사망한 **고재욱**, **류정하**, **이상렬**, **박현민** 등이 있다

82) 이외에도 김영삼정권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창환**, **신건수**, **김하영**, **이형관** 등이 있다

83) 전재호 전게서, p 208.

학생운동 최초의 의문사는 박정희 정권기인 1976년 11월 경북대생 심오석이다. 그는 유신반대투쟁을 하였고 47일간의 무기정학 후 의대본과에 재학 중 건강한 남자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⁸⁴⁾

전두환정권기에는 의문사가 쟁점이 될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군 의문사는 전두환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녹화사업과 강제징집한 것과 비례한다. 전두환시기 의문사는 학생운동 경험자로 군대에서 의문사한 경우를 포함 총 20명에 이른다.(표5-15참조)

표5-15) 관련 기관별로 살펴본 의문사 사례(학생운동 관련)

| 중앙정보원(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 경찰(대공과, 보안수사대)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 기업주.학교재단등이 관련된 의문의 죽음 |
|---------------------------------|--|---------------------------|
| 이내창 1989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 우종원 1985년, 서울대 학생 김성수 1986년, 서울대 학생 이철규 1989년, 조선대 학생 문승필 1992년, 전남대 학생 | 김용갑 1990년,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
| 군(보안사,기무사)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 | |
| 정성희 1982년 연세대 학생 | 허원근 1983년 부산수산대학생 | |
| 이운성 1983년 성균관대 학생 | 김두황 1983년 고려대 학생 | |
| 한영현 1983년 한양대 학생 | 최운순 1983년 동국대 학생 | |
| 한희철 1983년 서울대 학생 | 김용권 1987년 서울대 학생 | |
| 이승삼 1986년 부산대 학생 | 박필호 1987년 부산대 학생 | |
| 이이동 1987년 전남대 학생 | 최우혁 1987년 서울대 학생 | |
| 우인수 1988년 성균관대 학생 | 남현진 1990년 한국외대 학생 | |
| 송중호 1991년 서울대 학생 | | |

*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295.

노태우 정권기에도 의문사가 줄지 않았다. 군 의문사를 포함 총 14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이철규⁸⁵⁾와 이내창⁸⁶⁾은 그들의 사망에 기관원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공권

84) 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게서 p.57.

85) 이철규는 조선대 교지 편집위원장으로 『민주조선 창간호』를 발간하고 교지에 ‘미제침략사’를 게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광주 제 4수원지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도망친후 5월 10일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에 의해 단순 실족익사로 단정되었으나 검문직전의 행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익사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남는 사건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검문 중 도망친 사실을 경찰관이외에 공안기관에서도 알고 있었고 수색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일 미행과 감시가 있었음이 추정된다.(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004. 참조)

86)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

력에 의한 살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영삼정권기에도 1995년 3월 군복무중 사망한 경기대생 오원택이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표5-15 참조)

학생운동관련 의문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군 녹화사업의 경우이다. 전두환정권은 불법적인 집권이후 정권에 위협적인 문제학생들을 관찰하다가 예비검속을 통해 이들을 강제로 입영시켰다. 또한 시위에 참가하여 연행된 학생들 중에 문제학생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영시켰다.

정권당국과 언론을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화’로 몰면서 학원의 좌경화를 막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제적-구속, 지도휴학-강제징집이라는 장치를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실제로 1980년 9월 4일 서울대생 유시민등 64명 입영조치, 같은 해 11월 27일 대학생 휴학 및 정학자 일괄 조기입영 결정, 1981년 1월 무림사건 관련자 입영조치, 같은 해 12월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강제징집조치는 1983년말 까지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다. 정권 발표에 의하면 1980년 5·17 이후부터 1983년 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800명이었다. 이들 중 1천 3백 63명이 제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 징집되었다. 1981년부터 1983년 까지 공식통계로는 4백 47명이 강제 징집되었고, 이중 2백 56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이 시기 1천 1백명 정도가 강제 징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⁷⁾

학생운동의 정치적 피해의 또 다른 유형은 상이와 수배 그리고 구속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상이는 전두환정권 시기에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의 직격탄 발사와 사과탄 투척에 의해 화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 투석전에서 실명하거나 두개골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 노태우정권 시기에도 경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결성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노태우정권 시기에는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였다.⁸⁸⁾

은 경찰이 실족익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가 거문도로 가는 배에 안기부 인천분실 직원이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부검결과 이씨의 사체 7군데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사망 전 심한 외상을 입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자세한 사망경위를 밝히지 않고 실족익사 추정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림으로서 의혹이 계속 제기 되었다(전재호, 전계서, p.210)

8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전계서, p.297.

신체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인신구속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인신구속의 시작인 수감생활은 피구속자를 사회생활로부터 격리시켰고, 수감생활 중 금치 나 징벌방 등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더 큰 타격을 가하였다.⁸⁹⁾

표5-16) 연도별 학생 구속자수

| 년 도 | | 구속자수 | 년 도 | | 구속자수 |
|------|--------|------|------|--------|-------|
| 1970 | 박정희 정권 | 2 | 1984 | 전두환 정권 | 61 |
| 1971 | | 43 | 1985 | | 678 |
| 1972 | | 1 | 1986 | | 2,117 |
| 1973 | | 165 | 1987 | 1,189 | |
| 1974 | | 246 | 1988 | 546 | |
| 1975 | | 126 | 1989 | 1,232 | |
| 1976 | | 27 | 1990 | 1,173 | |
| 1977 | | 90 | 1991 | 765 | |
| 1978 | | 230 | 1992 | 255 | |
| 1979 | | 267 | 1993 | 82 | |
| 1980 | 전두환 정권 | 468 | 1994 | 김영삼 정권 | 410 |
| 1981 | | 258 | 1995 | | 263 |
| 1982 | | 200 | 1996 | | 909 |
| 1983 | | 316 | 1997 | 김대중정권 | 1,014 |
| | | | 1998 | | 419 |
| | | | 1999 | | 288 |
| | | | 2000 | | 129 |
| | | 2001 | | 149 | |

*출처:조희연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서울:함께읽는책, 2002).P.182.

* 이수치에는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입건되어 구속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됨.

수배 역시 피수배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갑작스레 도피생활에 들어서게 된 학생들은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수배는 학생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었다.

표 5-16은 학생 구속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민주주의 투쟁의 주된 투쟁동력이

88) 대표적인 사건이 1989년 5.3 부산 동의대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5월 1일 부산진경찰서의 총기남용이었다. 이사건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진 학생을 잡기 위해 카빈소총 30여발을 난사하여 인근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전재호, 전개서, p.216)

89)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서울: 거름, 1997), pp5-15.

학생운동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 투쟁과 피해의 규모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표를 통해 학생구속자 수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도정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는 노태우정권나 문민정권으로 이행하면서도 학생 구속자수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구속자가 최고에 이르는 시기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전후한 시기인데, 특히 1989년과 1990년 노태우 정권하의 공안정국시기이며, 이시기에 학생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이 존재하였다.⁹⁰⁾

이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망자에 관한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전두환정권기보다 노태우정권기가 더 많고 김영삼정권기에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생운동의 피해가 정권의 탄압의 강도와 학생들의 저항 정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저항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피해는 늘어났다.

또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학생운동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정권기 보다 노태우정권기 학생들의 피해가 축소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지향목표가 지닌 급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6월 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은 사회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지향하였고 노태우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학생들을 공산주의로 몰아 탄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김영삼정권에 와서도 지속되었는데 한총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급진적이던 학생운동은 김영삼정권까지도 정치폭력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가장 커다란 피해를 치렀다⁹¹⁾

따라서 학생운동의 피해는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급진적인 이념성과 강한 정치성을 가짐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동력으로서의 위치로 인해 다른 부문운동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나았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운동

서구사회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선·후발자본주의사회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등 탈식민지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에서 주도

90)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피해』 (서울:함께읽는책, 2002).P.163.

91) 전재호, 전개서, p.225.

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⁹²⁾ 한국사회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역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노동자정치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투신하는 지식인들과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목적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한국사회의 경우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식’의 고양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반 군사정권 민주화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민주적인 투쟁의 과정으로 노동자 계급정치의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대상적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⁹⁴⁾ 한국의 노동운동은 70년대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여기에 학생운동가들의 야학활동과 기독교단체의 노동조합지원활동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⁹⁵⁾ 이후 1980년대에 와서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노동운동은 정치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민주화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였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한편 일반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도 전면에 나선 민주화투쟁의 핵심세력이었다.⁹⁶⁾ 그러나 권위주의하에서의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향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인 분노로 표출되었다. 이 결과 노동운동의 저항은 국가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사회적 배제의 영역으로 내몰렸다. 권위주의정권하 노동자의 피해는 분신, 투신, 자살, 의문사 등 사망사건, 인신구속, 해고와 블랙리스트를 통한 생산현장으로부터의 격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⁹⁷⁾

먼저 노동자의 분신, 투신, 자살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변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노동운동에서 저항의 형태가 되어왔다⁹⁸⁾

92) 이광일, “한국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성격과 위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2005), p.7.

93) 『두산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2005), “노동운동” 편.

94) 김영수, 『한국노동자 계급정치운동:연대의 정치,분화의 정치,통일의 정치』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1999), pp.15-25.

95) 안승천, 『한국노동자운동,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 출판사, 2001), 제1부 참조.

96)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 1999).pp.290~301.

9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321.

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70-2000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2001).참조.

표5-17) 대표적인 노동자 피해(사망자-사례)

| 이름 | 사건일자 | 주요 주장 | 방법 |
|----------|-------------|--|-----|
| 전태일(22세) | 1970.11.13.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분신 |
| 김진수(22세) | 1971.5 | (주)한영섬유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촉구 | 타살 |
| 김경숙(21세) | 1979.8.11 | “YH무역 위장취업 반대” | 분신 |
| 김종태(22세) | 1980. | “우리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유신잔당 물러가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 분신 |
| 박종만(36) | 1984.11.30. | “노동조합 탄압말라, 사무장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 | 분신 |
| 홍기일(25세) | 1985.8.45 |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 그토록 울부짖던 민주가 자유가 뜨거움의 이름으로 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에 무등을 보기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착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광주 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절대 비굴해지지 마세요. 경찰과 타협해서는 안돼요.” | 분신 |
| 박영진(26) | 1986.3.17 | “근로기준법 지켜라,노동 3권 보장하라. 전태일 선배가 못 다한 일을 내가 하겠다. 1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 분신 |
| 변형진(38) | 1986.4.30 | “미안하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잘 사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 | 분신 |
| 신호수(23) | 1986.6.11 |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에 의해 연행된 후 의문사 | 변사 |
| 이순덕(32) | 1987.1.3. | 충청지역 교육민중화 운동으로 파면 | 병사 |
| 황보영국(26) | 1987.5.17. |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 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하나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 분신 |
| 김현욱(21) | 1987.7. | 수련회 참가중 물놀이 사고을 당한 동료들 구함 | 사고사 |
| 이대용(21) | 1987.8.1 | 수련회 참가중 물놀이 사고을 당한 동료들 구함 | 사고사 |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70-2000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200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를 참조해 재구성.

그후 1980년 6월 9일 노동자 김종태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한 것과 같은 노동기본권의 요구, 1987년 대우노조조합원 이석규가 공권력이 직접 발사한 최루탄에 피해된 경우, 투쟁과정 중에 분신한 박영진 등 매우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다.(표 5-17 참조)

1960년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분신·투신·활복 등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투옥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백 1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8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⁹⁹⁾

표 5-18) 시기별 노동자 피해자 구분(1970~1992)

| 기간 | 피해자 수 | | | | | | 계 |
|-----------|-------|----------|------------|----|-----|---------|----|
| | 분신·투신 | 구 사 대 폭력 | 공권력에 의한 타살 | 병사 | 의문사 | 기타(사고사) | |
| 1970~1979 | 1 | 1 | 1 | - | - | - | 3 |
| 1980~1987 | 9 | - | 1 | 1 | 1 | 2 | 14 |
| 1988~1992 | 23 | 2 | - | 7 | 6 | 4 | 42 |
| 계 | 33 | 3 | 2 | 8 | 7 | 6 | 59 |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p.336.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으로 피해된 노동자는 전두환 정권시기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시기 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¹⁰⁰⁾ 이와 같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1987년 노동자투쟁에서 탄생한 민주노조 진영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양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과거 노동운동의 저항이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양상을 띠었다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운동 관련 정치적 피해자(사망자)의 시기별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표5-18 은 시기별 노동운동 관련 피해자를 구분한 것으로 노태우정권기에 다른 시기보다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동운동의 쟁점은 노동법 개정과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사회변혁추구로 표출되었다. 당시 민주노조진영은 ILO 가입을 ILO조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공무원·교원노동조합결성금지,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노조설립신고제 등 핵심조약의 비준을 통한 합법성 쟁취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투쟁은 매년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정점으로 연례적인 하반기 투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¹⁾

99) 전국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살리라 2』, (2005). pp.125-130.

1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p.335.

표5-19) 시기별 노동운동 관련 정치적 피해(사망자)

| 시기 | 박정희 정권기 | 전두환 정권기 | 노태우정권기 | 김영삼정권기 | 김대중정권기 |
|-------|-----------------|---|---|--|---|
| 사 망 자 | 전태일, 김진수 김영숙 | 김종태, 박종만, 홍기일,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이순덕, 황보영 국, 김현옥,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응수... |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윤범, 장용훈, 문용섭, 문송면, 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손, 최완용, 김윤기, 김중수, 인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형중, 김종하, 이재호,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대토,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처칠, 권미경, 임희진, 박복실, 오원석, 최성근, 이광웅 |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용, 김성윤, 김상옥, 최성목, 김낙성, 임종호, 양봉수, 박삼훈, 이민호, 서전근, 조수원,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박문곤, 홍장길, 김왕찬 | 최대림, 최명아, 신길수, 조현식, 정성범, 김윤수, 배동복, 이상관, 김종배, 최경철... |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 살리라 2』, (200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를 참조해 재구성.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노조진영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민중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민중운동의 핵심세력의 하나로 사회변혁운동을 추구하였다.¹⁰²⁾ 따라서 이후 집권세력의 노동운동의 통제 양식이 권위주의적 지배양식으로 회귀되던

101) 김진균,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과정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1권 제 2호, (1995), pp.24-35.

102) 이는 전형적인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의 CUT, 남아공의 Cosatu, 필리핀의 KMU 등이 있다.

서 노동운동진영은 혹독한 피해를 강요당했다.

권위주의 하 노동통제의 유력한 수단은 작업장에서의 방출, 즉 해고조치였다. 해고를 통한 노동통제는 특히, 박정희, 전두환 집권기에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표 5-20와 같다.

표 5-20) 노동운동 관련 해고조치 사례(1978~1984)

| 시기 | 년도 | 노동운동 관련 해고 사례 |
|------------|------|---|
| 박정희 정권기 | 1978 | 동일방직 조합원 1백24명 집단해고, 대한모방 6명, 남영나일론 2명, 삼익통상 5명 |
| | 1979 | YH노조원 339명, 대한모방 4명, 대농방직 7명, 한독전자 3명, 한일방직 2명 |
| 전두환 정권기 | 1980 | 롯데제과노조 3명, 삼익가구 2명, 반도상사 40명, 대일화확 10명, 남화전자 2명, 중앙특허법률 1명, 한일공업 4명, 원풍모방 12명 |
| | 1981 | 서통 16명, 콘트롤데이터 18명, 원풍모방 73명, 동남전기와 한국화장품에서 각각 2명 |
| | 1982 | 서통 5명, 원풍모방 2명 |
| | 1983 | 태평특수섬유, 화진섬유 2명, 농심라면 3명 |
| | 1984 | 경동산업 20명, 한시택시 9명, 유니전 6명, 협진양행 4명, 대우자동차 2명 |

출처: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서울:함께읽는책, 2002), 한국기독교교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1986): 를 참조 재구성.

박정희정권기와 전두환정권기 해고가 구속을 통한 노동통제 보다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구속보다 해고 등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노동통제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는 이시기 구속노동자의 수치이다. 이시기 구속노동자는 1963년에서 1972년 까지 연평균 7.5명, 유신정권 하에서는 연평균 6.6명에 불과하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연평균 32.1명 이었다.¹⁰³⁾ 노태우 정권, 김영삼정권의 2-3백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⁴⁾ 노동통제 하에서 구속자수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시기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잘 작동하여 노동조합이 저항할 역량을 지니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⁰⁵⁾ 해고는 노동조

103) 이 통계치 에는 학생 및 지식인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4) 노중기,“국가의 노동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5),P.218.

합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유효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노태우, 김영삼정권기에는 구속이 노동통제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데 1987년 민주화투쟁이후 수많은 노동조합이 건설되면서 저임금 정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늘어났던 것이 원인이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는 노태우정권이 앞 정권과 같은 사전적 통제를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억압하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법개정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지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표 5-21)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현황

| 시 기 | | 구속인원 | 시 기 | | 구속인원 |
|--------------|------|------|------------|------|------|
| 박 정 회 정권기 | 1972 | 4명 | 노태우 정권기 | 1988 | 78명 |
| | 1973 | 4명 | | 1989 | 600명 |
| | 1974 | 2명 | | 1990 | 482명 |
| | 1977 | 1명 | | 1991 | 502명 |
| | 1978 | 8명 | | 1992 | 270명 |
| | 1979 | 5명 | | 1993 | 46명 |
| 전두환 정권기 | 1980 | 3명 | 김영삼 정권기 | 1994 | 169명 |
| | 1981 | 3명 | | 1995 | 168명 |
| | 1982 | 11명 | | 1996 | 92명 |
| | 1983 | 6명 | | 1997 | 30명 |
| | 1984 | 12명 | 김대중 정권기 | 1998 | 214명 |
| | 1985 | 43명 | | 1999 | 103명 |
| | 1986 | 117명 | | 2000 | 89명 |
| | 1987 | 24명 | | | |

출처: 전노협 조사통계국 자료 92-24, 93-95년. 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 (서울: 역사비평사,1992) 참조 재구성.

표5-21에서 보이듯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 하에서 연평균 구속노동자 수는 3백 20명, 1백 26명에 달한다. 이는 앞선 군사정권들에서 연평균 10-30명 내외의 구속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물리적 탄압의 강도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1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계서, P.323.

표5-22)적용 법률 조문별 구속노동자 수(1988-1995년) (단위: 명, 건, %)

| 적용법조문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누 계 |
|----------------|-------|-------|-------|-------|--------|-------|-------|-------|------------------|
| 업무방해 | 17건 | 248건 | 308건 | 258건 | 56건 | 10건 | 102건 | 104건 | 1,103 (59%) |
| 폭력행위 | 50 | 247 | 96건 | 133 | 35 | 11 | 34 | 130 | 736 (39) |
| 노동쟁의조정 법 | 6 | 176 | 74 | 125 | 12 | 8 | 82 | 23 | 506 (27) |
|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 34 | 89 | 86 | 90 | 3 | 1 | 0 | 0 | 303 (16) |
| 공무방해 | 34 | 23 | 38 | 27 | 0 | 0 | 3 | 3 | 128 (7) |
| 국가보안법 | 1 | 31 | 29 | 28 | 5 | 1 | 0 | 0 | 95 (5) |
| 기타*2 | 5 | 132 | 60 | 39 | 8 | 0 | 50 | 13 | 307 (16)*3 |
| 구속노동자수 | 63명 | 534명 | 474명 | 451명 | 77명 | 23명 | 142명 | 113명 | 1,877 명 *4 |

주: * 1992년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계임.

*2 ‘기타’에는 공사문서 위조, 화염병 사용, 자살방조,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병역법, 방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안의 비율은 법조문 적용건수(3,718건)를 전체 구속 노동자의 수(1,877명)로 나눈 것임.

*4 구속사유가 확인된 노동자의 수 1,877명과 전체 법조문별 합계 3,178명이 다른 것은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법조문이 적용된 것임.

출처: 전노협 조사통계국 자료 92-24, 93-95년. 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역사비평사, 1992), p.61.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5-22과 같이 1988년에는 63명 이었던 것이 최초의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9년에는 534명, 1990년에는 4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노태우정권 말기와 김영삼 정권 초기에 구속노동자수가 줄어들었으나, 김영삼 정권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태우정권 시기나 김영삼정권 시기에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안정국’ 등 대대적인 보수적 공세국면, 혹은 탄압국면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 부활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106)

106) 조희현, “한국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및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과거청산의 동학” 『Korea Journal』, Vol. 42,(2002), p.18

표5-22에서 보이듯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조문을 보면 노동관계법보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989년부터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력 투입건수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¹⁰⁷⁾

노동자의 운동 실천과정에서 상이의 발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노동운동의 전개상 불가피하게 국가 공권력과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빚어지는 상이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관할 기관의 사무소에 진입하여 항의하던 중 경찰의 무리한 강경 진압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 등이다.

둘째,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간 대치상황에서 관리자나 사용자 측 근로자들과의 물리적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의 유형이다. 이른바 ‘구사대’라는 명칭의 사용자 측 근로자들은 노조활동을 초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압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나 수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 등을 말한다. 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제임스 리 일당의 테러사건과 같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폭력배를 사주하여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다 발생하는 상이 등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당한 피해유형에는 강제사직, 휴직, 감봉, 견책과 같은 개별적 수준의 사업장 내 피해에서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미행, 구타, 성적 억압과 폭행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다.

107) 노중기, 전계서, p.218.

제6장 결 론

우리 현대사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해 보자면, 강권적 법·제도적 지배에 대한 정치적 저항운동의 충돌사라 할 수 있다. 당장은 불법이고, 초법적으로 보였던 이슈들이 국민적,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한 경우 비록 군부정권일지라도 정치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영역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건데 정치폭력과 피해는 사회변동의 매개 고리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을 형성시키거나 저항운동의 고양의 시기에는 정치폭력과 피해가 존재하였다. 1958년 진보당의 조봉암, 1960년 4.19혁명의 계기로 작용했던 김주열, 1970년 한국의 근대적 노동운동의 계기를 제공한 전태일, 1979-80년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토대를 작용한 YH의 김경숙, 1987년 한국사회의 실질적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박종철과 이한열, 1991년 5월 정세를 이끌게 된 강경대등이다. 이외에서 수많은 피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정치폭력 문제에 대한 상당부분은 진상규명 작업을 생략한 채로 명예회복, 보상으로 나아갔다. 광주 5.18, 거창사건 및 노근리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법제화를 통한 정치폭력의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추세이다. 물론 ‘법제화’의 의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과 같은 비제도적 영역을 제도적 입법과정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정치폭력의 문제가 평가 완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폭력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지배도구로서의 인식되는 한계를 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통해 실정법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전히 국가 정체성의 논란에 휩싸여 이는 한국사회에서 과거 자행된 정치폭력과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평가야 말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민주화공고화를 통한 정치발전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은 현실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저항권의 행사가 현행 실정법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법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반공법이나 긴급조치 등 폐기되었던 법안이외에 현행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별도의 사법적 절차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대한 정의

는 불명확 하다. 관련법들의 이념적 토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인데 제2장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왜곡되게 이식되었고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반공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등식이 성립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역에 대한 대립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정치폭력에 대한 인식은 관련법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적 합의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념적 대립에 대한 정치폭력의 의미를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발전예 뒤따른 정치폭력과 피해의 범위는 관련법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술적 해석, 그리고 역사적 평가에서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 평가는 국가차원에서 공로 인정, 혹은 포상과 서훈 작업 등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2004년 들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국가의 이념적 정신적 기반에 대한 해석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속한다. 관련법을 제정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권위주의 통치기 정치폭력의 성격 및 저항행위에 대한 범위와 해석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까지 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부를 것인지, ‘항쟁’으로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이 곧 새로운 명칭부여로 연결되어 기존의 공식 해석을 변화시키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정치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은 정치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자(희생자)의 기념사업이 과거사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일한 비중을 갖는 역사적 사건들이 차별적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폭력에 대한 진상과 이에 따른 피해자(희생자)들의 기념사업역시 형평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폭력에 대한 현대사적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피해자(희생자)들의 투쟁을 역사적·현실적 존재의 수단만으로 간주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폭력은 정치발전상 과거와 단절된 형태로 존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영향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여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발전에 역할을 담당한 피해의 성격을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회의 발전은 고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현대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폭력과 그로인한 피해라는 청산하고 정리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국 현대사는 권위주의, 전체주의에 항거한 저항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식민지배에 대한 해방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그 투쟁의 역사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한국현대사의 파행은 현재 우리사회에 부정적 유산을 남겨 놓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제도와 기구 및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현재에도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아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악행이 미래로 이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치폭력과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의 사건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유지와 사회통합 그리고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분명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상황 규명, 책임 주체 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모델은 ‘진실과 정의의 교환’(trade-off between truth and justice)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의를 통한 진실’(truth through justice)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적으로는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 진실모델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 진실모델이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했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미래의 민주적 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의문사위원회의 경험은 진실모델에 가까운 것이지만 처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의모델과 통하는 바가 있다. 진실모델은 단적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이에 근접한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는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정치국면에서 제기

되었다, 주로 운동단체 주도로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입법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유족과 사회운동 진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과거청산을 처벌이나 보상을 가장 중시하는 ‘정의모델’ 보다는 진상규명을 중시하는 ‘진실, 화해 모델’에 더 비중을 두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 공권력의 불법에 의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이 그 초점이라 할 수 있다. 진상규명은 정치폭력의 책임과 피해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 문제는 언제나 논란거리다. 정치폭력의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엄격한 단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한편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이 좌경, 용공의 굴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발전에서 저항행위의 정당한 평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폭력과 관련한 과거청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보상(배상)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세력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은 안된다는 입장과 당장의 생계의 곤란에 직면해 있는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 진상규명- 후 보상, 배상 원칙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보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차원의 보상은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 개인차원의 보상은 공권력 피해로 인한 우선의 물질적 궁핍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차후에는 관련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왜소화시켜버리고, 나아가 과거청산 작업 전체의 정당성을 허물수도 있다. 정치폭력의 문제가 현재적 의의를 갖는 것은 정치폭력에 대한 청산이 역사적 정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해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헤게모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폭력과 그로인한 피해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폭력은 저항운동을 반국가적인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였지만, 역으로 저항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저항의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곤 했다. 저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작용으로 그쳤던 경우와 저항을 폭발적인 과정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전자는 정치폭력이 개별적, 우발적,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 발생하였고, 후자는 반정부적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치폭력을 과잉 정치화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그 규모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저항운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정치폭력은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저항주체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피해자(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조건에서 반체제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저항주체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지배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피해는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부도덕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권위주의정권의 폭력이 더 이상 공포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저항운동이 반체제, 반국가적 행위로 한국사회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는 위기감을 축소시키면서, 전국민적 규모의 저항주체를 형성시켰다.

셋째, 정치폭력은 저항역량을 확산시키고, 이어진 피해는 또 다른 저항역량으로 전이되었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저항운동의 역량을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 개인으로부터 대중으로, 개인으로부터 계급으로 전이시키는 전이적 성격을 가졌다. 저항역량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반 강제적인 국가권력의 힘 약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정치폭력이 발생하였고, 이는 통치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이 허용하는 공간으로 제한되었던 각종 저항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혹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피해의 발생은 저항의 역량을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은 저항주체들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공간에서 투쟁을 전개하게 한다. 그 의미는 정치적 합의(Police Line)를 넘어서지 않은 범위에서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투쟁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항세력이 현행법의 틀 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표출하고 진취하게 하는 공간의 부여는 상호승리게임(win-win game)의 공간이다. 게임의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폭력적인 물리력으로 체제를 가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화하는 전략이 추구된다. 사회세력 모두가 인정하는 공간에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배 장치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대중 집회조차 불공정 게임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은폐된다. 정치적 합의는 사회변혁적인 저항세력의 통일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통치전략

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조차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저항세력의 반발을 약화시키고, 저항세력 중에서 포섭과 개량의 대상을 확대시킨다. 사회변혁적인 저항세력의 전략과 전술을 순치시키거나 그 주체들을 고립화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적 세력의 이해가 반영된 법과 제도가 국가의 폭력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의 폭력과 불법만을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 한다. 정치적 합의 내에서의 투쟁은 저항주체들에게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적 질서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현행법 자체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은 저항세력의 폭력과 불법을 부각시켜 현행법의 문제점들을 사회 통합적 질서로 포장한다. 사회의 모든 세력이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평화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배세력은 이를 매개로 저항세력들을 국가전복세력, 국가위기 조장세력, 사회혼란세력 등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세력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차화 된다. 이러한 통치전략은 정치적 희생이 매개가 되어 저항세력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저항으로 전이되어지고 지배세력은 더욱더 확장된 정치적 합의(Police Line)를 허용하게 되면서 상호승리게임의 공간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결국 상호승리게임의 공간은 확장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심화-발전으로 진전하게 되는 주된 요소였으며 여기에 피해는 중요한 매개 점을 형성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단행본

- 강만길·송건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강신철 외. 『80년대 학생운동사』. 서울: 형성사, 1988.
-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울: 책세상, 2002.
-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 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서울: 삼인, 1997.
- 김동구. 『미군정기의 교육』. 서울: 민음사, 1995.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서울: 돌베개, 2000.
- . 『분단과 한국사회』.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김영수. 『한국노동자 계급정치운동』. 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1999.
- 김정한.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이후, 1998.
- .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한다-91년 5월투쟁 읽기』. 서울: 이후, 2001.
- 김진균·조희연.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분단과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
- 김진균.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서울: 한울, 1983.
-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상의』. 서울: 돌베개, 1998.
- 김형욱. 『김형욱 회고록1,2,3』. 서울: 아침, 1985.
-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 구범모 편.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서울: 고려원, 1992.
-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사』. 서울: 고령, 2001.
- 권형철.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서울: 일송정, 1990.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2000.
- 노동문제연구소. 『한국의 노동문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1.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그 비판적 연구』. 서울: 민음사, 1991.
- 로크/J. S. 밀·이극찬 역. 『통치론/자유론』. 서울: 삼성출판사, 1992.
- 르네 지라르·김진식 옮김. 『희생양』. 서울: 민음사, 1998.
-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서울: 삼인, 1999.
- 마르쿠제·포퍼. 홍윤기 편역. 『혁명인가 개혁인가: 마르쿠제·포퍼논쟁』. 서울: 사계절, 1982.
- 맑스.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1988.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서울: 거름, 1997.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 오름, 2004.
- .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서울: 오름, 2004.

- _____ .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 서울: 오름, 2004.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3』 . 서울: 돌베개, 1992.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박현채.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 서울: 한길사, 1984.
- 박현채·김형기 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 서울: 돌베개, 1985.
- 박호성.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박형신. 『정치위기의 사회학』 . 서울: 한울, 1995.
- 백낙청·염무웅 편. 『한국문학의 현대성』 .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변형윤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 서울: 한울, 1985.
- 부르스 커밍스·김동서 외 옮김. 『한국현대사』 .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부르마, 이안·정용환 옮김.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일본인과 독일인의 전쟁기억』 .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2.
- 배령던 무어. 진덕규 옮김.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 서울: 까치, 1985.
-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 서울: 민영사, 1990.
- 손석춘. 『신문 편집의 철학』 . 서울: 풀빛, 1994.
-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 서울: 사회평론, 1997.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 . 서울: 역사비평사, 1999.
-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 서울: 법문사, 1983.
- 송건호·강만길 편. 『한국민족주의론 II』 .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신도성.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과제』 . 서울: 사상계, 1955.
- 안승천.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 서울: 박종철, 2001.
- 양성철. 『한국정부론』 . 서울: 박영사, 1994.
-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 .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연시중. 『한국정당정치실록』 . 서울: 지와사랑, 2001.
- 오도넬·슈미더·화이트헤드.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 서울: 한울, 1987.
- 오유석. “4월혁명과 피의 화요일.” 『20세기 한국의 야만』 . 서울: 일빛, 2001.
- 울리히 벡.. 임현진·정일준 옮김. 『성찰적 근대화』 . 서울: 한울, 1998.
-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윤상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이병천.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3.
-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 서울: 한길사, 1998.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 서울: 형성사, 1984.
- 이태호. 『불꽃이어 이 어둠을 밝혀라: 7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 . 서울: 돌베개, 1984.
- 이한열추모사업회 편. 『진단 제6공화국』 . 서울: 두리, 1991.
- 이호철. 『산업화와 농업경제』 . 서울: 한길사, 1991.
- 임대식.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2000.
-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4.
-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학문사사상사, 1997.
- 전태일 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서울: 세계, 1991.
- 장상환·정진상. 『한국의 사회운동』.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1.
- 장훈. “정당과 선거.” 윤정석 외.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4.
- 정해구.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서울: 책세상, 2000.
-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 읽는 책, 2002.
- .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 .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 2001.
- . 『NGO가이드』.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 .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동학 (3)』. 서울: 함께 읽는 책, 2003.
- . 『한국사회운동사』. 서울: 한울, 1995.
- .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서울: 당대, 1998.
- .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서울: 한울, 1993.
- 준봉 구범모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 지평』. 서울: 나남, 1994.
- 편집부. 『학생운동논쟁사』. 서울: 일송정, 1988.
- 편집부. 『공안사건기록-1964-86』. 서울: 세계, 1986.
- 편집부. 『80년대 사회운동논쟁』. 서울: 한길사, 1989.
-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서울: 학민사, 2001.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 .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1996.
- 최완규. “권위주의체제의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988.
-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서울: 당대, 1997.
-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5년 노동사회사정』. 서울: 민중사, 1985.
- . 『한국사회의 노동통제』. 서울: 민중사, 1987.
- . 『87노동사회사정』. 서울: 민중사, 1988.
-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4.
-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재판사 제2권』. 1962.
- 한국NGO학회. 『한국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성찰』, 2003.
- 한나 아렌트·김동식 옮김. 『공화국의 위기』. 서울: 두레, 1997.
- 한용 외.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서울: 청년사, 1989.

Howard J. Sherman & James L. Wood, 남춘호 옮김. 『새로운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1983.
 Lenin. "State and Revolution". 『국가와 혁명』 새날. 1917.
 Macpherson C. B., 김규일 편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서울: 양영각. 1984.
 R. Girard, 김신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Sassoon, A. S. ed. "Approaches to Gramsci". 사쑤, 최우길 역. 『그람시와 혁명전략』. 녹두. 1984.
 Weber, Max.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간행물

강만길·박현채. "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사회와 사상』. 1998년 9월호.
 경찰청. 2002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1997년, 1998년 경찰 특진내역." 1998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해방 이후 좌익운동권 변천사: 1945년-1991년』, 1992.
 ————. 『경찰통계연보/1989-1998』. 『경찰통계연보 /1986~2000』
 김동춘. "한국민주화의 주도세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
 ————.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인권과 평화』, 제2권 1호, 2001.
 김명섭.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과 햇볕정책." 『당대비평』, 통권 제5호, 1988.
 김태광. "해방후 최대의 양민참극, '보도연맹 사건.'" 『말』, 1988년 12월호.
 국회. 『198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1988.
 노동인권회관. 『노동인권 보고서』. 서울: 역사비평사, 1992.
 내무부. 1988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Ⅱ』.1973.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
 ————. 『범죄분석/1965~1997』.1998.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004.
 대통령비서실. 『김영삼대통령 연설문집3』 공보처, 1996.
 대한민국 국회. 『제108차 회의록』. 『제99차 회의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보고서』, 1999.
 ————. 『인권보고서』, 1993.
 ————. 『인권보고서』, 1989.
 ————. 『인권보고서』, 1986.
 민주노총. 『한국노동운동사』, 199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서울: 역사비평, 19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과거청산』.2002년 1차 학술토론회자료집, 2002.
 ————. 『한국정치운동관련 문헌 해제』, 2004.
 ————. 『기억과 전망』. 창간호~2005년 가을호.
 ————. 『학생운동관련 문헌 해제』. 2004.

- . 『노동운동관련 문헌 해제』. 2004.
- . 『사회참여운동관련 문헌 해제』. 2004.
- .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2003.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 학술심포지움자료집, 2003.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끝내 살리라 2』. 2005.
- . 『열사회보』. 1998~2005년.
- 박경석, “한국의 과거청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
- 박원순.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1997.
- 박태순·김동춘. “제조명 60년대 사회운동 8-인혁당 사건과 60년대 정치사.” 『월간 중앙』 9월호, 1990.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0~1979. 1981~1997.
- 법무부. “1992년도 국회국정감사자료 2.” 1992.
- . “2001년 국정감사 자료.” 2001.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1989.
- 배규한·한도현·백진아. “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 교육부, 1996.
- 서중석. “분단, 사회, 인간.” 실천문학사. 『실천문학』, 제5권, 1984
- 손종양. “안기부의 우편검열의 본산, 우정연구소.” 『말』 제71호, 1992년 5월.
- 손호철. “민족민주열사 주장의 정당성.”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1997.
- .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3.
-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진보적 시각.”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에서의 보수와 진보』. 제 1차 한국정치포럼 발표문, 2003.
- 신영복·조희연. “개발독재체제하의 국가폭력과 저항.” 5·18기념재단 외 주최 제2회 국제심포지움, 2001.
- 안병욱. “현대한국의 과거청산.”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과거청산을 위한 학술심포지움, 2004. 9.
- 오병현. “군부독재의 칼, 계엄령 연구.” 『신동아』 11월호, 1993.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2004.12.
- 유순달. “박정희의 한국적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한국논단』, 146권, 2001.
- 윤영관. “세계화-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계간 사상』, 겨울호, 1994.
- 이기훈. “일제와 이승만 정권기 국가폭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료집, 2004.
- 이광일. “한국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성격과 위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자료집, 2005.
- . “보수정치와 급진정치의 경계.” 민주노동당. 『이론과 실천』, 창간호, 2001.

- 이우재.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역사비평』, 봄호, 1991.
- 이영재.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평가와 과거청산의 과제.” 올바른 과거사청산을 위한 범국민위 자료집, 2005.
- 이철.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 『역사비평』, 가을호, 1991.
- 이호철. “농산물 수입개방, 농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농민과 사회』, 1991.3
-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제 14권 1호, 1976.
- 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 『1990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울, 1990.
- 원풍모방 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민주노조 10년』. 서울: 풀빛, 1987.
- 노동인권회관 편. 『노동인권보고서』. 전노협 조사통계국 자료 92-24, 93-95년. 서울: 역사비평사, 제61집, 1992.
-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1970~2000 민주노조투쟁과 탄압의 역사』. 2001.
- 전명혁. “한국에서 과거청산운동의 역사.”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과거청산을위한 학술심포지움, 2004. 9.
- 장성욱. “6.29선언 이후 구속된 양심수들.” 『신동아』, 1988년 1월호.
- 정대화. “국민의 정부: 민주화 2단계 진입, 그 성과와 한계.” 『제1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학술단체협의회, 1999.
- 정관용. “3당합당의 구조적 본질과 실천적 대안.” 『계간 동향과 전망』, 통권 제7호, 1990.
- 제주 4.3연구소. 『반민족 반민주와 과거청산』, 2002.
- 조 국. “한국근현대사에서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여름호 1988.
- 조현연 “의문사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2001년 총회자료집』, 2001.
- 조희연 “한국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및 민주주의이행 과정에서의 과거청산의 동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과거청산』. 2002년 1차 학술토론회자료집, 2002.
- . “국가민주화와 공무원 노조.”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2002.
- .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보편적의의와 남겨진 과제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
- . “종속적 발전과정에 있어 자본과 노동유형의 변모에 관한 연구.” 김진균 편. 『역사와 사회』, 제 1집, 1983.
-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인권백서』, 1988-89.
-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 199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1)』. 1987.
- _____. 『1970년대 민주화운동2』. 1987.
- _____. 『인권보고서』. 1986.
- 한국민족예술인연합.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991년 4월 25일자 성명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97.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재판사 제2권』. 1962.

한삼희. “치안본부대 해부.” 『월간조선』, 1988년 3월호.

논문

강 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제 17집. 1983.

김영래. “한국 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 정치학과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 1986.

김세균. “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한국 민주화과정의 경과와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정치학회 편 『해방50주년 기념논문집』, 1995.

김 준.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경제와 사회』. 제23권, 1994.

김진균.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과정과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 2호, 1995.

김한구. “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 『한국학 논집』. 제15집, 1989.

김홍명.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 『사회과학』. 제20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3.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5.

모리 요시노부. “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 특징.” 『한국과 국제정치』, 제5호, 1989.

문지영.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부 수립 후 1970년대 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2.

박노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춤.” 『한국사회학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2.

방영준. “한국민주주의 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고찰.” 『국민윤리 연구』. 제22호, 1986.

백운선. “이승만 통치의 유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1세기 한국정치학의 도전과 선택』. 한국정치학회, 1999.

서정안. “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989.

서중석. “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 연구』. 제90집, 1995.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오성환. “한국 분신의 상징적 의미.” 『비교민속학』. 제12집, 1999.

윤지훈. “반공규율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 2002.

이재봉. “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연구』. 제8집, 1990.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 제24호, 2003.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 1호, 1990.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1997.

- 조병택.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양식.”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1987.
- 조현연. “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 최성중. “한국의정치발전과경제발전.” 『통일문제연구』.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 . “정치발전의 개념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20집.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한홍수 · 김도중.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사회과학논집』. 제24집. 연세대학교, 1993.

외국 문헌

- Cho, Hee-Yeon and Bob Jessop.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unist Regimented Society.” Prepared for the workshop, *In Search of East Asian Modes of Development: Regulationist Approaches*, Tunghai University, Taichung, 2001.
- Bass, Gary. “Victor’s Justice, Selfish Justice.” *Social Research*, Vol. 69 No. 4. Winter 2002.
- Bertramsen, Rene Bugge et.al. “State, Economy and Society.” London: Unwin Hyman, 1991.
- Bowles S, and H. 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11 No. 1, 1982.
- Burawoy, Michael. *Manufacturing Consent: changes in the Labor Process under Monopoly Capitalism*. Chicago: Univ. of Chicago, 1979.
- Engels, Friedrich.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68.
- Etienne Bailbar. “The Basic Concepts of Historical Materialism.” Louis Althusser and Etienne Balibar(ed.). *Reading Capital*. New York: Pantheon, 1970.
- Friedrich, C. J.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oulanzas, Nicos, 1986.
- Giddens, A.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1985.
- Gramsci, A.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 Gunther, Richard, et al.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Johns Hopkins Univ, 1995.
- Linz, J. “Opposition to and under an authoritarian Regimes”. R. Dahl ed. Regimes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3.
- Johan Galtung. “Peace and Social Structure”. Prometheus Books, 1978.
- Joseph A .Leghtton. “Social Philosophies in Conflict: Fascism, Nazism, Communism, Liberal Democrac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1937.
- Michael Stohl and George A. Lopez. “The State terrorist: The Dynamics of Governmental Violence and Repression”. Greenwood Press: Connecticut, 1984.
- Mills, C. W.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Nisbet, Robert. "Prejudices: A Philosophical Diction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Poulantzas, N. "State, Power and Socialism". London: Verso. 1980.
- Offe.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Vol. 52, 1985.
- Dahl, Robert. Polyarchy. "Participation &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 Dahl, Robert.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 Rueschmeyer, D. and E. H. Stephens and J. D. Stephens.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Smith, Tim. "A Nation Examines Its Conscience". America. November 8, 1997.
- Weber, Max. "Politics as a Vocation", 1921.
- Wood, Ellen Meiksins. "Democracy against Capitalism: Renewing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Zeigler, Harmon. "The Political Community". White plains. NY: Longman, 1990.

(부 록)

표 I) 과거청산 관련법 현황표

| 시 기 | 관련법령 | 목 적 | | | | | 제 정 (제안) |
|---------------------------------|-----------------------------------|--------|----|----|------|----|----------------|
| | | 진상규명 | 보상 | 처벌 | 명예회복 | 예우 | |
| 분 단 전 후 |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 ○ | | 2000-01-12 |
|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법률 | ○ | | | ○ | | (2004-06-18) |
| 권 위 주 의 통 치 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 | | 1996-01-05 |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 | ○ | | 2004-03-05 |
|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2004-01-29 |
|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 | | | | 2000-01-15 |
| |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 | | | | (2004-06-16) |
|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 | ○ | ○ | | | 1995-12-21 |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특별법 | | ○ | | ○ | | 2000-01-12 |
|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 법률 | | ○ | | ○ | | 2004-01-29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 | ○ | | | | 1990-08-06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 | | ○ | 2002-01-26 |
| 포 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 ○ | | | ○ | 2005-05-31 |

출처: 김민철, “친일기록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학회 『과거청산, 인권 그리고 기록』 2005년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80.

표 II) 특별법 입법을 통한 과거청산 사례 비교

| 시기 | 정부수립 직후 (1948-1949년) | 4.19혁명기 (1960-1961) | 5.16군사쿠데타 직후 (1961-1962) | 김영삼 정권 (1995년) |
|----------|-------------------------|---|--|--|
| 주체 | 반민특위(국회) | 정부·국회 | 국가재건최고회의 | 정부 |
| 청산 기구 |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 일반재판부-> 특별재판부 | 혁명재판부 | 일반재판부 (제정신청인정시 특별검사 가능) |
| 청산 대상 | 반민족행위자 | 부정선거관련자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 | 부정선거관련자 특수범 부정축재자 | 반란자(12.12) 내란자(5.18) 뇌물수수자 |
| 청산 법안 | 반민족행위처벌법 | 특별재판소· 특별검찰 부조직법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 부정축재특별처리법③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④ | 특별재판소· 특별검찰 부조직법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 부정축재처리법③ 정치활동 정화법④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공소 시효특별법 |
| 대상 시기 | 1910-1945 | ②1960년 선거 당시 ③1960년이전 5년간 ④1960년 4월 이전 | ②1960년 3.15선거 ③1958년 1월 21일 ④1953년 7월1일부터 1961년 5월 15일 | 반란자는 12.12전후 내란자는 5.18전후 뇌물수수자는 (1980-1993) |
| 귀결 | 이승만정권의 방해로 중단 | 5.16쿠데타로 중단 | 왜곡된 형태로 일정한 성과, 그러나 혁신계관 련자 제외한 대부분 석방 | 전두훈사형, 노태우무 기형. 곧 사면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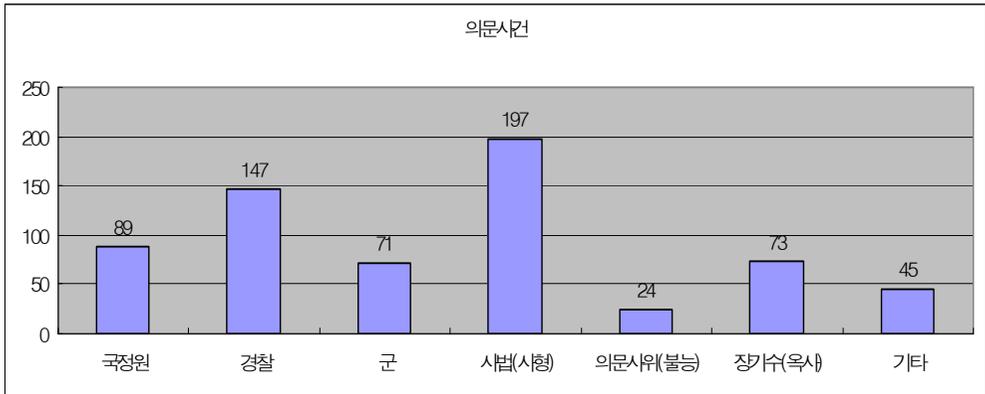
출처: 제주 4.3연구소, 『반민족 반민주와 과거청산』, 2002.

표 Ⅲ) 김대중 정권기 과거청산 관련 제정된 법률

| | 제정시기 | 법안 내용 | 비고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 1999.12. 28 |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해직, 투옥 등 각종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묘역사업) | 본위원회 외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심사위원회,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 장애등급 판정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99년 7월 9일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회 104명 발의, 98년 7월 30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회 29인의 발의. |
|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 1999.12. 28 |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 199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서 입법청원. 99년 이상수의원 외 155명 발의. |
| 국 가 인 권 위 원회법 | 2001.4.3 0. | 인권에 관한 법령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과구제, 인권교육 등.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98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활동. |
| 민 주 화 운 동 기 념 사 회 법 | 2 0 0 1 . 6.28 | 민주화운동기념관 거립 및 민주공원 조성,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보존 및 DB화,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민주주의 시민교육사업, 민주화운동 정신 선양 사업,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99년부터 민주재단 중심으로 법제정운동이 전개되고, 2000년 4월 발족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캠페인을 전개. |

출처: 조희연,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보편적의의와 남겨진 과제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2, p.185.

표 IV) 의문사건의 구분



출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건진상 규명특별위원회 2005.

*계승연대 의문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의문사건 수는 646건이다.